

#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1995. 11

## 제 4 권

### [ 입업·어업편 ]

#### < 입업·산촌지원 >

1. 입업인력육성
2. 산림자원조성
3. 입업경영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4. 입산물생산 및 유통·가공
5. 환경입업육성 및 산지관광지원

#### < 어업·어촌지원 >

1. 수산자원조성
2. 어업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
3. 수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
4. 어업환경개선 및 어촌관광자원조성

농림부 도서실



0001263

농림수산부

#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1995. 11

## 제 4 권

### [ 임업·어업편 ]

#### < 임업·산촌지원 >

1. 임업인력육성
2. 산림자원조성
3. 임업경영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4. 임산물생산 및 유통·가공
5. 환경임업육성 및 산지관광지원

#### < 어업·어촌지원 >

1. 수산자원조성
2. 어업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
3. 수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
4. 어업환경개선 및 어촌관광자원조성

농림수산부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1263

등록일: 2004년 7월 29일

기증:

# 일 러 두 기

1.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수산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 1권의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는 각종 사업의 절차와 방법이, 2~4권에는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 해당 사업의 페이지를 확인하신 후 찾아보시면 됩니다.
3. 사업계획수립 안내기관은 농·어촌지도소, 시·군, 읍·면, 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농지개량조합, 농산물유통공사 지사, 농·수·축·임·인삼 협으로 지정되었으니 가까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축산발전기금사업등 '96년도 시도별 배분액이 일부사업은 잠정치로써 그 내용이 개별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      별	내                  용
제 1 권 [총괄편]	1.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2.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해설 3. 참고자료(농어촌투용자계획, 정책자금대출안내, 농지전용안내등)
제 2 권 [농업·농촌구조개선편]	1. 인력육성                          2. 생산기반조성 3. 영농규모화                      4. 농업기계화 5. 기술개발 및 정보화          6. 소득원개발 및 소득지원 7. 생활환경개선
제 3 권 [농축산물생산·유통편]	1. 쌀·발작물생산 2. 원예·특작생산 3. 농산물 유통·가공 및 수출 4. 축산물 생산·유통
제 4 권 [임업·어업편]	1. 임업·산촌지원 2. 어업·어촌지원

# 목 차

## [임업·어업편]

※ 표시예)농업인등자율추진사업 : 자율  
공공계획추진사업 : 공공

사 업 구 분	사 업 명	쪽
[임업·산촌지원]		5
1. 임업인력육성	1) 독립가·임업후계자육성 (자율)	7
	2) 임업기능인훈련(공공)	13
	3) 임업기능인영립단 및 임도시공장비지원(공공)	18
2. 산림자원 조성	1) 조림사업(공공)	27
	2) 육림사업(공공)	36
	3) 간벌사업(공공)	44
	4) 조림용묘목생산(공공)	50
	5) 산림병해충방제(공공)	53
3. 임업경영기반 확충및기술개발	1) 산림경영장비지원 (자율)	61
	2) 사유림협업경영(공공)	66
	3) 임도시설(공공)	69
	4) 영림계획(공공)	74
	5) 다목적산림경영시범단지조성(공공)	78
	6) 임업협동조합육성(공공)	81
	7) 임업기술지도(공공)	83
	8) 임업기술개발지원(공공)	86

사 업 구 분	사 업 명	쪽
4. 임산물생산 및 유통·가공	1) 단기소득임산물생산 및 시설(자율)	93
	2) 조경수·분재소재생산(자율)	98
	3) 임목생산(자율)	104
	4) 임산물 가공·이용시설지원(자율)	108
	5) 임산물 가공·이용원자재구입(자율)	113
	6) 임산물생산·이용지원(자율)	117
	7) 산지가공시설설치(자율)	122
	8) 임산물유통구조개선(공공)	128
	9) 간벌재(소경재)활용장비지원(공공)	133
5. 환경임업육성 및산지관광자원화	1) 사방사업(공공)	139
	2) 산림환경기반조성(공공)	145
	3) 산불방지대책(공공)	149
	4) 야생조수보호(공공)	152
	5)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157
	6) 산림박물관건립 및 수목원조성(공공)	161
	7) 산촌종합개발(공공)	164
[어업·어촌지원]		169
1. 수산자원 조성	1) 내수면어업개발(자율)	171
	2) 수산양식사업(자율)	177
	3) 연근해어업구조조정(공공)	182
	4) 어항조성(공공)	190
	가) 1·3종 어항건설	190
나) 2종 어항건설	192	
다) 폐유저장시설설치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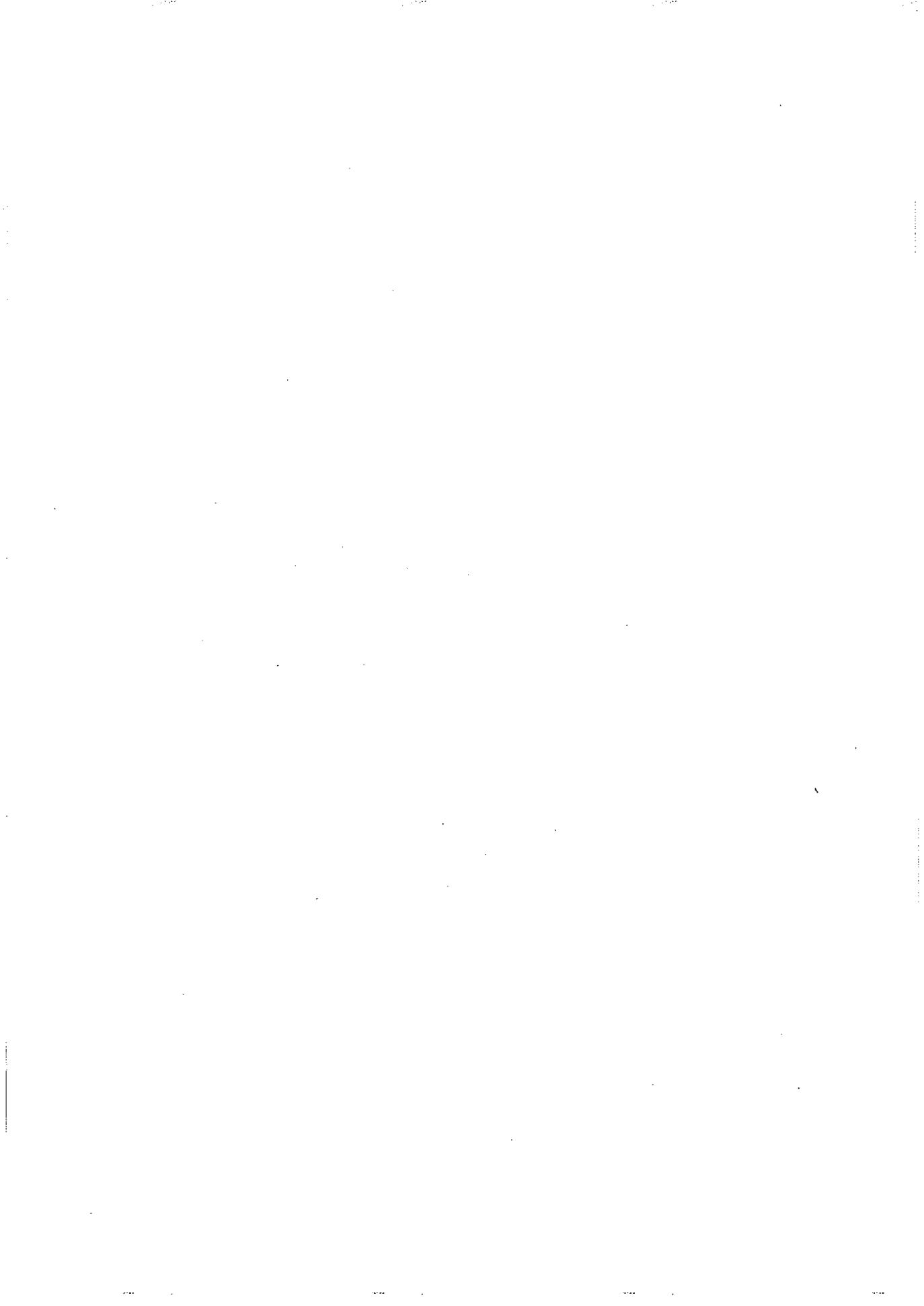
사 업 구 분	사 업 명	쪽
2. 어업 시설 현대 화 및 기술 개발	5) 수산자원조성(공공)	195
	가) 수산자원조성	195
	나) 연어치어방류지원	199
	다) 지방수산과학관건립	200
	라) 자영수산과 학생급식비지원	201
	마) 어업질서확립지원자금	203
	6) 지도선전조사업(공공)	205
	1) 어선건조·대체사업(국비)	213
	가) 노후어선대체	213
	나) 어선기관대체	222
	다)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	226
	2) 어선용기계공급(국비)	230
	3) 내수면양식용기자재공급(국비)	235
	4) 해면양식용기자재공급(국비)	238
5) 어선용기자재생산업체지원(공공)	241	
3. 수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	6) 수산기술개발사업(공공)	245
	가) 수산기술개발	245
	나) 수산특정연구개발	246
	1) 수산물산지가공시설(국비)	251
	2) 수산물처리·저장시설(국비)	256
	3) 수산물종합가공단지조성(공공)	261
	4) 수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공공)	265
	가) 수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265
	나) 어망생산운영 및 시설자금	269

사 업 구 분	사 업 명	쪽
4. 어업환경개선및 어촌관광자원조성	5) 영어자금지원(공공)	271
	6) 수산물유통시설지원(공공)	274
	가) 수산물유통구조개선	274
	나) 수산보급시설	281
	다) 서해5도 공동운반선 운영	283
	1) 어촌관광개발사업 (공공)	287
	2) 어장환경정화사업(공공)	291
	가) 연안어장정화	291
	나) 공유수면 환경광역정화	299
	다) 어장정화선 운영	301
	3) 어촌종합개발사업(공공)	303
	4) 어민복지회관건립(공공)	310

# 〈임업·산촌지원〉

## 1. 임업인력육성





# 독립가·임업후계자 육성 (자율)

## 1. 목적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전업(복합)임업인으로 육성

## 2. 추진방향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의 지속적인 선발
- 소유산림의 자율적 경영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 임업경영실적의 철저한 사후관리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계
사업량 (명)	계	297	125	125	125	125	750	1,547
	독립가	80	50	50	50	50	300	580
	후계자	217	75	75	75	75	450	967
사업비	계	8,117	3,000	4,000	4,000	4,000	24,000	47,117
	국	-	-	-	-	-	-	-
	지방	-	-	-	-	-	-	-
	융자	8,117	3,000	4,000	4,000	4,000	24,000	47,117
	자담	-	-	-	-	-	-	-

### 나. '96지원계획

- 재원 : 산림개발기금
- 사업량 : 125명 (독립가 50, 임업후계자 75)
- 융자금 : 3,000백만원 (독립가 1,500, 임업후계자 1,500)
- 융자조건 : 연이율 3%, 5년거치 10년상환
- 대상사업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사업에 소요되는 산림사업비 및 산림사업용 기자재 구입비와 임야매입자금, 관리인 인건비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의 산림경영에 소요되는 사업자금 융자지원

#### (2) 지원대상

독립가 인정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독립가로 인정된 자와 임업후계자 선발 및 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 (3) 인정 및 선발요건

##### ○ 독립가 인정요건

독립가구분		인 정 요 건	인정권자
개인	모범	소유산림 3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100ha이상	산림청장
	우수	소유산림 1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 용재림 50ha이상 유실수 20ha이상	도지사
	자영	소유산림 5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 용재림 20ha이상 유실수 10ha이상	시장·군수
법인	소유산림 5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300ha이상	산림청장	

##### ○ 임업후계자 선발요건

- 선발권자 : 시·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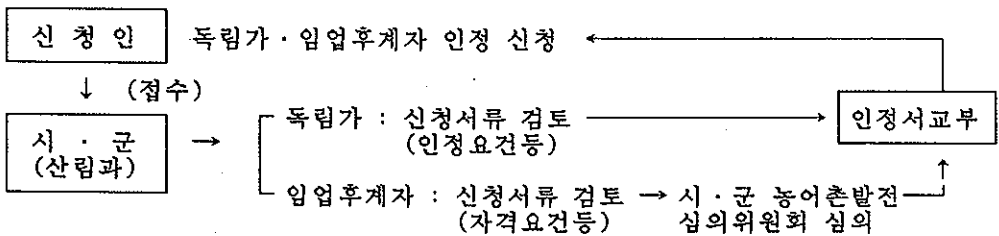
- 대상자 : 45세미만의 자로서 소유산림(사유림)이 소재하는 시·도안에  
주소를 두고 산림을 경영하려는 자중 아래사항 해당자

- 독립가의 자녀
- 10ha이상의 산림소유자
- 10ha이상의 국·공유림 대부 또는 분수림을 설정하여 경영하고 있는 자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임업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 5ha이상의 산림소유자
- 전문대학 또는 동등이상외 교육기관에서 임업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 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일정기준
-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소재, 야생화, 산채,
-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자

(4)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매년)
  - 사업량 : 125명 (독립가 50, 입업후계자 75)
  - 용자금 : 30억원 (독립가 15, 입업후계자 15)
- 지원조건
  - 용자한도액 : 독립가는 실소요사업비,  
입업후계자는 1억원(20백만원까지 신용대출)
  - 용자조건 : 연 3%, 5년거치 10년상환

(5)사업시행 체계(인정절차)



(6)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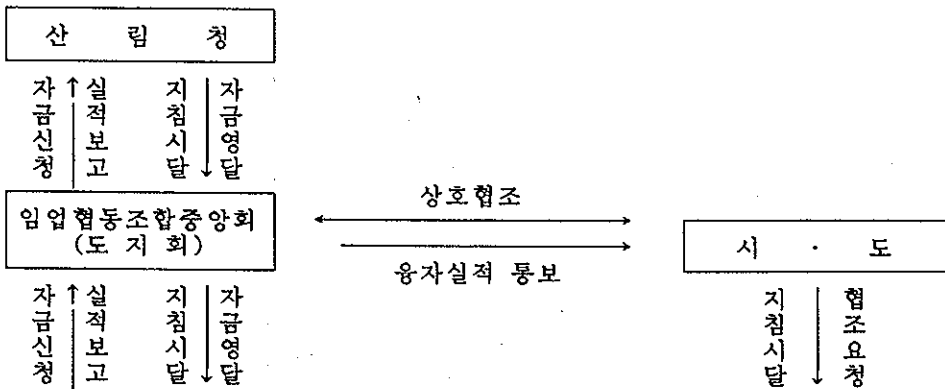
- 독립가 : 독립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소유산림경영 내역서
- 입업후계자 : 입업후계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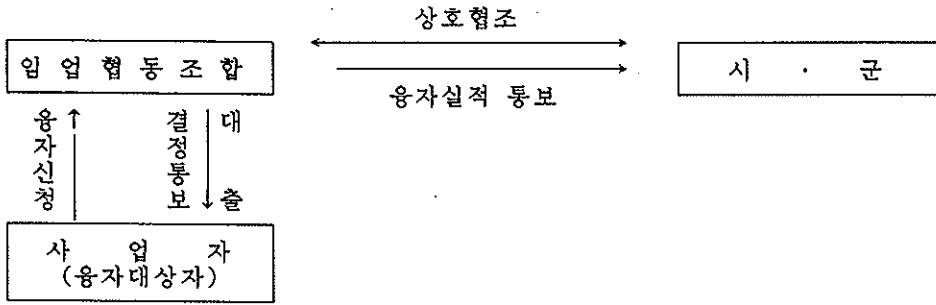
## 다.사업신청

(1)신청자격

- 독립가 : 독립가인정절차등에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독립가로 인정된 자
- 입업후계자 : 입업후계자 선발 및 육성에 관한규정 제7조에 의거 입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2)신청절차





## 라. 대상자 선정절차

독립가·입업후계자로 인정 및 선발된 자가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할 입업협동조합에 신청하면 현지 확인후 종합 심사하여 선정함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할구역내의 인정·선발된 독립가 및 입업후계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독립가 실태조사서, 입업후계자 현황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산림경영 실적등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관할 시·군입업협동조합장과 협조하여 독립가 및 입업후계자별로 산림공무원 1명과 입업기술지도원 1명을 전담지도원으로 지명하여 독립가 및 입업후계자에게 정부산림시책홍보와 산림경영 기술지도를 담당하도록 함.
- 입업기술지도원과 지도담당공무원은 독립가 및 입업후계자와 수시로 접촉하여 산림경영실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나. 보고

- 독립가 인정 및 해제상황 보고 (도) : 수시
- 입업후계자 선정 및 해제상황 보고 (도) : 매분기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산림청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  
입업협동조합중앙회 총무부
- 시·도 : 농정국 산림과  
입업협동조합중앙회 ○○도지회
- 시·군 : 산림과, 입업협동조합



< 별지 제2호서식 >

접수번호	임업후계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사 진 (반명합판)
신청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전화번호	
	최종학력	학교 과, 전공 졸업등		졸업년월일	
사업분야	(목재생산, 버섯재배, 관상수재배, 복합임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산림경영 규모 등	소재지 : 시·도 시·군 면 리 산 번지의 필지 총면적 : ha(본인소유 : ha, 기타 : ha) 기타사업규모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주요경력 (자격증, 포상, 교육 훈련등의 주요경력)	일자 또는 기간		내 용		비고
<p>본인은 산림법 제10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9 및 임업후계자선발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 귀하</p>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 9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업기능인훈련(공공)

### 1. 목 적

- 농산촌 인력난에 따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산림작업의 질적향상을 위한 전문임업기능인 양성
  - 임업기능인 양성 : 2,652명('95까지) → 12,000명(2010년까지)

### 2. 추진방향

- 임업기계화를 위한 임업장비의 조작·정비훈련
- 국가기술자격(영림기능사)을 취득시켜 전문임업인으로 육성
- 목가공기술훈련 및 산림내 소득작물훈련등을 통하여 농외소득증대
- 임업기능인훈련원의 효율적 운영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사업량 : 명,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2,232	420	504	528	528	3,264	7,476
사 업 비	계	2,189	676	1,083	997	1,097	9,316	15,358
	국 고	2,189	676	1,083	997	1,097	9,316	15,358
	지방비	-	-	-	-	-	-	-
	용 자 자부담	-	-	-	-	-	-	-



## 나. '96 지원계획

- 강릉, 양산, 진안임업기능인훈련원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사업비 보조

(단위:백만원)

기 관 별	'96 지 원 계 획			
	계	인 건 비	운 영 비	훈 련 시 설 비 등
계	1,083	423	346	314
강릉 양산, 진안	885 228	338 85	203 143	314 -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나. 사업 현황

#### (1) 사업내용

- 임업기능인 훈련
  - 영림단원 신규 및 보수훈련
  - 임업기계 전문훈련, 수탁교육, 산주 및 협업체훈련 실시 등
- 실습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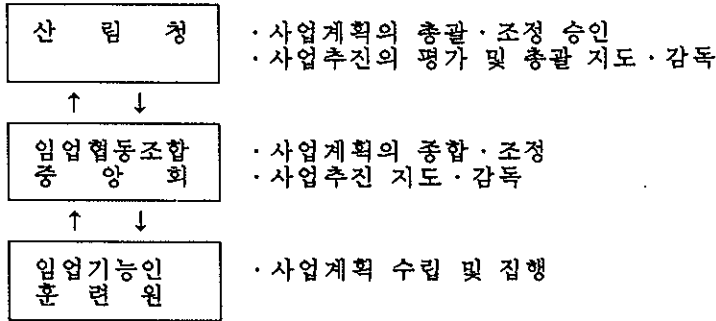
#### (2) 지원대상

강릉, 양산, 진안임업기능인훈련원

#### (3) 지원규모 및 조건

3개 임업기능인훈련원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사업비 국고보조

(4) 사업시행체계



다. 사업 신청

- (1) 신청 자격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2) 신청 절차
  - 사업계획서를 작성 전년도 11.30일까지 산림청에 승인요청  
(임업기능인훈련원위탁·관리규정 참조)
  - 산림청 승인사항에 따라 분기별로 보조금 교부 신청
- (3) 구비서류
  - 임업기능인 훈련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라. 사업 시행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각 훈련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교육일정표에 의한 피교육자 차출 및 민유림영림단의 교육훈련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5. 행정 사항

가. 보고

- 임업기능인훈련원 사업실적 보고(보고서식 : 임업기능인훈련원위탁·관리규정 참조)
  - 상반기 보고 : 반기익월 10일까지
  - 연말 종합보고 : 익년도 1월 10일까지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산림청 산림경영과

# 임업기능인훈련 사업계획서

## I. 목 표

## II. 추진 방향

## III. 사업별 추진계획

### 1. 임업기능인훈련계획

#### 가. 과정별 훈련계획

훈련과정	훈련방법	훈련기간	훈련회수	훈련 인원		훈련대상	훈련내용
				기당	연인원		

#### 나. 관서별 피교육자 현황

관서별 훈련과정	계	
계		

## IV. 실습림 경영 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 V. 예산집행계획

(관서명)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자 부 담
1. 인건비				
2. 훈련사업비				
가. ○○과정				
나. ○○과정				
다. ○○과정				
라. ○○과정				
⋮				
3. 실습팀운영등 기타사업비				
가. ...				
나. ...				
다. ...				
⋮				

## 임업기능인영립단 및 임도시공 장비지원(공공)

### 1. 목 적

임도시설, 자연휴양림조성등 특수 산림토목사업과 조림, 육림등 각종 산림작업을 시·군임협 및 산림개발사업단과 임업기능인영립단이 전담 실행토록 하므로써 산림사업의 전문화를 통한 임업생산성 향상 도모

### 2. 추진방향

- 임업기능인영립단(기능인 훈련 및 산림사업 기본장비등)
  - 산림사업 전문기능인으로 육성
  - 산주 위탁사업 및 정부 보조사업 중점대행
  - 민유림 산림사업의 전담 실행조직으로 육성
- 시·군임협 및 산림사업개발사업단(임도시공장비)
  - 시·군임협 및 산림개발사업단을 산림토목사업의 전문 실행 조직으로 육성
  - 산림사업의 전문화, 기계화를 통한 임업생산성 향상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추진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 영립단(단)	141	31	31	40	40	240	523
	- 시·군임협 및사업단 (개)	198	18	33	66	66	-	381
사	계	8,729	1,313	3,270	7,801	8,033	11,677	40,823
	- 국 고	8,729	1,304	3,270	7,801	8,033	11,677	40,814
	- 자부담	-	9	-	-	-	-	9
업	영 립 단	3,325	603	474	1,202	1,347	11,677	18,628
	- 국 고	3,325	603	474	1,202	1,347	11,677	18,628
	- 자부담	-	-	-	-	-	-	-
비	시군임협.사업단	5,404	710	2,796	6,599	6,686	-	22,195
	- 국 고	5,402	701	2,796	6,599	6,686	-	22,184
	- 자부담	2	9	-	-	-	-	11

※ 임업기능인 영립단의 1단 기준은 12명임.

## 나. '96지원계획

- 영 립 단 : 31단(473,727천원)
- 임도시공 : 장비 33대(2,975,983천원)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임업협동조합중앙회)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영 립 단 : 산림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톱, 안정장비 및 교육경비 지원
- 시·군임협 및 사업단 : 산림토목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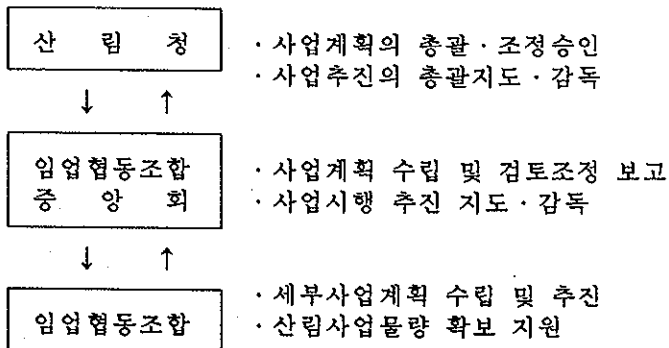
### (2) 지원대상

- 시·군 임협 및 산림개발사업단, 임업기능인 영립단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일반회계, 국고보조 100%
- 사 업 단 : 701,352천원 (9개단)
- 영 립 단 : 603,446 " (31개단)

### (4)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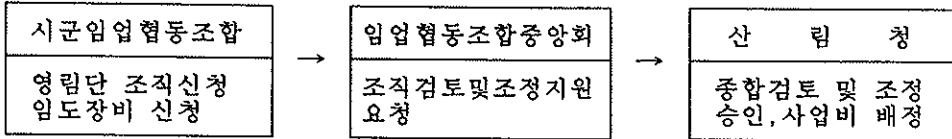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소속 개발사업단 및 시·군 임협
- 영림단 조직·운영을 희망하는 시·군임업협동조합

### (2) 신청절차



###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1부 (통합요령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라.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임도시공장비 : 시·군 임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도지회
  - 임업기능인 영림단 : 당해년도 기관별 신규조직한 영림단
- 우선순위
  - ① 임업기능인 영림단 [ 당해년도 신규조직한 영림단 기본장비 구입  
작업단 조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 ② 임도시공장비지원 [ 시·군 임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도지회

## 마. 사업시행

- 영림단의 필수소요장비인 기계류, 예불기등은 임업협동조합에서 구입  
배정하고 있음.
- ※ 임업협동조합에서 보유장비 출납 및 운용대장 비치 기록유지
- 시·군 임협 및 사업단의 주요장비는 주로 임도시공에 필요한 굴삭기등으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달구입 배정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 장비운영 및 작업실행 지도감독

### 나. 보 고 :

- 장비운영실적 보고(반연보)
- 작업단 운영실적 보고( " )
- 사업단 " ( " )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산림청(산림경영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시·도 : 임업협동조합 도지회
- 시·군 : 임업협동조합



## 산림개발사업단 및 영림단 육성 사업계획서

### 1. 시·군임협, 사업단 장비지원 및 영림단 조직계획

○ 도별 장비지원 및 영림단 조직계획

(단위 : 단)

구 분	계	본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합및사업단											
영 립 단											

※ 1개단 기준 : 조합 및 사업단(1대), 영림단(12명)

○ 년차별 조직계획

(단위 : 단)

도 별	계		'94까지		'95		'96		'97		'98-2004	
	조합 사업단	기능인 영림단	조합 사업단	기능인 영림단	조합 사업단	기능인 영림단	조합 사업단	기능인 영림단	조합 사업단	기능인 영림단	조합 사업단	기능인 영림단
계												
본 부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2. 장비지원요청(1개단당 산출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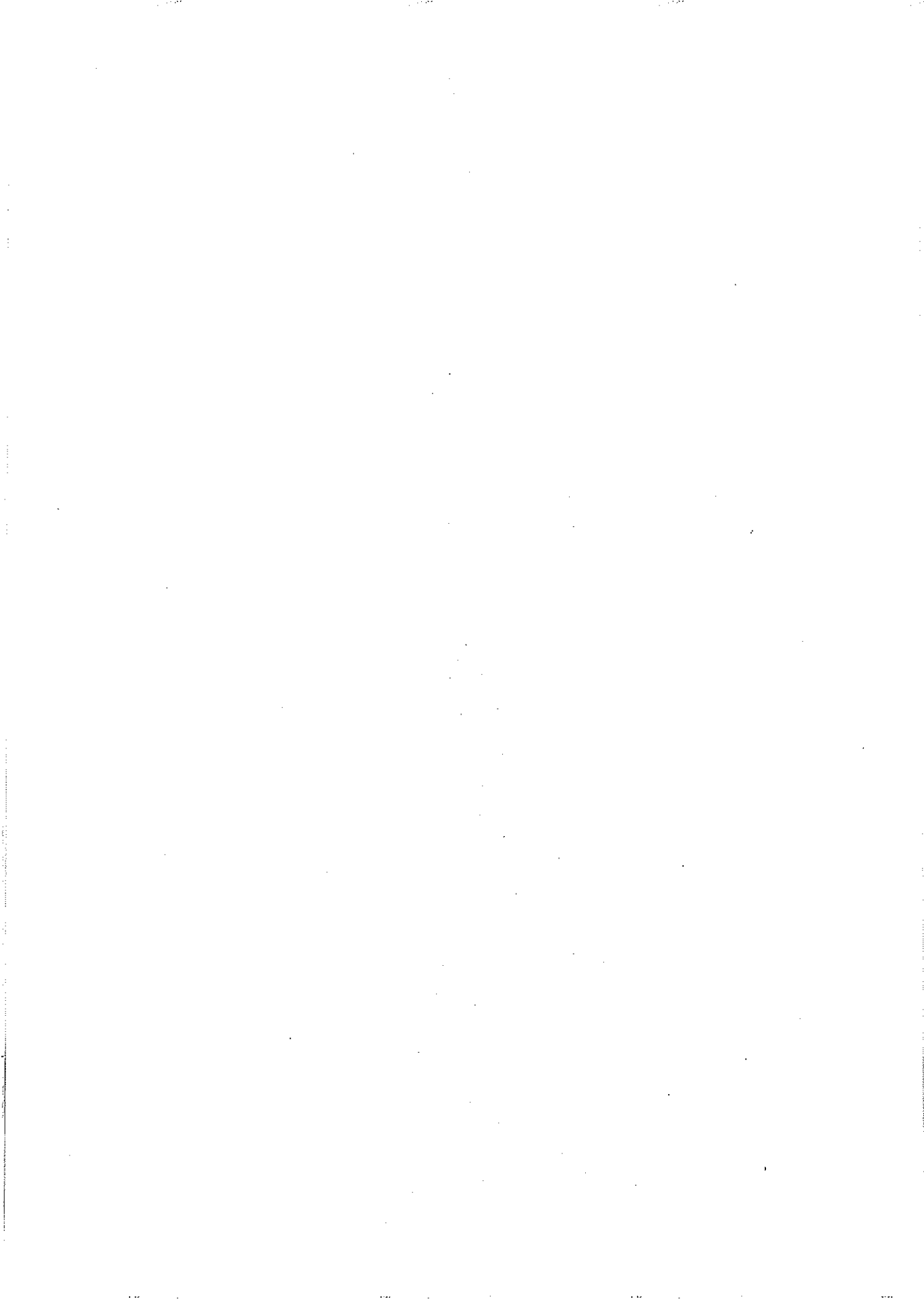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조합 및 사업단				영림단			
장비명	규격	수 량	금 액	장비명	규격	수 량	금 액

## 3. '96 도별 조합사업단 및 영림단 조직명단

구분	본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단										
영림단										

※ 익년도 조직계획 명단을 매년 10월까지 제출



## 2. 산림 자원 조성



## 조림사업(공공)

### 1. 목 적

피해림과 불량림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 조림으로 인공림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조림을 실행하여 장기안정적인 목재자급 기반과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여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 2. 추진방향

- 산림의 경영목적과 입지여건에 따라 다양한 조림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산림투자의 효율성 증대와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
- 생산임지를 중심으로 지역 또는 권역단위로 집중투자
  - 읍·면을 경영기본단위로 종합적이고 일관성있게 계획적 추진
- 정부보조사업의 확대 및 지원방법의 개선
  - 산림경영의 성실도에 따라 정부지원의 차등지원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사업량: ha, 사업비: 백만원)

구 분	'94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26,840	20,000	21,000	28,100	28,100	168,600	292,640	
사 업 비	계	54,788	50,030	75,682	68,605	68,605	411,630	729,340
	국 고	20,836	24,160	30,726	35,767	35,767	214,602	361,858
	지방비	18,068	16,738	36,906	22,228	22,228	133,368	249,536
	융 자	1,600	2,000	2,500	2,000	2,000	12,000	22,100
비 자 담	14,284	7,132	5,550	8,610	8,610	51,660	95,846	

## 나. '96 지원계획

(사업량:ha, 사업비:백만원)

구 분	계	장 기 수	대 묘	환경조림	맹아갱신	숙은나무재조림
사업량	19,700	17,000	500	1,500	500	200
예산액	30,726	25,025	1,449	3,029	318	905

※ 예산, 묘목생산등에 따라 사업량과 예산액이 조정될 수 있음.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사업종류 : 장기수, 대묘, 환경조림, 맹아갱신조림, 숙은나무재조림

㉡ 내 용

##### < 장기수조림 >

- 목 적 : 병해충피해지, 산불피해지, 벌채적지 및 불량림에 대한 갱신 대상지에 목재생산을 위한 장기성 수종의 묘목을 식재하여 산림자원 조성
- 방 법 : ha당 2,000본 ~ 5,000본 식재
- 식재묘의 규격 : 1~4년생
- 수 종 : 강송, 잣나무, 전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해송, 리기테다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버지니아소나무, 참나무류, 자작나무류, 물푸레나무, 느티나무 등 산주희망수종

##### < 대묘조림 >

- 목 적 : 고속도로, 국도·철도 및 주요도로변등 공익성이 높아 단기간내 경관조성이 필요한 임지를 대상으로 큰나무(대묘)를 식재하여 속성녹화와 산림자원 조성
- 방 법 : ha당 1,500본 식재
- 식재묘의 규격 : 8년생내외 (침엽수)
- 수 종 : 잣나무, 전나무, 삼나무, 편백, 화백, 독일가문비, 해송 등

< 환경조림 >

- 목 적 :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맑은물, 깨끗한공기의 공급과 보건·휴양공간의 제공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를 위하여 공해에 강한 수종과 지역별 향토특색 수종을 도시지역, 산업시설지, 사적지, 관광지주변등 산림과 공한지에 식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방 법 : 조경적설계에 의거 ha당 400본 ~ 3,000본 식재
- 식재묘의 규격
  - 산림수종 : 산림청 기준규격 또는 시중 유통가격
  - 일반수종 : 시중 유통규격
- 수 종 : 잣나무, 전나무, 이태리포플러등 속성수류, 산벚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산딸나무 등

< 맹아갱신조림 >

- 목 적 : 활엽수 임지의 벌채적지를 대상으로 벌채된 충실한 그루터기가 없는 지역에 인공적으로 장기수조림과 같이 식재하여 벌채된 그루터기에서 발생한 맹아(옴짝)와 인공조림한 묘목을 키워 산림 자원 조성
- 방 법 : ha당 1,000본 ~ 2,000본 식재
- 식재묘의 규격 : 1-1묘 이상의 큰묘목 식재
- 수 종 : 장기수 조림용 수종과 같음

< 숲은나무재조림 >

- 목 적 : 육림촉진 및 자원활용과 산주수익을 위하여 육림대상지에서 수목을 숲아 도시·공단등 생활권 주변등에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 방 법 : 조경적 설계에 의거 ha당 800~1,500본 식재
- 식재묘의 규격 : 장기수조림지나 천연림 밀생치수림지역에서 숲아낸 수목
- 수 종 : 잣나무, 강송, 편백, 해송, 리기테다, 자작나무 등



(2) 지원대상

- 보조 : 조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산주
- 용자 : 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신청자 (산주)

(3) 지원규모 및 조건

㉞ 보조사업

° 지원규모 ('96 국고보조)

(사업량 : ha)

사업별	사업량	ha 당			총지원규모
		사업비	지원액	%	
계	19,700	원	원		백만원 30,726
장기수	17,000	2,484,673	1,457,794	59	25,025
대묘	500	6,724,002	2,897,440	43	1,449
환경조림	1,500	6,724,002	2,019,000	30	3,029
맹아갱신	500	1,218,765	636,467	52	318
숙은나무재조림	200	9,045,287	4,522,643.5	50	905

° 지원조건

당해년도 조림대상지

㉟ 용자사업

°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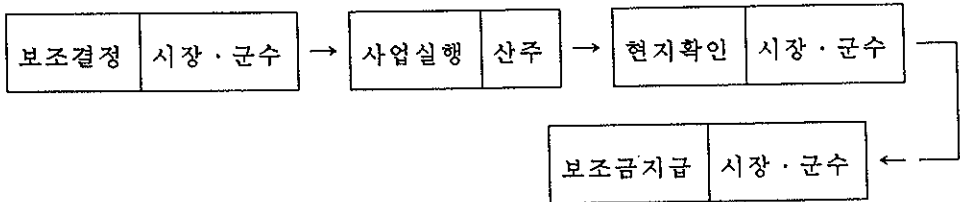
- 총용자규모 : 2,600백만원
- 지원규모
  - 자력사업 : 용자사업단비를 기준으로 100%까지 용자
  - 보조사업 : 산주자부담액의 100%까지 용자

° 용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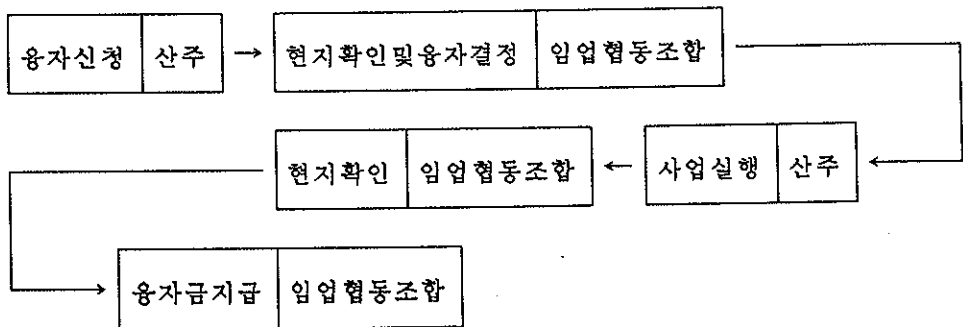
구분	금리	용자기간		
		계	거치	상환
장기수	년 3%	35년	20년	15년
기타	"	15	10	5

(4) 사업시행체계

○ 보조사업



○ 용자사업



다. 용자사업신청

(1) 신청자격

- 영림계획상 조림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 조림사업 시업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 자력으로 조림사업을 희망하는자

(2) 신청절차 : 조림희망자가 시·군 임업협동조합장에게 신청

(3)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라. 대상지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다음 조림대상지의 조림희망자
  - 미립목지(나무가 없는 산림)
  - 산불 및 병해충피해지
  - 벌채한 산림
  - 수종갱신대상지
- 우선순위 : 다음순위에 의거 지원
  - ① 미립목지(나무가 없는 산림)
  - ② 산불 및 병해충피해지
  - ③ 수종갱신 대상지

### (2) 선정절차

- 영림계획서와 시업명령사항 및 자력조림 희망사항을 검토
- 보조사업은 시장·군수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선정
- 융자사업은 시·군 임업협동조합장이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선정

## 마. 사업시행

### (1) 조림예정지 선정

- 영림계획상 조림예정지
- 5대강유역 수원함양산림 종합관리 대상지
- 임업진흥촉진지역
- 산불피해지와 병해충피해지중 조림복구가 필요한 대상지
- 부실초지·휴경지로서 산림으로 전환할 대상지 최대한 선정
- 기타 불량림으로서 수종갱신이 시급한 지역
- 주요도로변, 철도변, 사적지, 관광지 주변등 공익성이 높아 단기간내 경관조성이 필요한 임지

### (2)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 지역완결조림을 위해 주변의 불량림은 빠짐없이 정리하여 임상을 개량하되 우량목은 존치
- 제거된 조림지장물은 식재작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중·횡으로 줄을 맞추어 정리
- 임외지역이라도 유희토지등 조림이 필요한 경우 조림권장 및 정리작업 실시
- 맹아갱신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은
  - 벌채지 전면적에 분산식재 보다는 가급적 군상 또는 대상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정리

### (3) 조립수종

- 적지적수가 되도록 수종 선정
- 도별 묘목수급계획량 범위내에서 산주희망수종 우선적으로 반영
- 산주희망수종이 없을때 산주가 구입 식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 환경조립은 공해에 강하거나 미관이 수려한 향토수종 선정
- 맹아갱신조립은 맹아에 의해 피압이 되지않을 수종을 선정

### (4) 조립방법

- 조립대상지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조립설계를 하여 실행
- 조립방법의 다양화 - 나무아래조립(수하식재), 섞어심기(혼합조립)등
- 환경조립은
  - 단목보다는 군상으로 식재
  - 단층일제립보다는 복층립으로 조성(침엽수와 활엽수 혼합조립)
- 식재본수(ha당)는 경영목적, 수종, 지리, 입지, 묘목의크기, 경제성 등에 따라 수급계획량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실행
  - 장 기 수 : 2,000~5,000본 (기준본수 3,000본)
  - 대 묘 : 1,500본
  - 환경조립(기준본수 1,500본)
    - 산림지역 { 대 묘 조 립 : 1,500본
    - { 소 묘 조 립 : 3,000 "
    - { 포플러류조립 : 400 " (포플러류만 조립할 경우)
    - 녹 지 대 : 1,000~2,000본(기준본수 1,500본)
  - 맹아갱신조립 : 1,000~2,000본(기준본수 1,500본)
  - 속은나무재조립 : 800~1,500본(기준본수 1,000본)

### (5) 묘목·비료수급

- 조립설계에 따라 묘목·비료를 수급
- 묘목은 중요사업실시요령에 따라 신속·정확히 검사하고, 불량묘가 수급되지 않도록 검수에 철저 (식재후 풀베기작업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활엽수묘목은 백색페인트로 줄기에 표시한 후 검수)
- 지방비조립, 자력조립에 필요한 묘목은 반드시 수급계획에 반영
- 장거리운반으로 묘목이 건조·부패되지 않도록 신속 운반가식하고 특히 분묘는 분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

(6) 식재작업

- 식재열(줄)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식재거리를 유지하여 최대한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실행
- 장기수와 맹아갱신조림은 작업시 비료주기(본당2개) 병행 실시  
※ 묘목뿌리에 너무 가까이 주지 않도록 유의
- 조림지별로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식재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완료후 최종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묘목·비료가 유실되거나 폐기사례가 없도록 함.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주 체 : 산림소유자, 시·군(시·도) 및 산림청
- 사후관리방법  
- 검목 실시

구 분	점 검 자	점검대상	점검시기	점 검 내 용
1차 검목	시장·군수	당년조림지	조림당년도 6~7월	조림목에 대한 활착상황(활착율)
2차 검목	시·도지사	조림후 3~5년된 조림지	8~9월	식재본수에 대한 현존본수, 생육상황, 사후관리상황

- 조림사업 실행상황을 "조림지 사후관리대장"에 기록유지
- 현지지도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결과반영  
- 활착율 80%미만 조림지는 익년도 보식
- 조림사업시책에 반영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산림청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
- 시·도 : 도시계획(환경녹지, 농정, 산림, 산업경제)국 녹지(산림, 자원조성)과
- 시·군 : 녹지(산림)과

## 산림개발기금융자신청서

사업명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총 사업비 (천원)				사업소재지
				계	용자	자담	보조	

199 . . . . .

○ 신청인 주소

상 호(법인명)

전 화

성 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첨부서류

가. 소유권확인서

1부

나. 차주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자금대출시) 각 1부

○ ○ 임업협동조합장 귀하

## 육림사업(공공)

### 1. 목 적

조림목 피압방지와 임목성장촉진 및 형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지별 적정한 육림사업을 적기실행함으로써 우량용재 생산기반구축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

### 2. 추진방향

- 체계적인 육림관리로 임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형질을 향상시켜 경제적·환경적 기능이 높은 자원으로 육성
  - 인공림은 조림후 벌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기에 육림을 실행하여 우량용재림으로 유도
  - 천연림은 이용가치가 있는 밀생활엽수림을 중심으로 천연림보육 사업을 실행하여 우량임분으로 육성
- 생산임지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적기에 육림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검목제도의 운영으로 조림지의 활착상황을 조사하여 활착율 80%미만 지역은 보완조림 실시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사업량: ha, 사업비: 백만원)

구 분		'94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169,000	170,416	164,700	192,900	192,900	1,157,400	2,047,316
사 업 비	계	57,523	69,427	76,271	72,612	72,612	435,672	784,117
	국 고	16,758	21,951	23,721	23,174	23,174	139,044	247,822
	지방비	17,168	21,206	22,422	21,603	21,603	129,618	233,620
	용 자	3,500	4,500	5,300	4,500	4,500	27,000	49,300
	자 담	20,097	21,770	24,828	23,335	23,335	140,010	253,375

## 나. '96 지원계획

(사업량:ha, 사업비:백만원)

구 분	계	풀 베 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비고
사업량	164,700	77,000	38,800	37,300	11,600	
예산액	23,721	7,041	9,326	3,583	3,771	

※ 예산등 사정에 따라 사업량과 예산액이 조정될 수 있음.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가) 사업종류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나) 내 용

#### < 풀 베 기 >

- 목 적 : 식재한 묘목이 피압되지 않도록 주위의 잡초나 관목을 베어주어 조림목의 정상적 성장 촉진
- 시 기 : 6~8월 사이에 년1-2회 실시
  - 잡초와 관목이 적은 임지 : 7월중순에 실시 (1회)
  - 잡초와 관목이 무성한 임지 : 6월하순과 8월초순에 실시 (2회)
- 기 간 : 조림후 3~5년간
  - 잣나무등 어릴때 생장이 느린 수종 : 5년간
  - 기타장기수 : 3년간
- 방 법 : 수종이나 입지조건에 따라 모두베기, 둘레베기도 하나 주로 줄베기로 실행
  - 줄 베 기 : 식재된 묘목을 중심으로 하여 90-100cm 폭으로 식재열에 따라 풀이나 잡관목 제거
  - 모두베기 : 조림목 이외의 풀이나 잡관목을 모두 제거
  - 둘레베기 : 식재된 묘목을 중심으로 반경 50cm 정도내의 풀 및 잡관목 제거



< 어린나무가꾸기 >

- 목 적 : 조림목이 잡관목으로 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 성장촉진으로 조림성공 유도
- 대상입분 : 조림후 5~10년되는 입지
- 제거대상목
  -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과 덩굴
  - 피해목
  - 생장이 불량한 도태대상목, 낙엽송은 열세목
- 작업시기 : 6~9월 사이 (늦어도 11월말까지 완료)
- 방 법 : 제거대상목이나 조림목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 제거

< 덩굴제거 >

- 목 적 : 임목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를 제거하여 임목고사 방지와 성장촉진 및 형질향상
- 대상지 : 칩덩굴이 임목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입지
- 시 기 : 2~11월
  - 근사미에 의한 제거작업 : 4~8월
  - 디캄바(반벨)에 의한 제거작업 : 2~3월, 10~11월
- 방 법
  - 인력으로 제거하거나 칩뿌리부분에 근사미를 주입 또는 디캄바(반벨)도포
  - ※ 디캄바 사용은 약해에 극히 유의

< 천연림보육 >

- 목 적 : 우량한 천연림은 수종갱신대상에서 제외하여 알맞는 보육작업을 실행 용재림으로 유도함으로써 생태적 임업경영과 아울러 투자의 효율을 높임.
- 대상지
  - 치수림보육대상지 : 상층임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천연입분
  - 유령림보육대상지 : 평균수고 4-12m정도로서 상층임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난 입분으로 상층입관이 밀폐되어 수관경쟁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입분
  - 위와같은 대상지로 최소한 10년이내에 주벌수확 대상이 안되는 입분
- 작업시기 : 2~11월
- 방 법
  - 형질이 좋은 미래목을 ha당 400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하여 미래목에 대한 가지치기와 방해목을 제거
  - 제거대상 : 미래목과의 경합목, 폭목, 피해목, 형질불량목, 고사목, 덩굴류

(2) 지원대상

- 보조사업 : 육림사업을 희망하는 산주
- 융자사업 : 육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신청자 (산주)

(3) 지원규모 및 조건

㉞ 보조사업

◦ 지원규모 ('96 국고보조)

(사업량 : ha)

사업별	사업량	ha 당			총지원규모 백만원
		사업비 원	지원액 원	%	
계	164,700				23,721
풀베기	77,000	304,794	91,438.2	30	7,041
어린나무가꾸기	38,800	801,213	240,363.9	30	9,326
덩굴제거	37,300				
- 신규	18,000	285,683	145,213	51	2,614
- 보완	19,300	95,540	50,193	53	969
천연림보육	11,600	812,812	325,124.8	40	3,771

◦ 지원조건

당해년도 육림대상지

㉟ 용자사업

◦ 지원규모

- 총용자규모 : 5,300백만원

- 지원규모 :

· 자력사업 : 용자사업단비를 기준으로 100%까지 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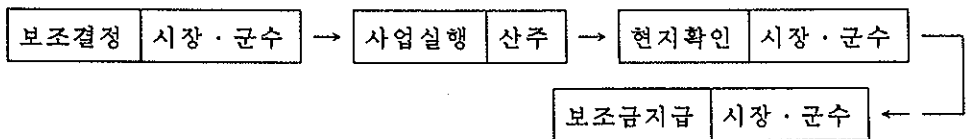
· 보조사업 : 산주부담액의 100%까지 용자

◦ 용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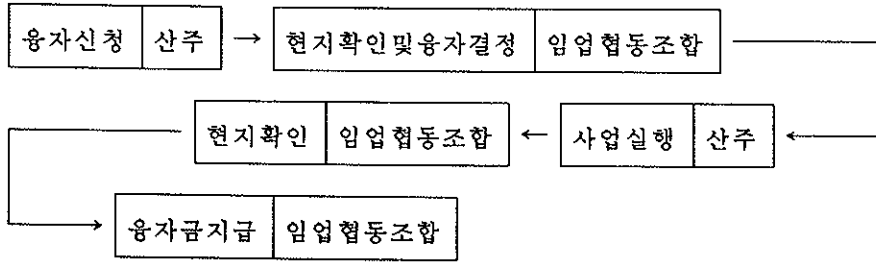
구분	금리	용자기간		
		계	거치	상환
장기수육림	년 3%	35년	20년	15년

(4) 사업시행체계

◦ 보조사업



○ 용자사업



## 다. 용자사업신청

(1) 신청자격

- 영림계획상 육림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 육림사업 시업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 자력으로 육림사업을 희망하는자

(2) 신청절차 : 육림희망자가 시·군 임업협동조합장에게 신청

(3)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영림계획상 육림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 육림사업 시업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 우선순위

- ① 영림계획상 육림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 ② 육림사업 시업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2) 선정절차

- 영림계획서와 시업명령사항 및 자력육림 희망사항을 검토
- 보조사업은 시장·군수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선정
- 용자사업은 시·군 임업협동조합장이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선정

## 마. 사업시행

### (1) 풀베기사업

- 조림지별 사업기준
  - 잣나무, 전나무소묘(2-1, 2-2묘) : 식재당년을 포함 5년간 실시
  - 대표기타수종조림지 : 식재당년을 포함 3년간 실시
  - ※ 년1회 실시함을 기준으로 하되 조림목 피압이 심한 곳은 2회 실행
- 풀베기를 원칙으로 실행하되 리기테다등 동해피해가 우려되는 임지는 들레베기로 실행하여 조림목을 보호
- 작업시기
  - 년1회작업지 : 늦어도 7월말까지 실행
  - 년2회작업지 : 1차(6월), 2차(8월)

### (2) 어린나무가꾸기

- 대상지는 장기수 인공조림지로서 풀베기 작업완료 후 간벌이전에 잡관목 등이 조림목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 이의 제거작업이 요구되는 임지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반복 실시
  - 사업량은 장기수와 대표조림지중 식재 후 5-10년되는 임지를 대상으로 하여 2회 실행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회수에 구애받지 말고 임지여건에 따라 조림목 피압이 예상되는 임지는 반복 실행
- 특히, 임내정리방식 작업을 지양하고 조림목의 생육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하층목은 작업비 절감과 임지보호를 위해 잔존시키거나 무릅높이로 베어 멍아(움) 발생을 억제시킴.

### (3) 덩굴제거

- 1차 제거후 다음년도에 보완제거하여 굵덩굴에 의한 임목과 조림목의 피해근절
- 방법은 근사미 약제주입 및 디캄바(반벨)액제 도포방법으로 제거
- 작업시기는 2~11월에 실시하되(약종별 제거적기에 유의하여 실행) 효과를 확인하고 재생·누락 또는 지근이 제거되지않아 덩굴이 다시 생육하고 있는 임지는 풀베기 작업시에 인력으로 제거하고, 특히 보완작업지는 완전제거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지도

### (4) 천연림보육

- 영림계획서에 계획된 임지와 기타 년도별 계획에 반영된 임지등을 대상으로 사업실행계획지를 식별하기가 쉬운 이른봄(2-4월)에 전개소 현지확인조사를 실행하여 예정지를 선정하고 산주에게 사업통보

- 산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가급적 사업실행 후 10년 이내에 주변수확을 하지 않을 임지를 대상으로 확정  
- 영림계획상 주변대상지는 천연림보육 대상지에서 제외
- 대상지는 용재림으로 육성가치가 높은 밀생임분으로 하되, 침엽수임지(특히,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만연지역 제외)보다는 우량활엽수 임지를 우선적으로 선정
- 미래목은 최종수확기까지 잔존 보육시켜야 하므로 형질우량목을 평균 5m이상 간격으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ha당 400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흉고의 평균직경 10cm미만인 임분의 경우는 미래목의 선정 및 표식을 생략할 수 있음.
- 군별로 현지실연교육을 실시하고 도별로 지역조건에 알맞는 보육기술을 개발하여 발전적으로 추진
- 시·군별 사업량은 임상상태를 감안하여 배정  
(대상지가 많은지역은 많게 적은지역은 적게 배정)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주 체 : 산림소유자, 시·군(시·도) 및 산림청
- 사후관리방법
  - 육림사업 실행상황을 "조림 및 사후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 현지지도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나. 보 고

- 육림사업 실행 결과보고 (12월 말까지)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산림청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
- 시·도 : 도시계획(환경녹지, 농정, 산림, 산업경제)국 녹지(산림, 자원조성)과
- 시·군 : 녹지(산림)과

## 산림개발기금융자신청서

사 업 명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총 사 업 비 (천원)				사업소재지
				계	용 자	자 담	보 조	

199 . . . . .

○ 신 청 인 주 소

상 호(법인명)

전 화

성 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첨부서류

가. 소유권확인서

1부

나. 차주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자금대출시) 각 1부

○ ○ 임업협동조합장 귀하

## 간벌사업(공공)

### 1. 목 적

나무가 뽕뽕하게 들어선 임분을 대상으로 숙아내기 작업을 실시하여 임목의 성장촉진과 건전한 임분 육성으로 우량용재 생산을 위한 간벌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

### 2. 추진방향

- 주요 "산"별 또는 간벌시범단지내 집중실행
-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중심으로 단지화하여 집중실행
- 집단 간벌대상지에 임도시설 확대로 간벌 촉진
- 간벌기술개발보급 및 제도개선으로 간벌활성화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천ha)		144	22	24	30	35	255	510
사 업 비	계	39,111	12,251	15,626	19,737	22,335	166,872	275,932
	국 고	7,610	4,789	6,148	7,793	9,092	66,237	101,671
	지방비	7,615	4,789	6,148	7,793	9,092	66,239	101,676
	용 자	220	278	255	255	255	1,275	2,538
	자부담	23,666	2,395	4,075	3,896	3,896	33,119	70,047

#### 나. '96지원계획

- 물량 [ 보조 : 23,670ha  
          용자 : 392ha
- 예산 [ 보조 : 15,371백만원  
          용자 : 255 "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조림후 15년전후의 밀생된 임분을 대상으로 슈아베기 작업을 실시하여 임목의 재적생장을 촉진시켜 우량대경재 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

(2) 지원대상

- 보조사업 : 주요 "산"별 시범단지, 임업진흥촉진지역, 간벌집단화 단지내의 임지
- 용자사업 : 간벌 희망 산주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96 : 1ha당)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보 조 간 벌	649,397 (100%)	259,759 (40%)	259,759 (40%)	-	129,879 (20%)
용 자 간 벌	649,400	-	-	649,4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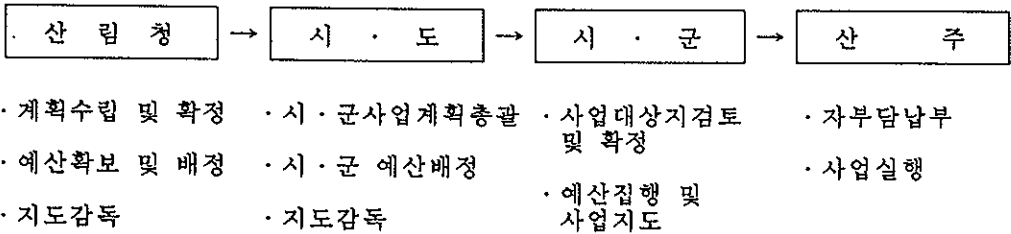
- 용자조건 : 3년(2년거치 1년상환), 년리 3%

※ 보조간벌중 자부담금액을 전액 용자로 지원 받을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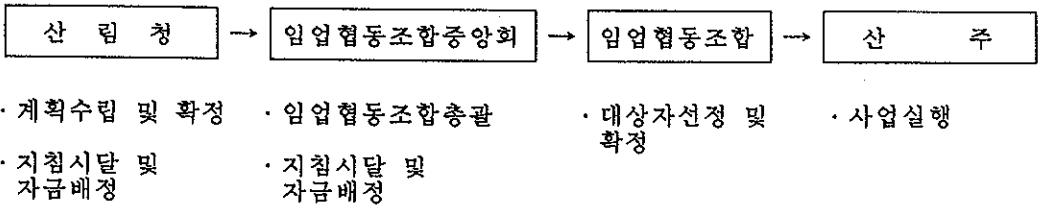


(4) 사업시행체계

○ 국고보조사업 체계도



○ 용자사업체계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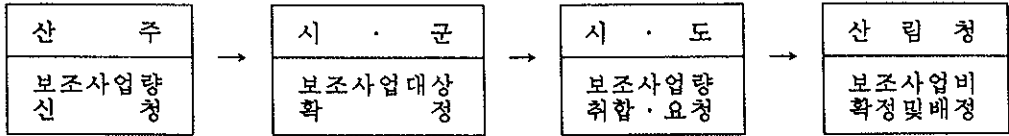
○ 국고보조사업

- 주요 "산"별 또는 임업진흥촉진지역내의 산림
- 독립가, 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 영세산주로서 간벌이 시급한 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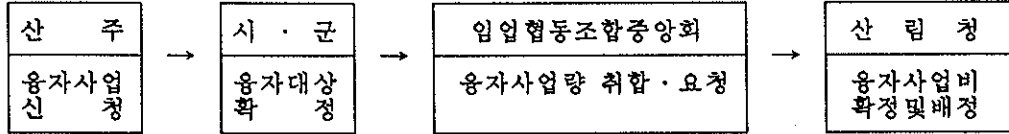
○ 용자사업 : 간벌을 희망하는 산주

(2) 신청절차

· 국고보조사업



· 용 자 사 업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1부 (통합요령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농림수산정책자금 용자신청자료 1부 (통합요령 제2호서식)
- 소유권 확인서 1부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주요 "산" 별 간별대상 임지
  - 입업진흥촉진지역 및 간별집단화 단지
  - 영세산주로서 간별이 시급한 임지
- 우선순위
  - ① 독립가
  - ② 입업후계자
  - ③ 영세산주
  - ④ 소재산주
  - ⑤ 기 타

(2) 선정절차

시·군 또는 입업협동조합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보조사업) 또는 입업협동조합 직원(용자사업)이 현지확인 검토후 대상지 확정

마. 사업시행

- 국고보조사업 또는 용자사업자금을 지원받아 산주가 직접 사업실행할 수 있으나 산주가 직접사업을 실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입업협동조합에 대행시킬 수도 있음.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간벌사업 실시 요령(사유임목벌채 실시요령)에 따라 간벌사업지 지도감독

### 나. 보 고

○ 국고보조금 정산실적 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산림청 산림경영과(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시·도 : 농정국 산림과(임업협동조합도지회)
- 시·군 : 산림과(지역 임업협동조합)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간 별 사 업

2. 현 황

사업예정지	위 치	군. 면. 리. 번지
	소유자명	
현 황	면 적	필지 <span style="float: right;">ha (㎡)</span>
	영림계획 편성내용	
기 타 특 이 사 항		

3. 세부사업계획

구 분	계획면적	단 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산림소유자	㎡ (ha)	원					
산림경영자							
단체또는회사							

## 조림용 묘목생산 (공공)

### 1. 목 적

- 정부지정 묘목생산자에게 필요한 양묘자금을 지원, 우량한 묘목을 책임 생산케 함으로써 조림사업 성과거양

### 2. 추진방향

-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자중 자금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용자지원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사업량:백만본, 사업비: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225	71	64	75	75	450	960
사업비	계	35,220	11,167	10,910	12,750	12,750	76,500	159,297
	용자	21,132	6,700	6,546	7,650	7,650	45,900	95,578
	자담	14,088	4,467	4,364	5,100	5,100	30,600	63,719

#### 나. '96 지원계획

- 사업량 : 64,176천본
- 사업비 : 6,546백만원 (용자)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지침시달, 자금배정
- 시·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임업협동조합 : 현지 심사후 자금집행

#### 나. 사업 현황

- (1) 사업내용 : 조림용 묘목생산 자금지원
- (2) 지원대상 : 정부지정 묘목생산자

- (3)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사업자당 사업비 총액의 100백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융자 6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금리 연 5% (3년거치 2년상환)
- (4) 사업시행체계
  - 정부조립계획에 의거 시·도지사가 정부지정 묘목생산자별로 사업량을 지정한 후 책임생산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산림법 제45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종묘판매업등록을 한 자중 정부지정묘목 생산자
- (2) 신청절차 : 정부지정 묘목생산자 지원
  - 신청 → 심사결정 → 결정내역 통보  
(사업자) (시장·군수) (신청자, 임업협동조합)
-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 신청서(통합요령 제1호서식)
  - 농림수산정책자금 융자 신청자료(통합요령 제2호서식)

## 라. 대상자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시 신청서를 제출 반영된 사업자
  - 전년도 예산부족등으로 탈락된 적격자
- (2) 선정절차
  - 신청 → 심사결정 → 심의및예산요구 → 사업심의 예산확보  
(사업자) (시·군 농어촌 발전심의회) (시·도 농어촌 발전심의회) (산림청)

## 마. 사업시행

- 사업시행자가 시·군 및 임업협동조합의 지도를 받아 시행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에서 책임,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 나. 보고

- 시·군 : 농어민 자율추진사업을 연1회이상 점검·평가하여 시·도및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보고
- 시·도 : 연1회이상 점검·평가결과를 취합 매년 10.15까지 산림청 및 농림수산부에 보고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산림청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
- 시·도 : 도시계획(환경녹지, 농정, 산림, 산업경제)국·녹지(산림, 자원조성)과
- 시·군 : 산림과(녹지과)

## 산림병해충방제(공공)

### 1. 목 적

각종 산림병해충 피해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자연생태계 균형유지와 국토경관 보전

### 2. 추진방향

- 적기에찰,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방제효과 증대 및 신종 병해충 발생차단
- 솔잎혹파리 솔껍질각지벌레 등 방제사업은 우량소나무림 집단지, 관광사적지, 국.철도변 등의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집중방제
-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잣나무 넓적잎벌, 밤나무해충 등은 항공기 우선 투입으로 적기방제 실시
- 천적방사, 저공해 약제사용 등 생태적 방제확대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	'95	'96	'97	'98	'99~ 2004	합 계
○ 사업량계(천ha)		1,703	277	215	256	248	1,506	4,205
-솔잎혹파리		490	102	109	121	113	696	1,631
-솔껍질각지벌레		32	11	11	16	16	96	182
-소나무재선충		13	3	3	3	3	18	43
-흰불나방,기타		1,168	161	92	116	116	696	2,349
사	계	121,614	44,046	47,958	81,498	81,498	499,506	876,120
업	-일 반	50,996	14,588	16,668	21,450	21,450	129,270	254,422
비	-국 특	9,281	4,645	6,385	9,223	9,223	55,338	94,095
	-지방비	57,070	23,322	23,905	49,825	49,825	308,898	512,845
	-자부담	4,287	1,491	1,000	1,000	1,000	6,000	14,758



나. '96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솔껍질각지벌레 피해목벌채			
	사업량 (ha)	사 업 비 (보조)			사업량 (ha)	사 업 비 (보조)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4,510	2,065	840	1,225	3,570	1,636	665	971
인천	20	9	4	5	-	-	-	-
경기	50	22	9	13	-	-	-	-
강원	3,070	1,408	573	835	-	-	-	-
충북	390	179	73	106	-	-	-	-
충남	400	183	74	109	-	-	-	-
전북	30	13	5	8	50	23	9	14
전남	-	-	-	-	3,080	1,412	574	838
경북	100	45	18	27	-	-	-	-
경남	-	-	-	-	440	201	82	119
제주	450	206	84	122	-	-	-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 기관 : 산림청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각지벌레의 피해목벌채, 밤나무해충방제

## 지원대상

소생가망이 없는 피해도 "중"이상지역은 벌채 제거후 병해충에 강한 경제수종으로 갱신조립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 -방제원칙

- 밤나무해충은 소유자가 자력으로 방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상방제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소유자가 항공방제를 희망하는 때에는 헬기지원 가능범위내에서 헬기지원

#### -비용부담

- 약제대, 인건비 및 부대경비는 소유자가 부담

#### -대상해충

- 식엽성 해충 → 집시나방, 어스팽이나방, 밤나무혹나방, 참나무재주나방 등
- 종실해충 → 복숭아명나방, 밤바구미 등

#### -대상지역

- 1단지 5ha이상 집단조립지, 다만 항공방제 대상구역내에 게재되어 있는 5ha 미만의 조립지는 대상지로 정할 수 있다.
- 평균수고가 3m이상되는 조립지로서 경사가 급하여 지상약제 살포가 어려운 조립지

#### -방제신청서 제출

- 밤나무 소유자가 항공방제를 희망하는 전년도 9월10일까지 항공방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항공방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를 확인하여 항공방제 대상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방제계획서 제출

- 시장.군수는 현지확인한 결과 항공방제 대상지로 적합한 때에는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계획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시.군별 항공방제 계획을 검토 조정후 전년도 10월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 항공방제신청서

(단위 : ha)

지번	지적	밤나무조림		항공방제면적	방제회수	방제기간	소유자	
		년도	면적				주소	성명

위와 같이 항공방제를 신청합니다.

199 . . . . .

주소

성명 (인)

○○군수 (시장)

귀하

### 3. 임업경영기반확충 및 기술개발



#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 1. 목 적

산주등 산림경영장비 구입희망자에게 장비구입이 용자지원을 통하여 산주의 임업경영의욕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산촌 소득증대 및 임업기계화를 촉진

## 2. 추진방향

- 용자지원 확대로 산주자율경영체제 유도
- 임업기계화 추진 시책과 연계하여 민간부문 임업기계화 촉진
- 생산비용 절감으로 임업경쟁력 제고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대)		152	30	46	50	50	200	528
사 업 비	계	3,031	950	1,557	1,693	1,693	8,464	17,388
	국 고	-	-	-	-	-	-	-
	지방비	-	-	-	-	-	-	-
	용 자	2,122	665	1,090	1,185	1,185	5,925	12,172
비	자부담	909	285	467	508	508	2,539	5,216

### 나. '96지원계획

- 물량 : 25명, 46대
- 예산 : 1,090백만원(용자 7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나.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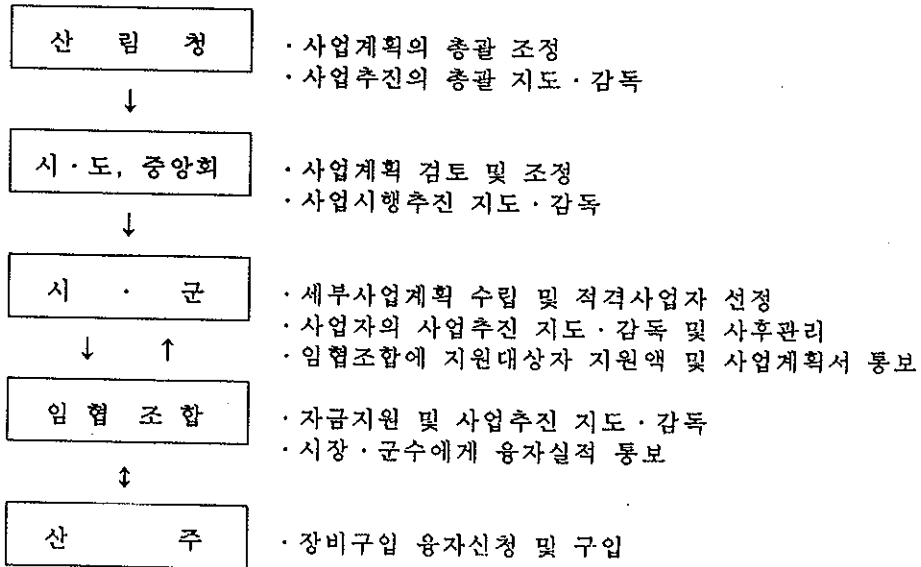
(1) 사업내용 : 산림경영장비 구입희망자에게 장비 구입자금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2) 지원대상 : 소재산주 및 산림경영자

(3) 지원규모 및 조건

- 재원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비율 : 용자 70%, 자담 30%
- 지원내용 : 소경재 집재장비(하산장비, 상차기, 소운반장비)
- 용자조건
  - 금리 : 연 3%
  - 용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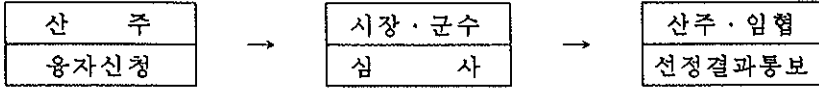
(4) 사업시행체계



##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산림소유자 및 산림경영자

(2) 신청절차 :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 신청서 1부 (통합요령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농림수산정책자금 용자신청 자료 1부 (통합요령 제2호서식)
- 소유권 확인서 1부

##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산별시범단지내의 산림소유자
- 임업진흥촉진지역내의 산림소유자 및 경영자
-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정주 생활권 개발지역내의 산림소유자

(2) 우선순위

- ① 독립가
- ② 입업후계자
- ③ 산림경영자
- ④ 일반소재 산주

(3) 선정절차

- 선정권자 : 시장·군수
- 선정절차 : 사업자신청 → 심사(시장, 군수) → 선정결과를 지원대상자 및 관할 임업협동조합장에게 통보
- 선정권자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수행능력, 자부담능력, 영립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마. 사업시행

- 장비구입절차 : 대상자결정통보 → 임협용자신청 → 임협중앙회자금배정 → 지역임협에서 용자 → 장비구입 → 임협확인

※ 유의사항

- 산림경영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및 용자
-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과 산림사업 용자지원의 연계추진
- 채권보전 : 용자취급기관 여신관계 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함.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및 보고 : 용자실적보고(연보)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산림청 산림경영과(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시·도 : 농정국 산림과
- 시·군 : 산림과(임업협동조합)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산림경영장비

2. 현황

소재지	면적(ha)	비고

※ 용자시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3. 세부사업계획

장비명	수량	구입계획 (천원)		
		계	용자	자부담

## 사유림 협업경영(공공)

### 1. 목 적

- 영세 사유림을 대상으로 협업체를 조직·육성 하므로써 산주의 소득증대와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함.

### 2. 추진방향

- 가. 임업진흥촉진지역(생산임지)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립
- 나. 현행 면단위 협업체를 리·동 단위 협업체로 개편, 실질적인 협업체 운영의 활성화 도모
- 다. 협업체를 임업협동조합의 핵심조직으로 육성하고, 복합경영을 지원하여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
- 라. 협업체를 육성지원키 위하여
  - 협업체 구역 산림을 계획적이고 기술적인 경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협업 영림계획을 작성케 하고 작성경비는 전액 정부보조
  - 협업체단위로 임업기술지도원을 지역담당제로 배치하여 협업체운영, 산림 경영지도 및 각종 행정절차 대행 등 지원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4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협업체 조직운영 (개)	187 (187)	16 (203)	42 (245)	45 (290)	45 (335)	180 (515)	515 (515)
	계	2,857	2,392	2,275	2,503	2,503	19,631	32,161
사업비	일반	2,544	1,225	1,245	1,370	1,370	12,813	20,567
	농특투자	-	293	309	340	340	1,465	2,747
	지방비	-	293	309	340	340	1,465	2,747
	자부담	313	581	412	453	453	3,888	6,100

※ ( )내는 협업체 조직 누계임.

## 나. '96 지원계획

- 협업체 가입산주의 결속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표고, 산채, 분재, 양봉등 단기소득사업과 연계된 복합경영을 유도하고 사업비 보조
  - 공동소득원사업 : 309백만원(국비)
  - 협업지도원 인건비 및 사업비 : 1,245백만원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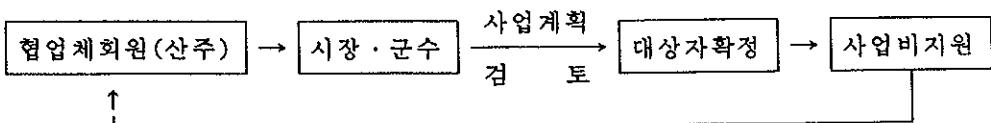
- (1) 협업공동소득원사업 : 시장·군수
- (2) 협업체 지도원 지도사업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공동소득원 사업비 지원으로 영세산주 소득증진
  - 협업체 조직이 결성된 지역내 사유림 산주에 대한 산림사업 기술지도
- (2) 지원내용
  - 협업공동소득사업(표고, 묘목생산, 산채, 부산물가공공장, 목가공등)지원
  - 기술지도원 지도비 및 협업임지 산림사업(조림·육림등)의 자부담에 대한 지원
- (3) 지원규모 및 조건
  - 공동소득원사업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4) 사업시행 체계
  - 공동소득원사업 : 산림청 → 시·도 → 시·군 → 협업체(산주)
  - 협업체지도사업 : 산림청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협업체(산주)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협업체가 구성된 지역내 협업체 회원
- (2) 신청절차 :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1부 (통합요령 제1호서식)

(4) 사업실행 : 산 주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협업체 조직확대 및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나. 보 고 : 추진실적 - 반년보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1) 중 양 : 산림청 산림경영국 산지계획과(02-961-2337)

(2) 시·도 : 농정국 산림과(임협중앙회)

(3) 시·군 : 산림과(녹지과)

## 임도시설(공공)

### 1. 목 적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시설하여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

### 2. 추진방향

-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집중 시설
- 조림, 육림, 간벌, 목재생산임지 우선 시설로 활용도 제고
- 기존도로와 연계하여 순환식, 관통식 및 지역 완결형으로 건설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km)		4,475	1,592	1,543	1,500	1,500	9,700	20,310
사 업 비	계	131,658	79,600	80,645	105,000	105,000	970,000	1,471,903
	국 고	56,030	37,000	35,223	49,000	49,000	455,000	681,253
	지방비	48,430	29,600	28,177	39,200	39,200	364,000	548,607
	융 자	15,244	5,600	10,200	7,000	7,000	60,000	105,044
	자부담	11,954	7,400	7,045	9,800	9,800	91,000	136,999

##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사업량 (km)	사업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용자	
계	2,043	80,645	35,223	28,177	7,045	10,200	
임도신설							
- 보조	1,343	68,493	34,247	27,397	6,849	-	
- 용자	200	10,200	-	-	-	10,200	
임도보수	500	1,952	976	780	196	-	

※ 시·도별 사업계획 별첨

## 4. 사업 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지침시달, 사업비(국비)배정
- 시·도 : 시·도비 확보지원
- 시·군 : 사업대상지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산림내에 임도를 개설하여 임업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간을 연결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임간도로 시설 공사임.

#### (2) 지원대상

노선선정 계획에 따라 책정된 노선을 통과하는 산림

#### (3) 지원 규모 및 지원조건

- 노선선정 계획에 의거 사업량이 책정된 노선의 거리에 따라 기준단비 지원
- 지원조건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임

#### (4) 사업 시행체계

-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량을 검토 재정경제원에 예산 신청하여 국비 소요 예산 확보  
· 확보된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달
- 시·도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신청  
· 산림청 사업지시에 대한 지방비 확보 및 시·군에 사업 지시

- 시·군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신청
- 시·군비 확보, 사업설계 및 발주, 실행 지도 감독

## 5. 사업대상지 선정

### 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1) 선정기준
  -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의한 간선 임도망(노선) 계획이 설정된 지역
  -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협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임업경영뿐만 아니라 다목적 이용도가 높은 지역
- (2) 우선순위
  - ① 기본계획에 의한 간선노선으로 지역간을 연결하는 노선
  - ② 임업진흥촉진지역의 협업경영상 필요한 노선
  - ③ 지역개발등 다목적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노선

### 나. 선정절차

-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의거 작성된 계획 노선을 년차적으로 실행
- 지역주민 요청에 따라 다목적 이용도가 높고 임도시설이 필요한 지역 선정

## 6. 사업계획 수립

### 가. 기본조사

- 전년도 및 당해년도 1~2월까지 조사 완료
- 시·군에서 조사 노망 확정

### 나. 실시설계

- 사전 설계 예산이 책정된 분은 전년도에 설계
- 사전설계 잔여분 당해 년도 5월까지 완료
- 실시설계는 임협 도지회



## 7. 사업 실행

### 가. 공정계획

- 1 ~ 2월 : 노선 선정 완료
  - 3 ~ 5월 : 측량 설계 완료
  - 5 ~ 12월 : 공사 실행 및 준공
- ※ 전년도 설계지역은 해방직후 착공

### 나. 계획변경

- 공사 실행에 따라 변경요인 발생시 시·군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하여 실행

### 다. 용지 매수 및 보상

-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수해상황을 감안, 소유자와 협의 사용

### 라. 설계 및 시공

- 설 계 : 임업협동조합 도지회에서 실행
- 시 공 : 산림법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서 정한 산림토목기술자 2인 이상을 배치한 자가 실행

### 마. 기술지원 및 공사감리

- 공사 현장대리인 : 산림토목기술자 배치
- 공 사 감리 감독 : 시·군 임업직 공무원 지정 감독

### 바. 검 사

- 시·군에서 실행

## 8.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사후관리 원칙
- 임도를 시공함으로써 혜택을 받은 산주 및 지역주민 공동 관리

### 나. 보 고

- 임도시설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 다. 업무담당 기관 및 부서

- 중 양 : 산림청 자원조성국 산림토목과
- 시 · 도 : 농정국 산림과
- 시 · 군 : 산림과

## 영림계획(공공)

### 1. 목 적

영림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을 통해 조림, 육림, 벌채, 임도시설등 계획적인 산림시업을 실행하므로써 산림경영의 합리성 및 생산성 제고

### 2. 추진방향

- 정확한 산림조사로 현지와 부합하는 계획 작성
- 산주의 산림경영의사가 반영된 현실성있는 제도운영
- 영림계획에 의한 철저한 산림시업
- 영림계획제도에 대한 지속적 홍보추진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4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천ha)		1,348	250	181	153	229	1,468	3,629
사업비	계	6,032	1,475	1,170	1,162	2,068	15,731	27,638
	국 고	2,631	519	550	567	727	5,578	10,572
	지방비	1,560	519	549	564	632	3,456	7,280
	융자 자부담	- 1,841	- 437	- 71	- 31	- 709	- 6,697	- 9,786

#### 나. '96 지원계획

구 분	사 업 량 (천ha)			보조사업비(백만원)		
	계	보 조	자 력	계	국 고	지방비
민 유 립	181	170	11	1,099	550	549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산림현황 조사내용에 따라 10년계획기간으로 영림계획작성
- 영림계획 작성내용
  - 조 릫 : 조림수종, 면적, 수량
  - 육 릫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비료주기, 천연림보육 등
  - 벌 채 : 벌채수종, 면적, 수량
  - 임 도 : 임도의 노선, 거리, 시설년도 등
  - 기 타 : 소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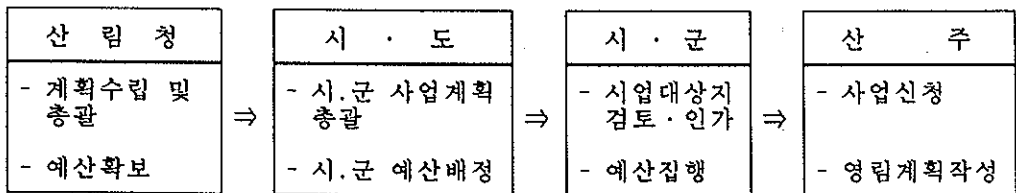
#### (2) 지원대상

- 영림계획 작성도래 산림소유자
- 영림계획 미작성 산림소유자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영림계획 작성경비 보조('96년도 기준 6,466원/ha)
- 조 건 : 계획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산주위주로 작성경비 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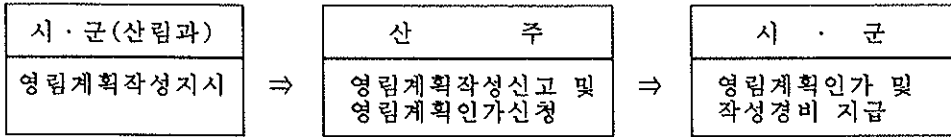
#### (4) 사업시행 체계



## 다. 사업 신청

(1) 신청자격 : 일반산주

(2) 신청절차 :



(3) 구비서류 : 영림계획서(산림조사야장 및 표준지 조사야장 첨부)

##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계획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산주위주로 작성경비 보조대상자를 선정하되, 자력작성이 가능한 산주를 제외한 영세산주 산림을 우선 선정
- 임축지역내 사유림은 우선하여 전량 보조하고, 협업영림계획구로 작성유도

## 마. 사업 시행

- (1) 산주가 영림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
- (2) 영림계획 작성신고후 영림기술자나 임협에 위탁 작성
- (3) 영림기술자나 임협에 작성경비 지급

## 5. 행정사항

### 가. 사후 관리

영림계획대로 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임협으로 하여금 대집행토록 하고 그 비용을 산주가 변상

### 나. 보 고

(1) 년 보

- 영림계획 작성사업계획 보고
- 영림계획 인가상황 보고
- 영림계획작성 및 운영상황 보고

(2) 분기보

- 영림계획 작성진도 상황보고

다. 업무담당 기관 및 부처

- (1) 중 양 : 산림청 산림경영국 산지계획과(02-961-2433)
- (2) 시·도 : 농정국 산림과
- (3) 시·군 : 산림과(녹지과)

## 다목적산림경영시범단지조성(공공)

### 1. 목 적

- 21세기 한국임업을 선도할 수 있는 다목적 산림경영 시범단지를 조성
  - 경쟁력 있는 산림경영기술의 개발·보급
  - 경제임업의 생산성 증대와 임업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 쾌적하고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창달
- 주민 농산촌 지역여건에 맞게 농림복합 소득원을 연계 개발하여 풍요로운 산촌지역 경계권 형성

### 2. 추진방향

- 장기계획('96~2005년)으로 추진
- 임황, 국유림, 인문지리등 입지여건을 감안, 각종 기능별로 구분·조성
- 단지내의 모든사업과 산림작업은 시험연구와 연계실행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계
사업량(개소)		1개소 타당성 조 사	(1)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 조성	(1) 조성	(1) 조성	(1) 조성	(1)
사업비	계	100	476	10,944	11,924	11,373	85,127	119,944
	국 지 방 비	100	476	10,944	11,924	11,373	85,127	119,944
	고 용 자	-	-	-	-	-	-	-
	차 담	-	-	-	-	-	-	-

#### 나. '96지원계획

- 기반조성사업 : 1,064백만원
  - 부지정리 및 진입로 시설 등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내면·서석면, 평창군 봉평면 일원 국유림
- 연 관 지 역 : 강원도 원주시, 홍천군, 평창군, 인제군, 횡성군 일원광역
- 구 역 면 적 : 약 24,480ha
  - 다목적경영
    - 용재경영림 : 7,514ha(31%)
    - 농림복합림 : 639" (3")
    - 보건휴양림 : 3,582" (14")
  - 기본시험 · 조림부육시험림등 : 2,879" (12")
  - 학술보전 · (이용유보) : 5,631" (23")
  - 자연보전 · (자연환경보전) : 4,235" (17")
- 조성기간 : 1996 ~ 2005(10년간)

#### (2) 사업시행체계

- 산림행정기관, 학계, 산하단체등 관계업업인이 공동참여하여 추진
  - 총괄 : 산림청
  - 주관 : 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 원주·강릉영림서
  - 지원 : 산하단체등
- 추진전담기구 구성 - 실무작업단, 지원대책 협의회

## 5. 사업계획수립

### 가. 기본조사

'95년도에 기본조사설계를 실시하여 단지조성의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 나. 실시설계

익년도 사업계획량을 확정 전년도에 실시설계 실시

## 6. 사업시행

매년초에 사업별로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행

- 1995. 11월 : 기본조사설계 및 '96 시공분 실시설계 시행
- 1995. 12월 : 특수개발지역 지정 고시
- 1996-2004년 : 기본조사설계서에 의거 년도별 세부사업계획 추진
- 2005. 11월 : 동 단지조성 완료 - 이후 사후관리·보완



## 7.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영림서, 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 합동으로 별도 기구를 구성 관리

### 나. 보 고

단지구역내 사업 추진상황보고 : 년보(원주, 강릉영림서, 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산림청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
- 영 립 서 : 원주, 강릉영림서
- 연구기관 : 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

## 임업협동조합육성(공공)

### 1. 목 적

- 산림소유자 중심의 조직체제로써 정부의 지원 또는 대행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임업협동조합을 조합원과 생산자 위주의 운영체제로 전환, 자립능력을 제고하여 협동조합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함.

### 2. 추진방향

- 지역조합 위주에서 품목별 생산자 중심단체로 육성(전문조합 설립 및 지원)
- 임산물 유통전담기관으로 육성(집하장, 직매장, 종합처리장)
-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개발(신용사업추진, 신규사업개발)
- 정부의 경상적 보조는 점진적으로 줄이되 용자는 확대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3-'94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141 조합	141 조합	142 조합	143 조합	143 조합	143 조합	143조합
사업비	계	10,457	5,700	5,836	5,861	5,861	32,715	66,430
	국 고	2,334	939	950	961	961	4,805	10,950
	지방비	1,356	678	687	696	696	3,480	7,593
	용 자	5,800	3,300	3,410	3,410	3,410	20,460	39,790
	자 부담	967	783	789	794	794	3,970	8,097

####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상무급여보조	운영비보조	산림개발기금용자
5,047	263	1,374 (국고50 : 지방비50)	3,410

※ 지원조건은 '97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될수도 있음.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나. 사업현황

구분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조건	사업시행체계
보조	상무급여 보조	142개조합 상무	1조합당 2,037,970원	산림청→임협중앙회→임업협동조합
"	조합운영비 보조	142개조합	정상(73) 6,000,000원 (국고50%, 지방비50%) 보통(51) 12,000,000원 (국고50%, 지방비50%) 기초(18) 18,000,000원 (국고50%, 지방비50%)	산림청→시·도→시·군→임업협동조합
산림개발기금용자	임산물유통시설 운영자금, 조합자체사업, 작업단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 용자	142개조합	3,410,000,000원 , 연리 3% 2년거치 1년상환	산림청→임협중앙회→임업협동조합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보조금 : · 보조금은 분기별로 개선금을 신청하고 정산보고서는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제출  
·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
- 용자금 : 사업의 확인 및 감독은 자체 감독 및 지도감독계획에 의거 확인

나. 보고

시·군·구 → 시·도  
 임업협동조합 → 임협중앙회 시·도지부 → 임협중앙회  산림청

다. 업무담당 기관 및 부서

- 중앙 : 산림청 임정과 (임협중앙회)
- 시·도 : 산림과, 산지개발과, 녹지과 (임협중앙회 도지부)
- 시·군 : 산림과, 녹지과 (임업협동조합)

## 임업기술지도(공공)

### 1. 목 적

임업기술의 보급체계를 확립하여 전체산림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 산주를 대상으로 임업기술지도를 통해 산림경영 개선과 임산업을 육성하며, 임업정책의 대국민 홍보 강화

### 2. 추진방향

- 개발된 임업기술을 산림경영자에게 바로 연결시켜 실용화하도록 기술보급체계 개선
- 임업기술지도원을 산림경영 주체별로 지정하여 경영책임지도 및 행정편의 제공
- 기술지도원에 대한 교육 강화

### 가.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계
사업량								
-지도원급여(명)		(787)	(787)	(787)	(787)	(787)	(787)	(787)
-산림지발간 (천부)		1,932	276	276	276	276	1,656	4,692
-지도장비(대)		90 접차	30 접차	30 접차	30 P.C	30 P.C	91 P.C	301
계		39,402	6,378	6,965	7,507	8,258	75,128	143,638
사업비	국 고	24,248	4,925	5,508	6,006	6,607	54,828	102,122
	지방비	-	-	-	-	-	-	-
	융자 자담	15,154	1,453	1,457	1,501	1,651	20,300	41,516

### 나. '96지원계획

- 임업기술지도원 급여지원 (787명)
  - 계 : 5,908백만원(100%) 국고 : 4,726(80%) 자력 : 1,182(20%)
- 산림지 발간 (276천부)
  - 계 : 139백만원(100%) 국고 : 97(70%) 자력 : 42(30%)
- 지도장비 지원(접차 30대)
  - 계 : 360백만원(100%) 국고 : 252(70%) 자력 : 108(3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시·군 임업협동조합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임업기술지도원 배치에 따른 지도원급여 지원
- 임업기술 홍보자료 발간비 지원
- 임업기술지도장비(접차) 구입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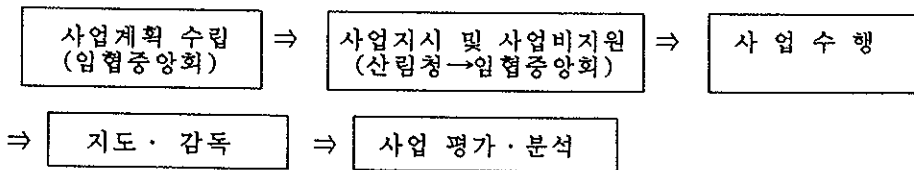
#### (2) 지원대상

- 임업기술지도원 배치 및 산림지 발간, 지도장비 배정 - 임협중앙회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임업기술지도원 배치(143개조합) : 787명
  - 임업기술지도 홍보자료 발간
    - 산림지 : 23,000부/월 (연 276천부)
  - 임업기술지도장비(접차)배정 : 30대/년
- 지원조건
  - 지도원 급여 : 국고 80%, 자력 20%
  - 산림지 : 국고 70%, 자력 30%
  - 임업기술지도장비(접차) 구입 : 국고 70%, 자력 30%

#### (4) 사업시행체계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후관리

## 나.보 고

보조사업 완료후 사업실적 보고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산림청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총무부
- 시·도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도지회
- 시·군 : 임업협동조합

## 임업기술개발지원(공공)

### 1. 목 적

- 지구환경 보전과 국산재 자급도 제고 및 농산촌 소득향상
- 생물공학을 응용한 신제품 개발 및 기능성 신물질 개발
- 산지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임업생산 현장애로 타개 기술개발

### 2. 추진방향

- 산지자원화 10년계획과 연계한 정책 및 기술개발
- 임업의 산업화, 실용화 기술개발
-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자원의 발굴·이용기술 개발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계
사업량	경상연구	617	87	96	97	97	582	1,576
	임업시험연구	598	84	93	94	94	564	1,527
	임목육종연구	402	57	62	62	60	360	1,003
	특정연구	196	27	31	32	34	204	524
	특정연구	19	3	3	3	3	18	49
계		45,268	9,053	11,958	10,225	15,995	93,171	185,670
사업비	국고	45,268	9,053	11,958	10,225	15,995	93,171	185,670
	지방비	-	-	-	-	-	-	-
	융자	-	-	-	-	-	-	-
	자담	-	-	-	-	-	-	-

#### 나. '96지원계획

- 경상연구비 : 11,708백만원
- 특정연구비 : 250백만원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 경상연구

###### - 임업시험연구

- 산림환경보전과 공익기능유지 증진 기술개발
- 임업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 임산자원의 고도이용 및 단기임산 소득원 개발
- 산지이용의 합리화 및 임업경제구조·제도개선

###### - 임목육종연구

- 주요향토 경제수종 및 유실수의 신품종 육성
- 우량신품종 대량증식 기술개발
- 생물공학을 응용한 신물질 개발

##### ○ 특정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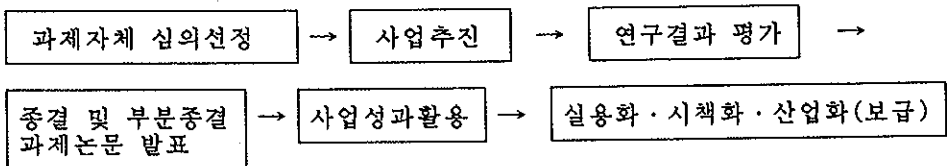
- 임산자원의(향토수종)의 발굴·이용 기술
- 농산촌의 소득과 연계된 산촌개발 사업 연구등

(2) 지원대상 : 산·학·연·관·민으로 구성된 협동연구팀 및 소속연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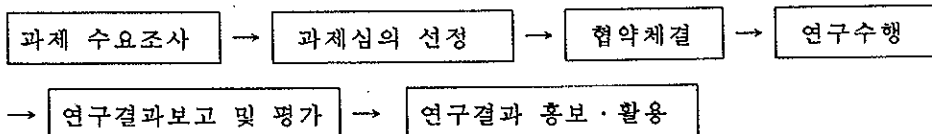
(3) 지원규모 및 조건 : 전액 국고지원

#### (4) 사업시행체계

##### ○ 경상연구(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



##### ○ 특정연구 (산림청)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경상연구 : 소속연구기관
  - 특정연구 : 산·학·연·관·민으로 구성된 협동연구팀 및 소속연구기관
- (2) 신청절차
  - 경상연구 : 자체연구과제 선정 추진
  - 특정연구 : 연구희망기관·단체등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산림청에 제출
- (3) 구비서류
  - 특정연구 : 임업기술개발(신청·계획)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 라.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 경상연구 : 임업의 산업화, 산지이용의 합리화등 산림시책 추진과의 연계성
  - 특정연구 : 현장적용성, 상업화가능성등
- (2) 선정절차
  - 경상연구 : 연구기관 자체심의 선정
  - 특정연구 : 공모과제를 대상으로 임업기술개발 심의회에서 심의선정
- (3) 사업시행
  - 경상연구 : 선정된 과제 설계서 작성, 연구실행
  - 특정연구 : 임업기술개발심의회 선정된 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체결후 사업시행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연구보고서 유인 학제, 단체등 배부 및 연구내용 전산입력

### 나. 보고

- 경상연구 : 연구기관 자체중간평가 연3회 및 연차보고 연1회
- 특정연구 : 주관연구기관 연구결과 연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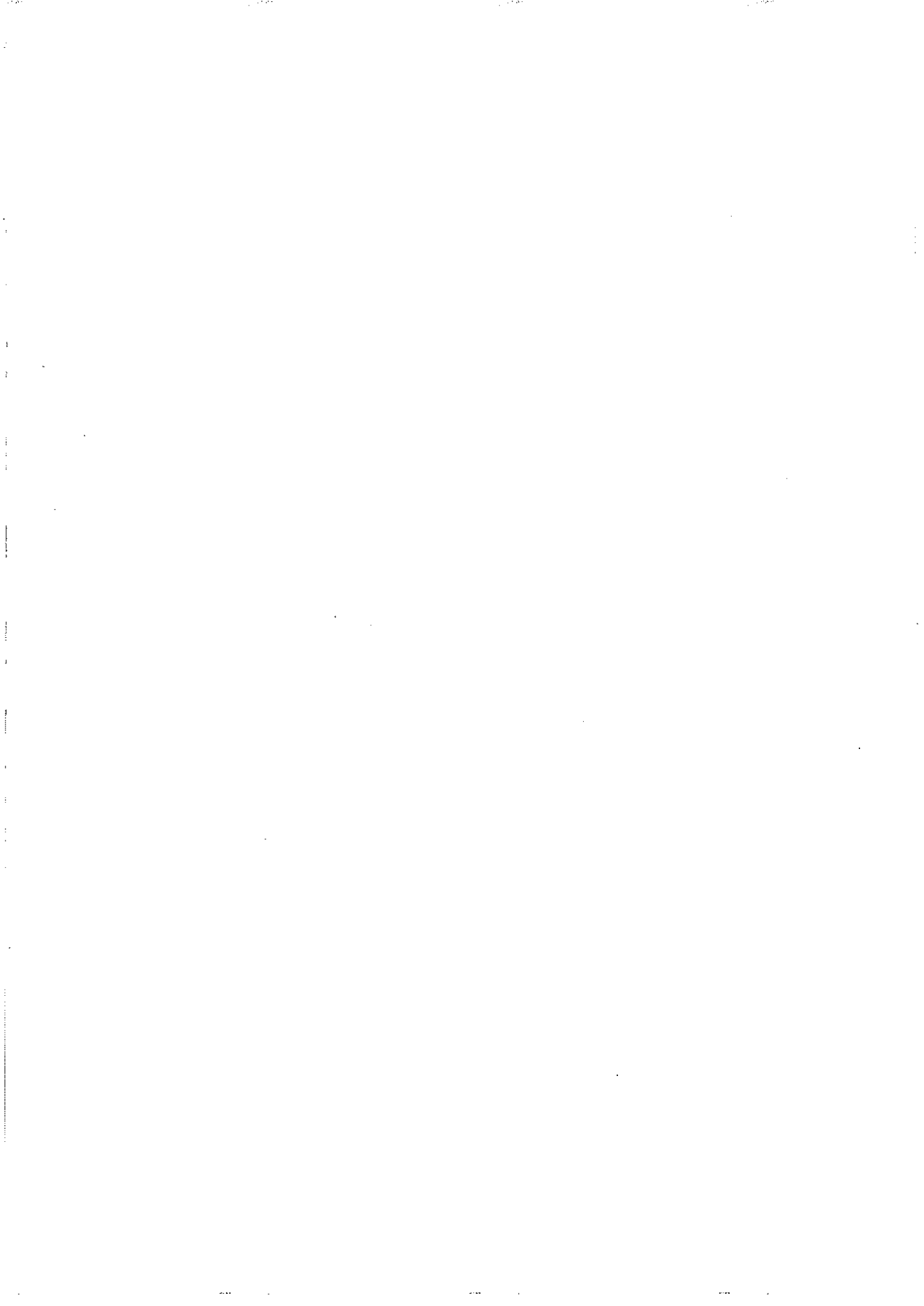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산림청(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 정부출연기관등)
- 시·도 : 각도 산림환경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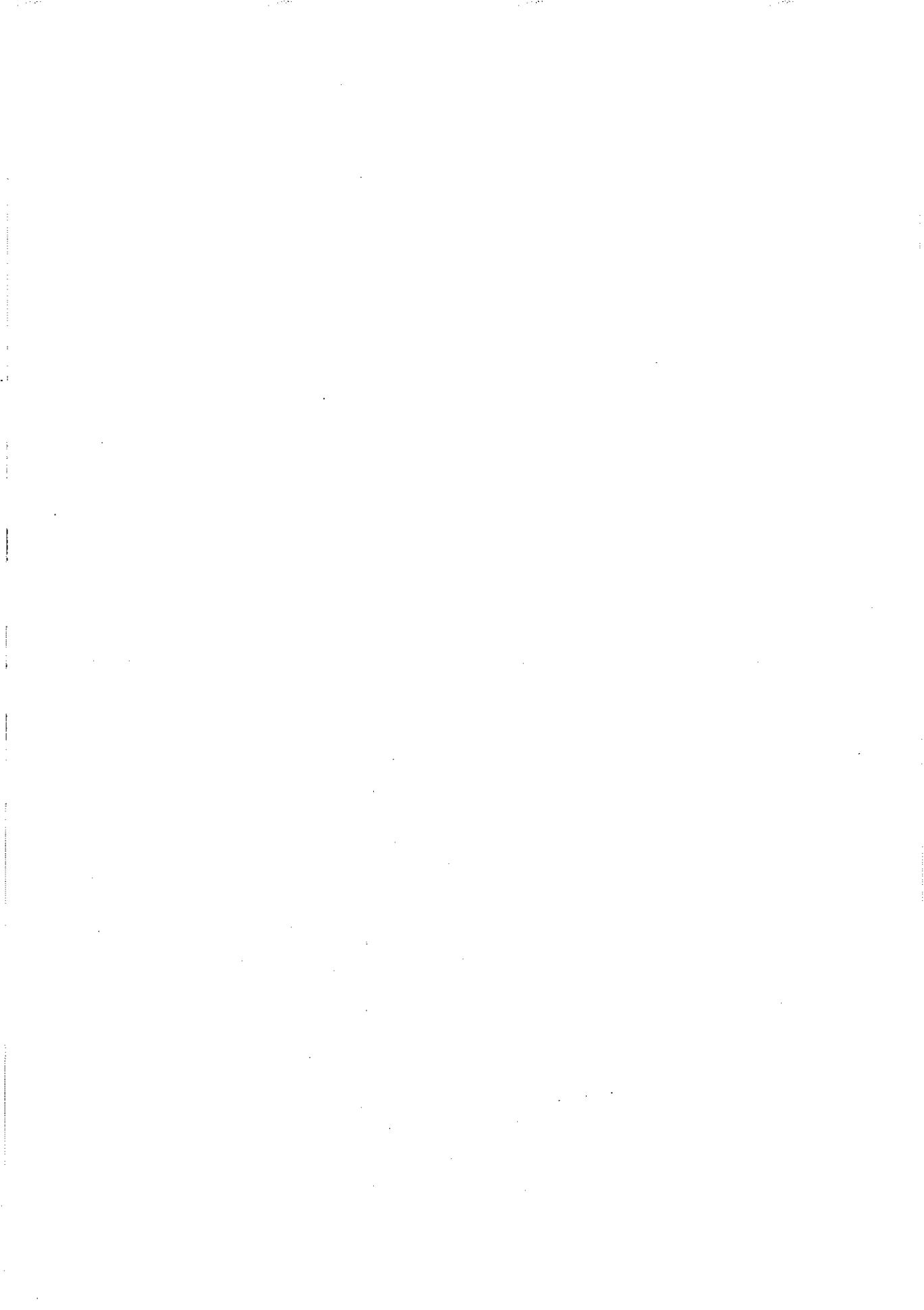
## 임업기술개발(신청, 계획)서

①사 업 구 분		( 임 업 분 야 )		
②과 제 명				
③주관 연구 기관		⑤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실용화)		
④총괄연구책임자	소속및부서명	직위		
	성 명(한문)	전공		
기 술 개 발 비	⑥총 개발비	천원	⑦당해년도개발비	천원
	정부출연금	천원		천원
	정부이외의 자의출연금	천원		천원
	기업체부담금	천원		천원
총 기 간	19 . . - 19 . . ( 년 월 )	당해년도참여	명 (내부 명) 명 (외부 명)	
당해 년도 기간	19 . . - 19 . . ( 년 월 )	연 구 원 수		
③참여 기업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주 소	본사 : (전화번호 : ) 공장 : (전화번호 : )		
	실무연락 책 임 자	소속 : 성 명 직위 : 전화번호		
<p>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기술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p> <p>⑨제출부수 : 1. 임업기술개발계획서 3부 2. 임업기술개발계획서 요약 3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총괄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의 장 : 직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산 립 청 장 귀 하</b></p>				

※ 임업기술개발사업관리규정 ('94.12.5 산림청 훈령 제496호) 참조



#### 4. 임산물생산 및 유통·가공



## 단기소득임산물생산 및 시설(자율)

### 1. 목 적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및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지원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한 생산능가 소득증대 도모

### 2. 추진방향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성 증대
- 송이 환경개선사업 적극추진
- 단기소득임산물 주산단지 중심으로 사업추진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4종	8	8	8	8	8	8
사 업 비	계	50,779	15,221	17,039	18,714	18,714	112,284	232,751
	용 자	35,545	10,654	11,927	13,100	13,100	78,600	162,926
	자 담	15,234	4,567	5,112	5,614	5,614	33,684	69,825

※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 '96 지원계획 " 참조

#### 나. '96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용 자	자 담
계	-	17,039	11,927	5,112
- 표고원목재배	50천 m <sup>2</sup>	8,044	5,631	2,413
- 산나물, 산약초	100천 m <sup>2</sup>	270	189	81
- 산과실	10천본	16	11	5
- 건조기	7대	22	15	7
- 임산물저장시설	4천 m <sup>2</sup>	3,360	2,352	1,008
- 야생화 재배	10ha	731	512	219
- 표고톱밥균상재배	8개소	2,400	1,680	720
- 송이환경개선	600ha	2,196	1,537	659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지침시달, 자금배정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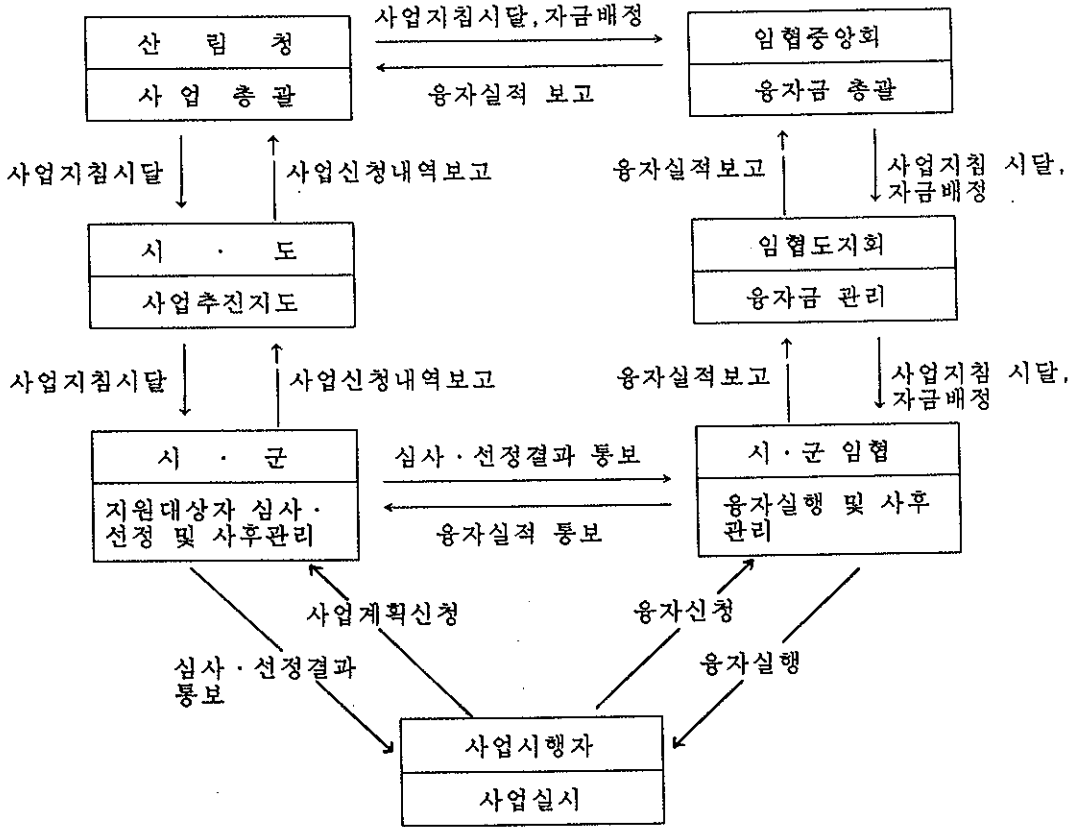
구 분	사 업 내 용
표고원목재배 산나물, 산약초 산과실 건조기 임산물저장시설 야생화 재배 표고톱밥균상재배 송이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고자목 및 종균구입, 차광망시설 재료구입(차광망·철사등)</li> <li>○ 종자구입, 재배재료구입</li> <li>○ 묘목구입, 비료구입</li> <li>○ 열풍건조기 구입</li> <li>○ 저온저장고 설치</li> <li>○ 야생화 재배</li> <li>○ 시설비, 재배재료구입</li> <li>○ 식생정리, 낙엽·부식층 제거, 관수시설</li> </ul>

(2)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3) 지원규모 및 조건

구 분	금리	융자기간		융자단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거치	상환			융자	자담
표고원목재배	년 5%	3년	2년	m <sup>2</sup> 당 112천원	1억원이내	70%	30%
산나물, 산약초	"	"	"	m <sup>2</sup> 당 1,900원	"	"	"
산과실	"	"	"	1본당 1,100원	1천만원이내	"	"
건조기	"	"	"	1대당 2,100천원	"	"	"
임산물저장시설	"	"	7년	m <sup>2</sup> 당 588천원	3억원이내	"	"
야생화 재배	"	"	2년	ha당 51,214,800원	5천만원이내	"	"
표고톱밥균상재배	"	"	"	1개소당 210백만원	3억원이내	"	"
송이환경개선	"	"	"	ha당 2,562천원	1억원이내	"	"

(4)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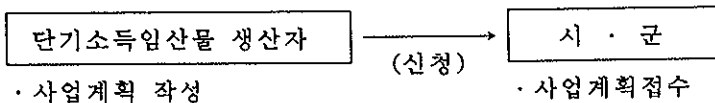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2) 신청절차

○ 신청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 전년도 1월 31일까지 신청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지원 신청서 1부 (통합요령 제1호서식)

○ 농림수산정책자금 용자 신청자료 1부 (통합요령 제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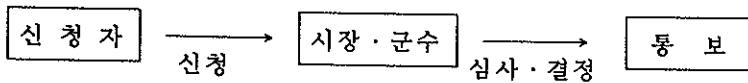
## 라. 대상자 선정

### (1) 우선순위

- ① 품목별 주산단지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 ② “산” 별시범사업단지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 ③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 야생화 재배의 경우 한국자생식물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 (2) 선정절차



## 마. 사업시행

### (1) 송이환경개선

- 산림법시행규칙 제9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사업실시
- 가지치기등 임내정리 : 비율도가 60~80% 유지되도록 실시
  - 가지치기등 임내정리 기준

소나무입령	본수기준 (10×10m당)	제 거 대 상 목
16 ~ 20	32 ~ 42	· 고사목, 피압목, 쇠약목
21 ~ 25	21 ~ 25	· 척박지는 피복도 60~80%를 기준으로 하여 가지치기로 대신할 수 있음
26 ~ 30	14 ~ 17	
31 ~ 35	10 ~ 13	

- 활엽수정리 : 2m이상 활엽수는 1.5m높이에서 줄기자르기 실시
- 관목 및 초류의 정리
  - 30%이하의 하층피복도 유지 (관목 및 초류의 피복도가 30%이하 되는 곳에서 송이가 다량발생)
  - 진달래, 철쭉, 떡갈나무등 총생된 관목은 1~2본만 남기고 나머지는 절단

- 낙엽제거 : 낙엽 및 부식층의 두께가 5cm이상인 곳은 긁어내고 4cm이하는 보존
- 보 식 : 상층목의 피복도가 극히 빈약한 지역 및 활엽수 정리로 피복도가 빈약해진 임지는 3~4년생 소나무묘목 보식
- 식생정리 시기 : 6~7월에 실시하고 2~3년간 계속 정리
- 사업단비표를 참조하여 지원하되 단비표에 없는 사업도 지원가능하며, 사업 대상지 및 사업계획에 따라 ha당 단비는 상이할 수 있으니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ha당 단비를 결정하여 지원할 것
- 사업 단비표 (ha당)

구 분	산 출 근 거	지 원 금 액
계		3,659,500원
임내활엽수제거	12인 × 42,500원 = 510,000	3,659,500 × 70% = 2,562천원
관목·초류정리	9인 × 42,500원 = 382,500	
낙엽·부식층제거	9인 × 42,500원 = 382,500	
양수기 (5마력)	1대 × 337,000원 = 337,000	
호수	500m × 3,095원 = 1,547,500	
살수기 (스프링클러)	10개 × 50,000원 = 500,000	

## (2) 기타사업

-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따라 담보물 제공
- 사업추진에 따라 자금대출
- 사업(시설) 완료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시설물 적정관리여부 지도·감독
- 임 협 : 용자금 사후관리

### 나. 보고

-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용자금 집행실적을 '97. 1월 20일까지 보고

### 다. 업무담당 기관 및 부서

- 중 양 : 산림청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
- 시·도 : 산림과, 산지개발과, 녹지과
- 시·군 : 산림과, 녹지과

## 조경수·분재소재 생산 (자율)

### 1. 목 적

- 조경수 및 분재소재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량한 조경수 및 분재소재를 생산하여 농의소득 증대

### 2. 추진방향

- 조경수 및 분재소재 생산자중 자금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융자지원
- 농어촌발전계획 및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지역 우선 지원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사업량: ha, 사업비: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조 경 수	144	97	135	144	173	1,038	1,731
	분 재	130	58	60	72	86	516	922
합 계		16,316	11,376	14,263	15,840	18,063	108,378	184,236
사업비	조경수	8,557	7,090	9,863	10,560	12,686	76,116	124,872
	분 재	7,759	4,286	4,400	5,280	5,377	32,262	59,364

주) 사업비는 융자 70%, 자담 30%임

#### 나. '96 지원계획

- 사 업 량 [ 조 경 수 : 135ha  
          [ 분재소재 : 60 "
- 사 업 비 [ 조 경 수 : 6,904백만원 (융자)  
          [ 분재소재 : 3,080 "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 (1) 산림청 : 지침시달, 자금배정
- (2)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 나. 사업 현황

- (1) 사업내용
  - 조경수 및 분재소재생산
- (2) 지원대상
  - 조경수 및 분재소재 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 (3)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조경수 생산 : 1인당 100백만원이내  
분재소재생산 : 1인당 50백만원이내
  - 지원비율 : 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금리 연5% (3년거치 7년상환)
- (4) 사업시행체계
  - 집행기관 : 산림청 → 시·도 → 시·군
  - 절차 : 사업자  $\begin{matrix} \text{신청} \\ \leftrightarrow \\ \text{결정} \end{matrix}$  시·군  $\begin{matrix} \text{제출} \\ \leftrightarrow \\ \text{가내시} \end{matrix}$  시·도  $\begin{matrix} \text{종합} \\ \leftrightarrow \\ \text{가내시} \end{matrix}$  산림청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한국조경수협회 회원과 한국분재조합 조합원은 협회장 및 조합장의 추천서(생산 확인)를 받은 자
  - 비회원 및 비조합원은 임업협동조합장의 추천서(생산확인)를 받은 자
- (2) 신청절차
  - 신청  $\rightarrow$  심사결정  $\rightarrow$  결정내역 통보  
(추천서를 받은자) (시장·군수) (신청자, 임업협동조합)
- (3) 구비서류
  - 조경수(분재소재) 생산자금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라. 대상자선정

- (1) 선정기준
  - 확보융자금의 70%는 한국조경수협회 회원 및 한국분재조합원에게 지원
  - 확보융자금의 30%는 비회원 및 비조합원에게 지원
- (2) 우선순위
  - ① 조경수 생산포지 1ha 이상을 가지고 3년 이상 조경수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
  - ② 분재소재 생산시설 330㎡ 이상을 가지고 3년 이상 분재소재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
  - ③ 용자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는 자
  - ④ 동 사업에 대한 기술과 능력이 있는 자

## (2) 선정절차

- 신청 (사업자) → 심사결정 (시·군 농어촌 발전심의회) → 심의및예산요구 (시·도 농어촌 발전심의회) → 사업심의 예산확보 (산림청)

## 마. 사업시행

- 사업기간 : '95. 1. 1 ~ 12. 31
- 용자 : 용자 취급기관(임업협동조합)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라 용자조치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에서 책임,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 나. 보고

- 시·군 : 농어민 자율추진사업을 연1회이상 점검·평가하여 시·도및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보고
- 시·도 : 연1회이상 점검·평가결과를 취합 매년 10.15까지 산림청 및 농림수산부에 보고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산림청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
- 시·도 : 도시계획(환경녹지, 농정, 산림, 산업경제)국·녹지(산림, 자원조성)과
- 시·군 : 산림과(녹지과)

## 조경수(분재소재) 생산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서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신청 사업 명					
생 산 자 금 (천원)	내 역				
	계	용 자	생산자 부담	기 타	
세부 사업 계획		별 첨			
생 산 기 반 시 설	내 역				
	포 지 면 적	시 설 규 모 (온 실 등)		장 비 보 유 사 항	
	m <sup>2</sup>	동,	m <sup>2</sup>	대	
영 농 경 력	년 월 ~ 년 월		( 년 월 )		
최 종 학 력	년 월		학 교 ( 졸 업, 중 퇴, 수료 )		
영 이 농 수 교 사 육 향	기 간		교 육 분 야		실 시 기 관 명
	~ 년	년 월 일			

- 첨부 1. 세부사업계획서  
 2. 조경수(분재소재) 생산 사실확인 추천서  
 3. 농림수산정책자금 융자신청 자료

위와 같이            년도 조경수(분재소재) 생산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 첨부 1 >

## 세 부 사 업 계 획 서

생산수종별	소 재 지			지목	사용 면적 (㎡)	수량 (본)	사업비 (천원)	비고
	읍 면	리	지 번					

### 조경수(분재소재) 생산 사실확인 추천서

생 산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포지 (생산시설) 소재지				생 산 상 황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수 종	수고 (cm)	수량 (본)	수령 (년)	실제면적 (㎡)
용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지원				제출처 : 시·군				

위 생산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한국조경수협회장  
(협회원)

인

한국분재조합장  
(조합원)

인

○○군 임업협동조합장  
(비회원 및 비조합원)

인

※ 해당 단체장의 직인을 받아야 유효함



## 임목생산 (자율)

### 1. 목 적

인력부족과 고임금현상으로 임목생산자의 생산여건이 악화되어 벌채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산업용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벌채를 하고자 하는 영세산주에게 생산비를 용자 지원하여 국내 임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2. 추진방향

- 피해목 및 수종갱신 벌채 우선 실행
- 대면적 개별을 지양하고 소구역 벌채
- 산림자원 증축을 위하여 벌기령을 연장, 대경재생산 유도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천㎡)		104	37	37	40	40	240	498
사 업 비	계	3,962	1,700	1,700	1,848	1,848	11,088	22,146
	국 고	-	-	-	-	-	-	-
	지방비	-	-	-	-	-	-	-
	융자	3,962	1,700	1,700	1,848	1,848	11,088	22,146
자부담	-	-	-	-	-	-	-	-

#### 나. '96지원계획

- 물 량 : 36,800㎡
- 예 산 : 1,700백만원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 주관기관 : 산림청(임업협동조합중앙회)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익년도에 벌채를 하고자 하는 산주에게 벌채사업자금을 신청받아 산림개발기금에서 용자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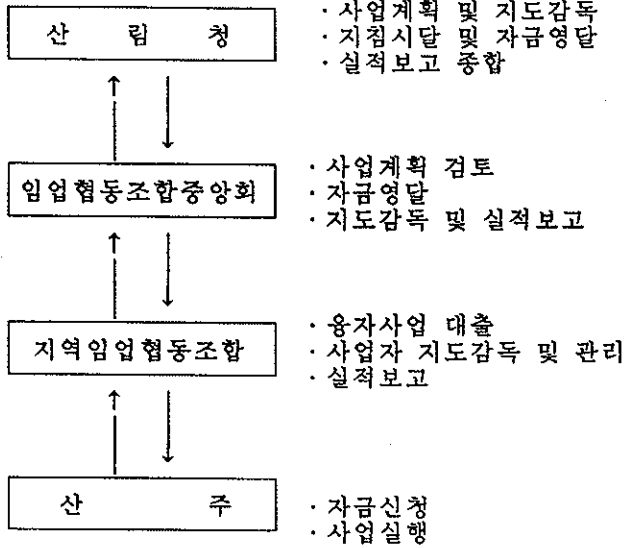
(2) 지원대상

- 독립가, 입업후계자, 영세산주 및 산림경영자

(3) 지원규모 및 조건

- 재 원 : 산림개발기금
- 임목재적 m<sup>2</sup>당 46,200원
- 지원한도액 : 1인당 50,000천원 이내
- 용자조건 : 3년(2년거치 1년상환), 년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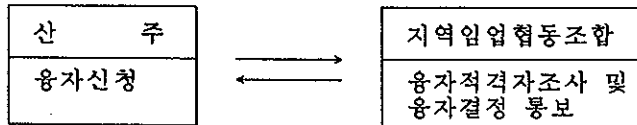
(4) 사업시행체계



##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산주 및 산림경영자

(2) 신청절차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1부 (통합요령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농림수산 정책자금 용자신청 자료(통합요령 제2호 서식)
- 소유권 확인서 1부

## 라. 대상지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주요 "산" 별 단지내 임지의 별채
  - 임업진흥촉진지역 임지
  - 영림계획상 당해년도 별채계획 임지
- 우선순위
  - ① 독립가
  - ② 임업후계자
  - ③ 영세산주
  - ④ 소재산주
  - ⑤ 기타

### (2) 선정절차

관할 임업협동조합장에게 용자신청하면 현지 확인후 용자적격자 조사에 의하여  
용자 결정

## 마. 사업시행

- 별채장소 확정 → 구역경계확정 → 매목조사 → 별채허가(신고) → 사업시행 →  
생산확인용 검인찍기 →반출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및 지역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지도

나. 보 고 : 용자실적보고(12월 말까지)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산림청 산림경영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시·도 : 농정국 산림과, 임업협동조합도지회
- 시·군 : 산림과, 지역 임업협동조합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임목생산사업

2. 현 황

사업예정지   현 황	위 치	군. 면. 리. 번지
	소유자명	
	면 적	필지 ha (m <sup>2</sup> )
	영림계획 편성내용	
기 타 특 이 사 항		

3. 세부사업계획

구 분	계획면적	단 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산림소유자	m <sup>2</sup> (ha)	원					
산림경영자							
단체또는회사							

## 임산물가공이용시설 지원(자율)

### 1. 목 적

- 시설이 노후된 가공시설의 교체촉진과 UR타결 및 WTO체제하의 국내산 임산물 가공 기반시설 유지로 국제경쟁력 제고
- 간벌사업등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을 가공공급하여 물류비용 절감
- 핑 가공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출하량 조절·가격안정 및 기호식품개발로 사육자 소득증대 도모

### 2. 추진방향

- 노후된 가공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대체하여 생산성 향상
- 임산물 가공시설의 신·증설로 가공이용 확대
- 핑 사육이 집중된 18개 권역에 핑 가공공장 설치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 사업량		107	22	58	84	84	498	853
- 임산물가공이용		103	20	56	82	82	492	835
- 핑 가공		4	2	2	2	2	6	18
사 업 비	계	40,167	9,909	13,696	19,170	19,170	113,565	215,677
	○ 용 자	26,661	6,936	9,587	13,419	13,419	79,914	149,936
	- 임산물가공이용	25,569	6,810	9,461	13,219	13,219	79,314	147,592
	- 핑 가공	1,092	126	126	200	200	600	2,344
비	○ 자 담	13,506	2,973	4,109	5,751	5,751	33,651	65,741
	- 임산물가공이용	10,958	2,919	4,055	5,666	5,666	33,396	62,660
	- 핑 가공	2,548	54	54	85	85	255	3,081

##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용 자	자 담
계	58개소	13,696	9,587	4,109
○ 입산물가공이용시설	56	13,516	9,461	4,055
- 칩가공시설	9	1,800	1,260	540
- 통나무가공시설	1	303	212	91
- 제재시설	20	4,000	2,800	1,200
- 목각생산등	25	5,984	4,189	1,795
- 랍 가공시설	1	1,429	1,000	429
○ 핑 가공	2	180	126	54

## 4. 사업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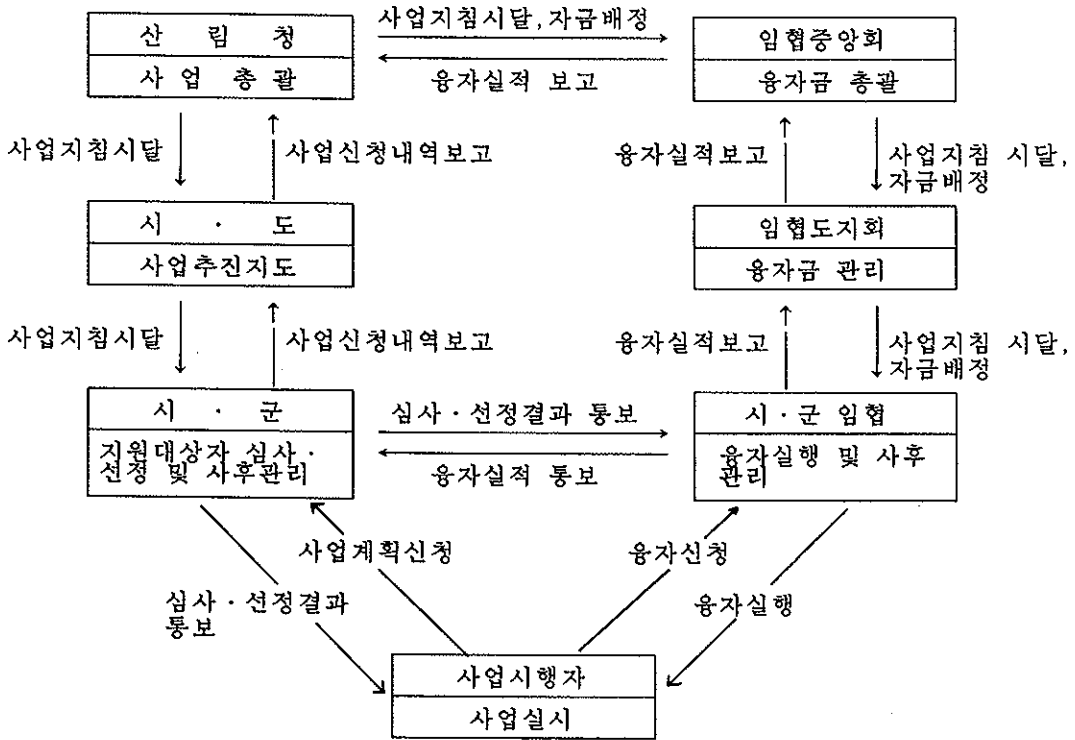
###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지침시달, 자금배정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 나. 사업현황

구 분	입산물 가공이용시설	핑 가공시설
(1)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된 가공시설을 현대화시설로 교체</li> <li>○ 입산물 가공이용시설의 신·증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핑 이용 가공공장 및 저장시설의 설치</li> </ul>
(2)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가공공장등록증 소지자로서 노후시설을 교체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자</li> <li>○ 가공공장 신설을 위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를 필하였거나 필하고자 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핑 사육자중 핑 가공시설을 신·증설하고자 하는자</li> <li>○ 핑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제조코자 하는자</li> </ul>
(3) 지원규모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한도액</li> <li>○ 용자기간</li> <li>○ 용자조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한도액</li> <li>○ 용자기간</li> <li>○ 용자조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소당 설계금액의 70%이내</li> <li>○ 10년(3년거치 7년상환)</li> <li>○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 산주, 농특회계 용자사업 집행지침상 별도요건을 구비한 법인체</li> <li>· 8% : 비산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소당 설계금액의 70%이내</li> <li>○ 10년(3년거치 7년상환)</li> <li>○ 금리 : 년 5%</li> </ul>

(4) 사업시행체계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가) 임산물 가공이용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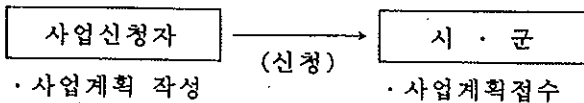
- 기존 가공공장등록증 소지자로서 노후시설을 교체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임산물 이용가공시설을 신설코자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를 필하였거나 필하고자 하는 자
- 다만 임산물이용·가공시설지원 용자금을 기지원받아 거치기간(최초대출일로부터 3년)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펄 가공시설 설치

- 펄 사육자중 펄을 이용한 가공시설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자
- 펄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절차

- 신청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 전년도 1월 31일까지 신청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1부(통합요령 제1호서식)
- 농림수산정책자금 용자 신청자료 1부(통합요령 제2호서식)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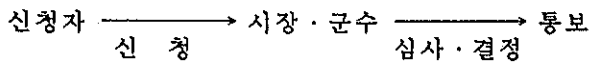
○ 선정기준

- 임산물가공이용시설 설치
  - 임산물가공이용시설을 신·증설코자 하는 자
  - 노후화된 임산물가공이용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교체코자 하는 자 다만 동 용자금을 기 지원받아 거치기간(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중에 있는자는 제외한다.
- 꾹 가공시설
  - 꾹 사육자증 꾹을 이용한 가공시설을 신·증설코자 하는 자
  - 꾹 가공식품을 제조코자 하는 자

○ 우선순위

- 임산물가공이용시설 설치
  - ① 임산물가공이용시설을 신설코자 하는 자
  - ② 노후화된 임산물가공이용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교체하거나 증설코자 하는 자
- 꾹 가공시설 설치
  - ① 꾹 사육자증 꾹을 이용한 가공시설을 신·증설코자 하는자
  - ② 꾹 가공식품을 제조코자 하는 자

(2) 선정절차





## 마. 사업시행

- (1)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따라 담보물 제공
- (2) 사업추진에 따라 자금대출
- (3) 시설완공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시설물 적정관리여부 지도·감독
- (2) 임 협 : 용자금 사후관리

### 나. 보 고

- 시·군 : 년 1회이상 점검·확인, 시·도에 보고
- 시·도 : 년 1회 점검결과와 시·군 평가를 종합하여 10월 15일까지 산림청에 보고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산림청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  
" 자원조성국 산림환경과
- 시·도 : 산림과, 녹지과, 산지개발과
- 시·군 : 산림과, 녹지과
- 용 자 : 임업협동조합

## 임산물가공이용 원자재구입(자율)

### 1. 목 적

국내임산물 가공업체에 원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산주의 적정판매가격 보장과 수요확대 및 안정적 공급 도모

### 2. 추진방향

○ 국내산 임산물을 가공원자재로 구입코자 하는 자에게 용자지원하여 이용을 촉진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사 업 량		233	73	75	145	145	870	12,541
사 업 비	계	25,496	6,030	6,225	12,060	12,060	72,360	134,231
	용 자	18,680	4,221	4,358	8,442	8,442	50,652	94,795
	자 담	6,816	1,809	1,867	3,618	3,618	21,708	39,436

####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용 자	자 담
임산물가공이용 원자재구입	75천㎡	6,225	4,358	1,867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1) 산림청 : 지침시달, 자금배정
- (2)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국내산 임산물의 부가가치제고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가공업자가 국내산 임산물을 가공원자재로 구입하는 자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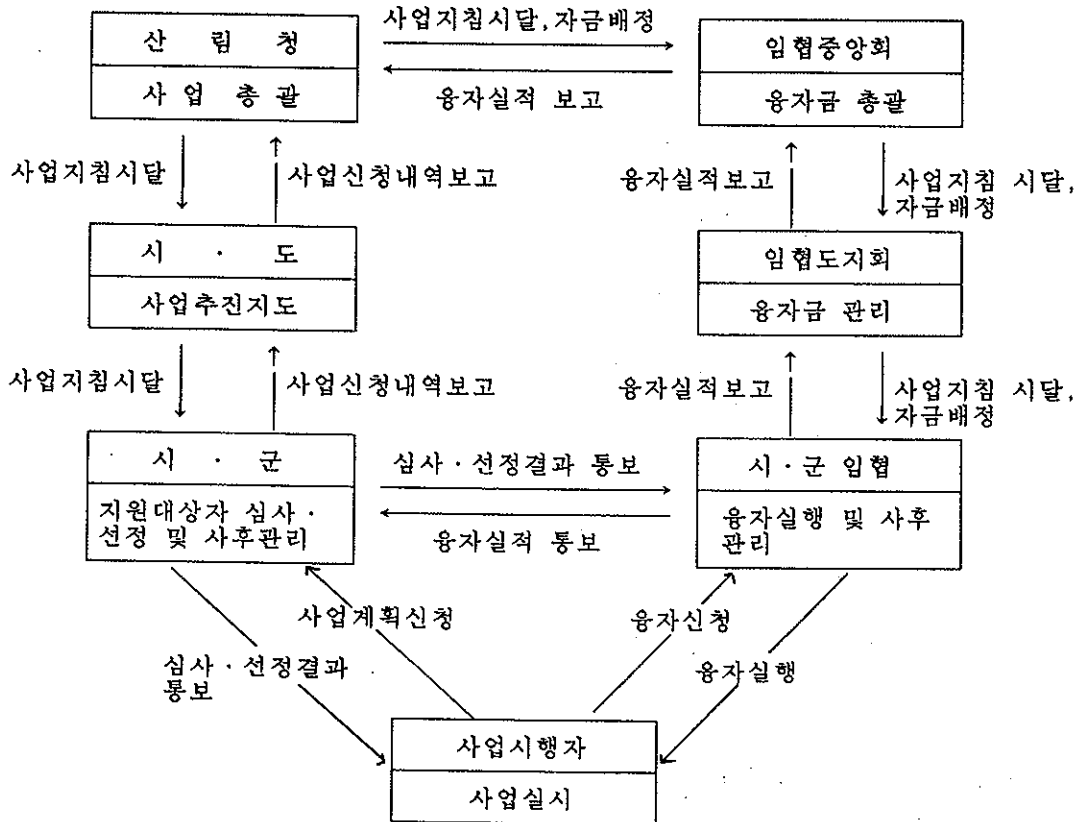
### (2) 지원대상

임산물가공을 목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자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용자한도액 : 3억원 이내
- 용자비율 : 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기간 : 5년(3년거치 2년상환)
  - 금리 : 년 5.5%

### (4)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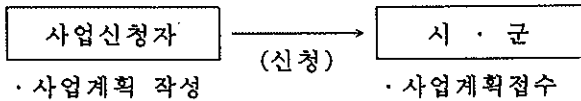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임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자

### (2) 신청절차

- 신청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 전년도 1월 31일까지 신청



### (3)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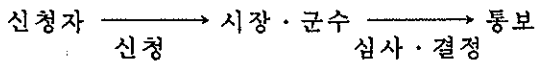
- 농림수산사업지원 신청서 1부 (통합요령 제1호서식)
- 공장등록증 사본
- 농림수산 정책자금 용자신청 자료 1부 (통합요령 제2호서식)

## 라.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임산물가공을 목적으로 공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자로서 국내산 임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자
- 우선순위
  - ① 목재를 구입하여 가공코자 하는 자
  - ② 단기소득 임산물을 구입하여 가공코자 하는 자

### (2) 선정절차



## 마. 사업시행

- (1)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라 담보물 제공
- (2) 원자재 구입 증빙서류등 구비 자금대출
- (3) 가공이용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시설물 적정관리여부 지도·감독
- (2) 임 협 : 융자금 사후관리

### 나. 보고

- 시·군 : 년 1회이상 점검·확인, 시·도에 보고
- 시·도 : 년 1회이상 점검결과와 시·군 평가를 종합하여 10월 15일까지 산림청에 보고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산림청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
- 시·도 : 산림과, 산림개발과, 녹지과
- 시·군 : 산림과, 녹지과
- 용 자 : 임업협동조합

## 임산물생산·이용지원(자율)

### 1. 목 적

- 표고재배시설의 현대화로 표고재배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 밤 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출하시기조절 및 상품가치 보전

### 2. 추진방향

- 표고버섯의 연중생산체계 확립
- 노지재배방식을 시설재배로 전환
- 저온저장시설 확충으로 밤 저장방법 개선
- 유통구조개선으로 밤산업의 경쟁력 제고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사 업 량		- 천㎡	214	422	422	422	2,532	4,012
사 업 비	계	-	8,470	13,058	13,058	13,058	78,348	125,992
	국 고	-	2,541	3,917	3,917	3,917	23,502	37,794
	지방비	-	-	3,917	3,917	3,917	23,502	35,253
	자 담	-	5,929	5,224	5,224	5,224	31,344	52,945

####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계	422,500㎡	13,058	3,917	3,917	5,224
- 표고재배시설	417,000	9,174	2,752	2,752	3,670
- 밤 저장시설	5,500	3,884	1,165	1,165	1,554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1) 산림청 : 지침시달, 자금배정
- (2)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표고재배시설 : 비닐하우스, 관수시설(스프링클러등), 냉·난방등 표고원목 재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밤 저장시설 : 저온저장시설

#### (2) 지원대상

- 표고재배시설 : 표고재배자·표고생산자조직(이하 "임업협동조합" 포함)
- 밤 저장시설 : 밤 재배자·밤 생산자 조직(이하 "임업협동조합" 포함)

#### (3) 지원규모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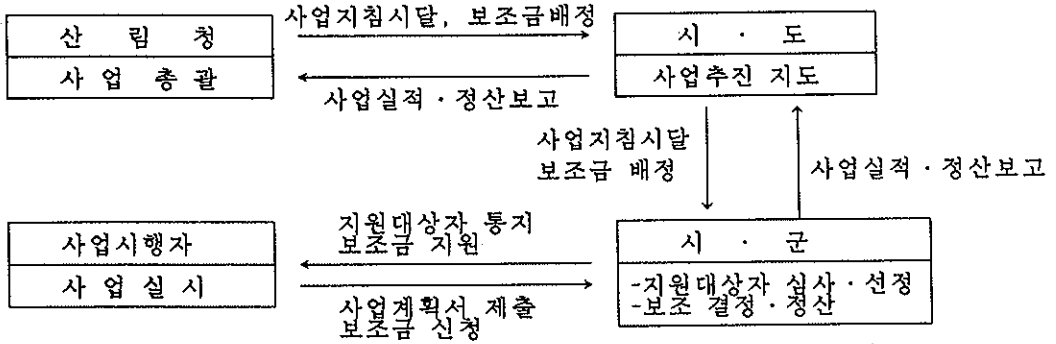
##### ○ 표고재배시설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국고보조한도액 : 20백만원 이내(생산자조직의 경우 300백만원 이내)
- 국고보조단가 : m<sup>2</sup>당 6,600원(기준단가 22,000원의 30%)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시설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 밤 저장시설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국고보조한도액 : 35백만원이내(생산자조직의 경우 500백만원이내)
- 국고보조단가 : m<sup>3</sup>당 211,800원(706,000원의 30%) 이내

(4) 사업시행체계



(5) 사업변경내용

- '95년 "표고재배시설현대화" 및 "밤 저장시설" 사업을 '96년에는 "임산물생산·이용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였음.
- 지원율은 '95년(국고 30%, 자부담 70%) → '96년(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변경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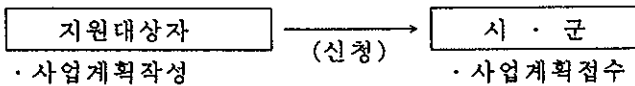
##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표고재배시설 : 표고재배자·표고생산자조직
- 밤 저장시설 : 밤재배자·밤생산자조직

(2) 신청절차

- 신청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 전년도 1월31일까지 신청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1부 (통합요령 제1호서식)



## 라.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 선정기준

- 생산자조직 : 품목별 생산자들로 조직되어 법인화된 조직
- 생산자 : 표고·밤을 재배하고 있는 자

#### ○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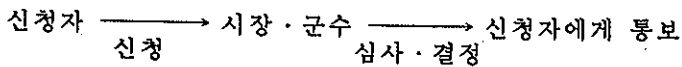
##### - 표고재배시설

- ① 표고주산단지내 법인화된 표고생산자조직
- ② "산" 별 시범사업단지내 법인화된 표고생산자조직
- ③ 기타지역의 법인화된 표고생산자조직
- ④ 30,000본이상 표고재배자
- ⑤ 독립가 또는 임업후계자로서 20,000본이상 표고재배자
- ⑥ 표고재배 경험이 5년이상 있는 자
- ⑦ 기타 표고재배자

##### - 밤 저장시설

- ① 밤 주산단지내 법인화된 밤 생산자조직
- ② "산" 별 시범사업단지내 법인화된 밤 생산자조직
- ③ 기타지역의 법인화된 밤 생산자조직
- ④ 밤나무 10ha이상 재배자
- ⑤ 독립가 또는 임업후계자로서 밤나무 5ha이상 재배자
- ⑥ 기타 밤나무 재배자

### (2) 선정절차



## 마. 사업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96. 1. 1. ~ 12. 31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시설물 적정관리여부 지도·감독

### 나. 보고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을 '97. 1월 20일까지 보고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산림청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
- 시·도 : 산림과, 산지개발과, 녹지과
- 시·군 : 산림과, 녹지과

# 산지가공시설 설치(자율)

## 1. 목 적

- 주요 "산" 별 시범사업단지소재 시·군(이하 "연접 시·군" 포함)·주산단지소재 시·군에서 임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 제고
- 산지가공의 수익성 제고로 민간투자 유도

## 2. 추진방향

- 주요 "산" 별 시범사업단지·주산단지 소재 시·군에 목재가공 또는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 설치
- 2004년까지 25개소를 지속적으로 설치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5	'96	'97	'98	'99-04	합 계
사 업 량		-	1	3	3	18	25
사 업 비	계	-	2,000	6,000	6,000	36,000	50,000
	용 자	-	1,400	4,200	4,200	25,200	35,000
	자 담	-	600	1,800	1,800	10,800	15,000

※ '96 신규사업임.

###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용 자	자 담
산지가공시설	1개소	2,000	1,400	600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지킴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 시·도 : 사업대상자 추천, 집행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주요 "산" 별 시범사업단지 소재 시·군에 간벌재등 목재의 가공시설 설치
- 주산단지 소재 시·군에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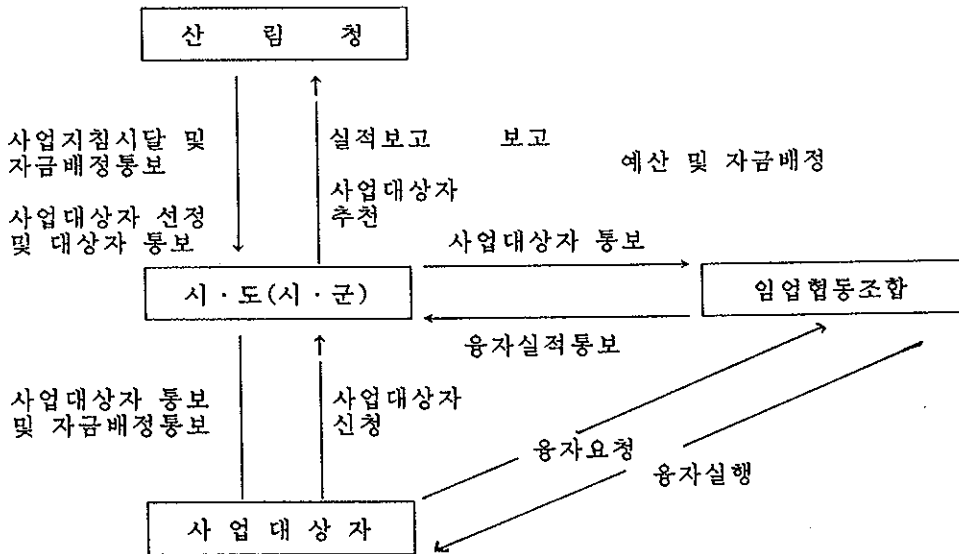
### (2) 지원대상

- 전국 27개 주요 "산" 별 시범사업단지 소재 시·군에 간벌재등 목재가공시설을 설치코자 하거나 주산단지 소재 시·군에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임업협동조합 포함)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를 필하였거나 필하고자 하는 자

### (3) 지원규모 및 한도

- 용자한도액 : 1,400백만원
- 용자비율 : 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기 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
  - 금 리 : 년 5%

### (3)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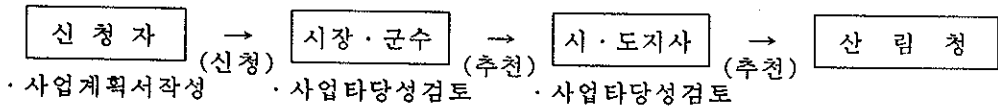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주요 "산" 별 시범사업단지 소재 시·군에 간벌재등 목재가공시설을 설치코자 하거나 주산단지 소재 시·군에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 (임업협동조합 포함)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를 필하였거나 필하고자 하는 자

### (2) 신청절차

- 산림청의 집행지침에 의거 신청



###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 신청서 1부 (통합요령 제1호서식)
- 농림수산정책자금 용자 신청자료 1부 (통합요령 제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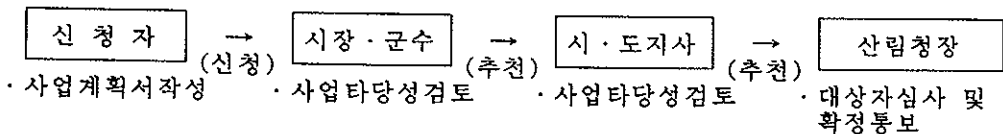
## 라.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주요 "산" 별 시범사업단지(별표 1)소재 시·군에 목재가공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
  - 주산단지(별표 2) 소재 시·군에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
- 우선순위
  - ① 간벌재등 목재의 이용·가공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
  - ②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로서 이용·가공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③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이용·가공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

### (2) 선정절차

- 시장·군수, 시·도지사의 검토·추천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심사·선정



## 마. 사업시행

- (1)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따라 담보물 제공
- (2) 사업추진에 따라 자금대출
- (3) 시설완공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시설물 적정관리 여부 지도·감독
- 임 협 : 용자금 사후관리

### 나. 보고

- 시·군 : 년 1회이상 점검·확인, 시·도에 보고
- 시·도 : 년 1회 점검결과와 시·군 평가를 종합하여 10월 15일까지 산림청에 보고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산림청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
- 시·도 : 산림과, 산지개발과, 녹지과
- 시·군 : 산림과, 녹지과
- 용 자 : 임업협동조합

( 별표 1 )

### 주요 "산" 별 시범사업단지 소재 시·군 내역

주요 "산" 별 시범사업단지	
"산" 명	시범사업단지소재시·군
계 27	
화산 용문 유명 대성 매봉 공작 운두 한석 구룡 대관 육백 가리 천등 미등 민주 광덕 성주 운장 성수 덕유 회문 문수 모후 청옥 백병 검마 지리	춘천, (가평) 양평, (가평) 가평, (양평) 철원, (화천) 인제, (홍천) 홍천, (횡성) 홍천, (평창) 인제 양양 명주, (평창) 삼척 평창, 정선 증원, (제천) 청원, (보은) 영동 공주, (아산), (천안) 보령 진안, (완주) 진안, (장수) 무주, (거창) 순창 장성 화순 봉화 울진 영양, (울진) 함양, (산청)

※ ( )는 "산" 별 시범사업단지에 연접하여 소재한 시·군임

( 별표 2 )

### 단기소득임산물 주산단지 소재 시·군 내역

품 목 명	단지수	주산단지소재 시·군
7	37	
밤	6	부여, 하동, 산청, 광양, 공주, 순창
호도	1	영동
잣	1	가평
대추	5	양평, 경산, 밀양, 영월, 청도
표고	9	영동, 공주, 진안, 장흥1, 원주, 상주, 거제, 장흥2, 청원
송이	9	양양, 울진, 봉화, 영덕, 삼척, 고성, 문경, 안동, 인제
산채	6	평창, 무주, 홍천, 가평, 울릉, 진안



## 임산물유통구조개선(공공)

### 1. 목 적

-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임산물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유통전문시설을 임산물 생산·유통량이 많은 주요지역에 설치
- 유통단계 축소 및 중간상인 배제로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

### 2. 추진방향

- 임산물유통시설을 산지와 소비지로 구분하여 임협중앙회 계통조직에 설치지원
  - 임산물 생산·유통량이 많은 중소도시지역에 직매장, 집하장, 가공공장, 저장시설 등 산지유통시설 설치
  - 수도권등 임산물대량소비자인 대도시 인근지역에 임산물종합처리장 설치
- 표고중균의 안정공급 및 상품의 고급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지원의 확대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계
사업량(개소)	79	29	24	25	24	61	242
- 산지유통시설	51	12	9	9	9	30	120
- 임산물종합처리장	-	1	-	1	-	1	3
- 임산물포장개선	28	15	15	15	15	30	118
- 표고중균생산시설	-	1	-	-	-	-	1
사업비	24,980	13,081	12,114	11,978	9,907	14,553	86,613
- 국 고	7,721	7,833	11,233	6,630	9,026	7,062	49,505
- 지방비	-	-	-	-	-	-	-
- 융 자	-	3,125	-	3,125	-	3,125	9,375
- 차 답	17,259	2,123	881	2,223	881	4,366	27,733

##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6 지원계획		개소당 사업비			비 고
	사업량	금 액	계	국 고	자 담	
- 산지유통시설	9	1,976	-	-	-	국 고 70% 자 담 30%
- 임산물직매장	4	980	350	245	105	
- 목재집하장	3	548	261	183	78	
- 임산물가공공장	1	164	234	164	70	
- 임산물저장시설	1	284	406	284	122	
- 임산물종합처리장	1	6,971	6,971	6,971	-	국 고 100%
- 임산물포장개선	15	79	7	5	2	국 고 70% 자 담 30%
- 표고종균생산시설	1	2,207	2,207	2,207	-	국 고 100%

##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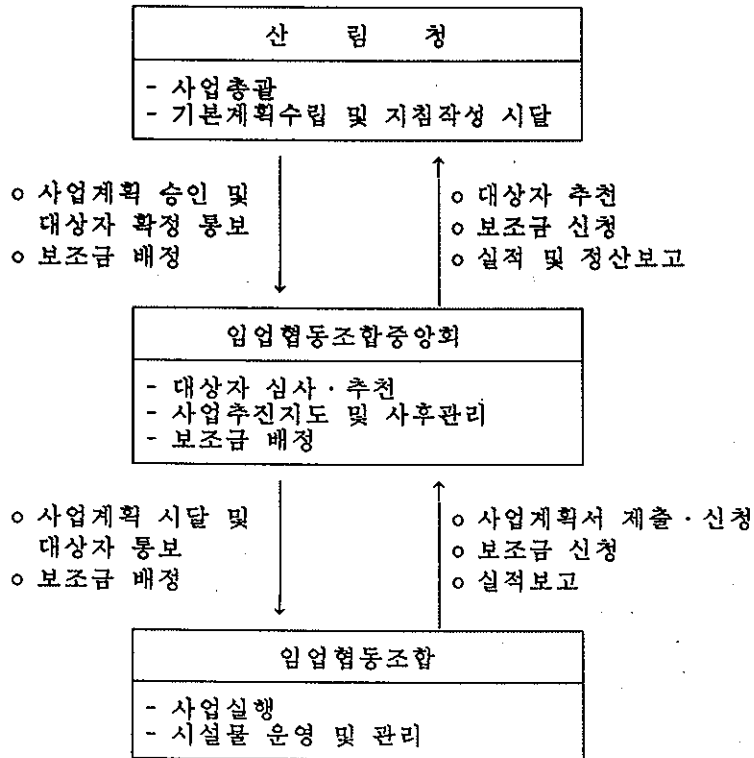
구 분	기 능	설 치 지 역
· 임산물직매장	임산물 수집, 공판, 알선, 판매	주산단지, 유통거점소비지
· 목재집하장	국산재 집하, 가공, 원료공급, 목제품 생산·판매	주요"산"별 시범사업단지, 산촌 종합개발단지, 기타 목재 다량 생산지역
· 임산물가공공장	가공품 생산, 판매(부가가치제고)	품목별 주산단지, 기타 단기 소득임산물 다량 생산지역
· 임산물저장시설	단기소득임산물 수급조절및 가격안정	"
· 임산물종합처리장	임산물의 집하, 공판, 저장, 가공, 판매등 유통기반시설로서의 종합물류시장	수도권등 대도시 인접지역
· 임산물포장개선	임산물 포장·판매	주산단지, "산"별 시범사업단지,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다량 생산지역
· 표고종균생산시설	표고종균 생산·판매	표고종균생산 환경이 양호한 지역

(2) 지원대상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3) 지원규모 및 조건

- 산지유통시설
  - 유통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목재집하장에 한함), 건축비, 기계장비 구입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입산물종합처리장
  - 시설비, 건축비, 기계장비 구입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 입산물포장개선
  - 단기소득입산물 포장개선에 필요한 포장기계·장비 구입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표고중균생산시설
  - 표고중균생산에 필요한 건축비, 기계·장비·시험기기 구입·설치비, 기타시설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4)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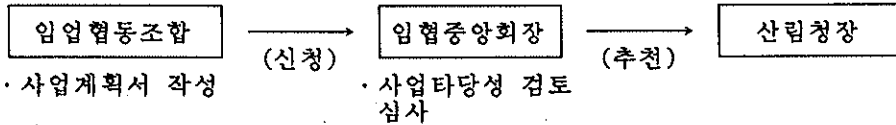


##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2) 신청절차

- 임협중앙회장은 사업수행능력, 자부담능력, 부지확보, 사업효과등 적격여부를 검토 심사하여 전년도 3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3)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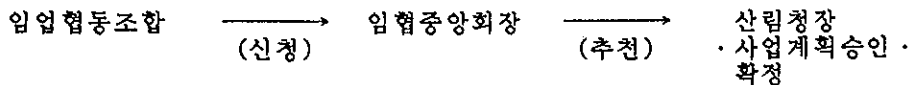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1부 (통합요령 제1호서식)
- 사업예정토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부지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산지유통시설의 설치는 유통시설별 취급품목의 생산·유통량등 지역생산여건과 "산" 별 시범사업단지, 임산물주산단지 또는 산촌종합개발 시범단지등을 고려 선정
- 임산물종합처리장 설치는 소비지유통권을 중심으로 대도시의 외곽에 건설하되 권역별 산지유통시설지의 원료공급 및 소비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입지선정
- 임산물포장개선은 "산" 별 시범사업단지 또는 주산단지와 연계되고 일관된 종합 포장시스템 구축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2) 선정절차



## 마. 사업시행

- 임협중앙회장은 유통시설물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현장의 시공실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
- 시설계획의 불가피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산림청장의 사전변경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 자부담을 기준보조율(30%)보다 낮게 사업비 책정하거나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임협중앙회장은 시설 및 기자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자체 재산관리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
- 임협중앙회장은 유통시설물의 국고보조목적외 사용금지와 효율적인 운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매반기 1회이상 운영사항을 지도점검

### 나. 보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
- 기 설치 유통시설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 연간 운영계획 : 1월 30일까지
  - 반기별 운영실적 :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산림청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
- 단체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지도부

## 간벌재(소경재) 활용장비 지원(공공)

### 1. 목 적

목재로 활용가치가 크나 수집비용을 고려할때 채산성이 약하여 산림에 방치되지 않도록 목재자원을 수집·이용함으로써 산주소득증대 및 목재자원의 활용도 제고

### 2. 추진방향

- 27개 주요 "산" 별 시범사업단지에서 생산되는 간벌재의 수집, 가공·이용 추진
- 주요 "산" 별 시범사업단지 소재 시·군 임협 및 연결지 시·군 임협, 목재집하장이 있는 임협에 지원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조, 백만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사 업 량		20	10	27	27	27	27	138
사 업 비	계	3,060	1,530	1,459	2,553	2,553	2,553	13,708
	국 고	3,060	1,071	1,021	1,787	1,787	1,787	10,513
	자 담	-	459	438	766	766	766	3,195

※ '99년도에 사업종료

####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보 조	자 담
간벌재(소경재) 활용장비	27조	1,459	1,021	438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간벌재를 수집, 운반, 가공·이용하는 기계·장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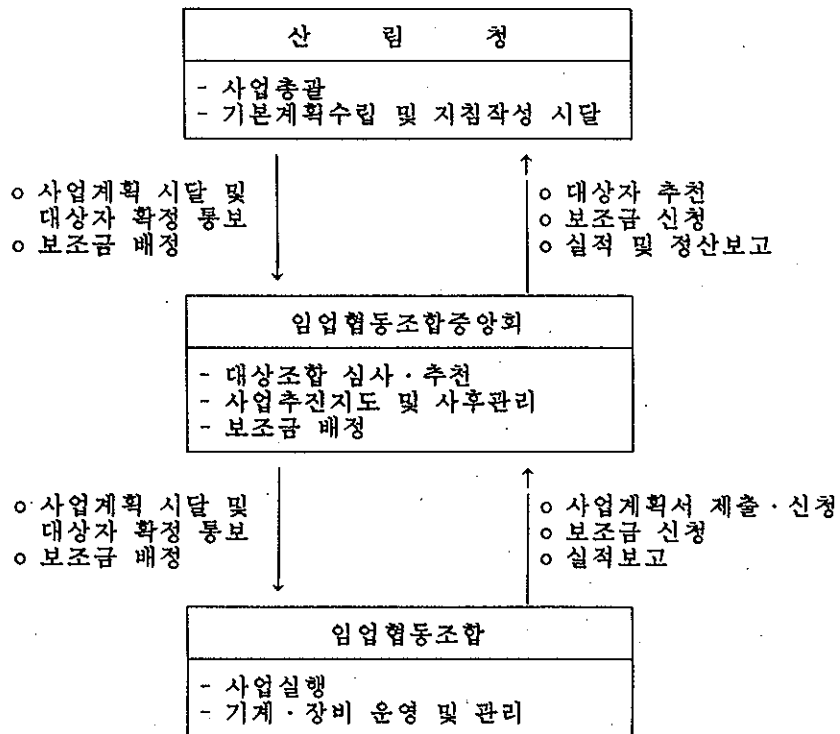
### (2) 지원대상

시·군 입업협동조합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금액 : 1,021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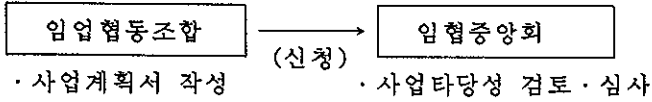
### (4) 사업시행체계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시·군 입업협동조합

(2) 신청절차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1부 (통합요령 제1호서식)

##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입협 계통조직  
(27개 주요 "산" 별 시범사업단지 소재 시·군 입협 및 연결지 시·군 입협, 목재집하장이 있는 입협)
- 예산 및 사업물량과 집중지원방침에 의거 산림청에서 선정 지원

(2) 선정절차

- 입업협동조합장 → 입협중앙회장 → 산림청장  
(신청) (추천) · 대상자선정 및 확정통보

## 마. 사업시행

- 입협중앙회에서 장비를 일괄구입후 수급
- 주요 "산" 별 시범사업단지등 사업지 간벌재의 수집·운반·가공·이용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기계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정비등 책임관리
- 입협중앙회에서 보조목적의 사용금지 확인 및 운영사항 수시 점검

### 나.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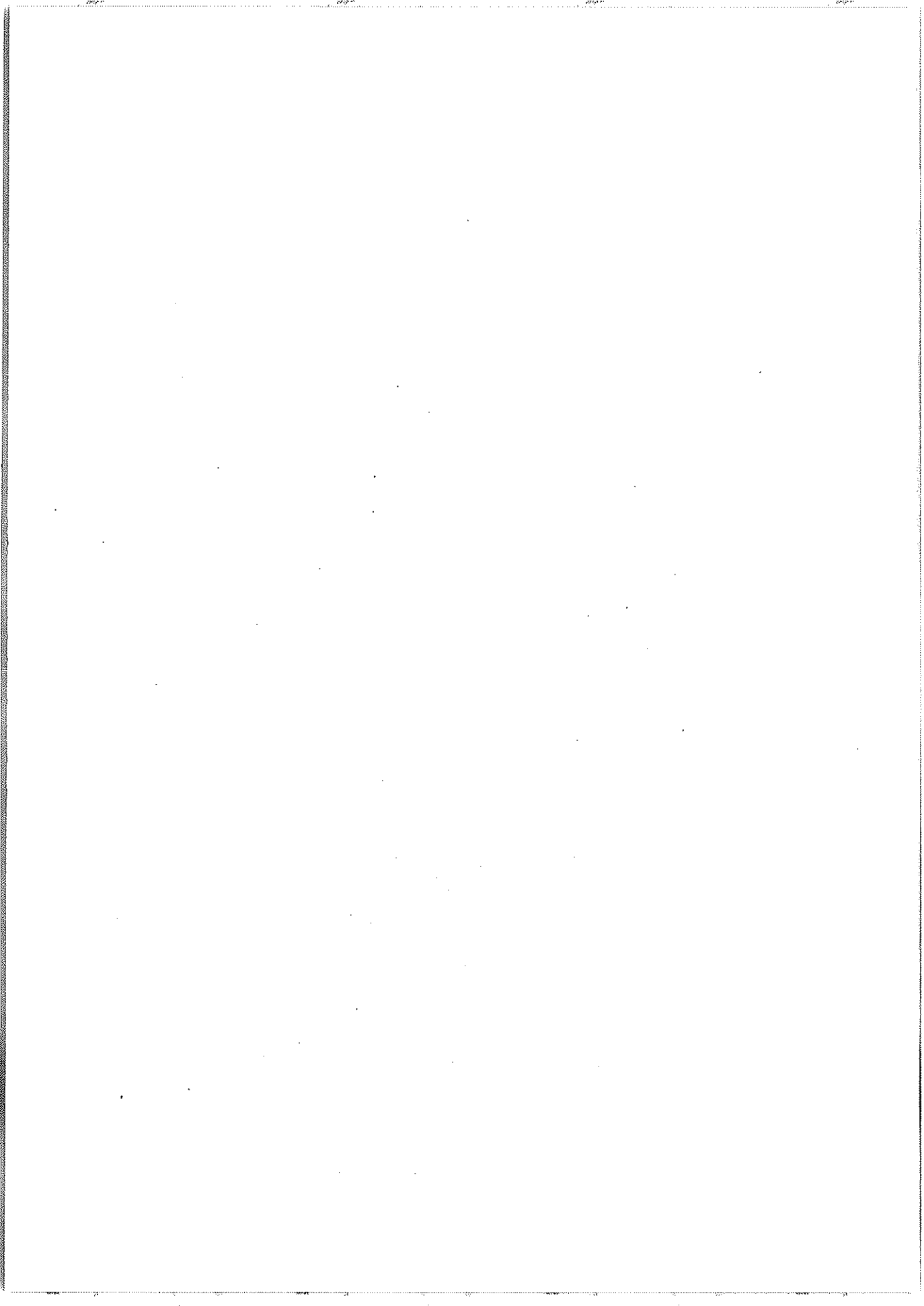
- 구입실적은 익년도 12월말까지 보고
- 사용실적은 익년도 2월말까지 보고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산림청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회원지도부

## 5. 환경임업육성 및 산지관광자원화



# 사방사업(공공)

## 1. 목 적

황폐산지의 복구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여 재해예방과 수원함양·경관조성·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

## 2. 추진방향

- 지역완결원칙에 의한 계통사방 실시  
산정 → 산복 → 댐 → 야계
- 5대강유역·임업진흥촉진지역·산별시범단지내 우선 실시
- 적지적공법에 의한 완벽한 복구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 ~ 2004	합 계
사업량	○ 산지사방 (ha)	128	154	120	120	120	720	1,362
	○ 예방사방 (ha)	41	40	30	30	30	180	352
	○ 해안사방 (ha)	14	10	10	10	10	60	114
	○ 야계사방 (km)	125	112	100	100	100	600	1,137
	○ 사방댐 (개소)	60	42	40	40	40	240	462
사업비	계	19,252	20,142	22,112	22,112	22,112	132,672	238,402
	○ 국 고	13,449	14,105	15,478	15,478	15,478	92,868	166,856
	○ 지 방 비	5,803	6,037	6,634	6,634	6,634	39,804	71,546

## 나. '96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계		21,495,290	15,046,702	6,448,588	
° 산지사방 (ha)	112	2,996,876	2,097,813	899,063	
° 예방사방 (")	20	799,194	559,436	239,758	
° 해안사방 (")	10	126,622	88,636	37,986	
° 사방지추비 (")	693	343,654	240,558	103,096	
° 야계사방 (km)	100	11,192,290	7,834,603	3,357,687	
° 사방땀(개소)	40	6,036,654	4,225,656	1,810,998	

##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 특별·광역시, 제주도 녹지, 산림과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 산지사방

- 자연황폐지, 밀린땅, 산사태발생지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공작물의 시설 및 지피식생을 위한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임.

#### ○ 예방사방

- 인가, 산업시설주변으로 산사태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임.

#### ○ 해안사방

- 해안모래언덕의 이동 및 모래날림방지를 위한 울타리시설과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임.

○ 야계사방

- 산간 황폐계곡의 산기슭을 고정하고 물의 흐름을 완화시켜 계상의 침식방지 및 계류를 정비하는 공사임.

○ 사 방 댐

- 황폐계곡의 토사·자갈이 하류로 유출되지 않도록 횡공작물 설치하는 공사임  
※ 댐에는 저사·저수가 겸하도록 시공하여 산불진화용수, 농업용수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2) 지원대상

- 사방사업은 특정개인에게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가에서 실행하는 사업임.
- 개인 또는 공공단체에서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기소유 토지안에서 자력으로 사방사업을 실행할 수 있음.

(3) 지원규모 및 조건

- 산림이 황폐되었거나 산간계곡이 황폐되어 토사·석력이 유출되고 있어 홍수의 범람우려 및 하류의 농경지등 산업시설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사업량에 구애없이 실행
- 사업실행 재원이 국고 70%, 지방비 30%임으로 별도 지원 조건 없음.

(4) 사업시행 체계

- 산 릫 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량을 검토 재정경제원과 협의  
국고 소요액 확보 및 사업계획 시달
- 시 · 도 : - 익년도 사업계획량에 대한 예산신청  
-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사업량에 대한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실행지시
- 산림환경연구소 : - 익년도 사업계획량에 대한 예산신청  
(특별·광역시, 제주도 녹지·산림과) - 사업실행 예정지선정 및 사업설계·실행

## 5. 사업대상지 선정

### 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 선정기준

- 사방사업은 황폐산지 또는 황폐계천을 대상으로 토사유출등으로 하류의 농경지·산업시설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경관보전에 저해가 되는 곳에 시공

#### ○ 우선순위

- ① 가옥·산업시설, 공공시설 피해우려가 있는 곳
- ② 가옥·농경지 피해우려가 있는 곳
- ③ 자연경관보전에 저해되는등 기타의 곳

### 나. 선정절차

- 산림환경연구소(특별·광역시, 제주도 녹지·산림과)에서 사방사업 대장지의 일괄 조사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실행함.
- 그러나 지역주민이 각급행정기관을 통하여 사방사업 실행을 건의하면 타당성을 검토 실행할 수 있음.

## 6. 사업계획 수립

### 가. 기본조사

- 사업실행 전년도 하반기에 산림환경연구소(특별·광역시, 제주도 녹지·산림과)

### 나. 실시설계

- 산림환경연구소(특별·광역시, 제주도 녹지·산림과)에서 직접 설계

## 7. 사업실행

### 가. 공정계획

- 11 ~ 12월 중순 : 익년도 사업예정지 선정
- 1 ~ 2월 : 사업실행설계서 작성
- 3 ~ 6월 : 준기사업 실행
- 9 ~ 12월 : 추기사업 실행

### 나. 계획변경

- 설계금액 또는 설계사업량의 20% 증감시는 산림청장의 승인
- 설계금액 또는 설계사업량의 10~20%미만 증감시는 시·도지사의 승인
- 설계금액 또는 설계사업량의 10%미만은 산림환경연구소장 승인

### 다. 용지매수 및 보상

- 사방사업은 단위면적당 투자액이 많고 토지의 생산성이 없어 소유자가 실행하지 않는 것을 국가재정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변동이 없으므로 용지의 매수나 보상을 하지 않음.

### 라. 설계 및 시공

- 설계 : 산림환경연구소(특별·광역시, 제주도 녹지·산림과)에서 직접 실행
- 시공
  - 산지·예방·해안사방은 산림환경연구소(특별·광역시, 제주도 녹지·산림과)에서 직영
  - 야계사방·사방댐은 임업협동조합 계통조직에서 도급

### 마. 기술지원 및 공사감리

- 사방사업은 80여년간 관직영으로 실행하여 일반기업체등에 기술이 보급되지 않아 부득이 산림환경연구소(특별·광역시, 제주도 녹지·산림과)에서 기술지원 및 공사감리를 직접 실행



## 바. 검 사

- 산림환경연구소(특별·광역시, 제주도 녹지·산림과)에서 실행

## 8.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방사업을 실행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산주 또는 입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이 경우 사후관리비는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나. 보 고

- 설계 및 실행상황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산림청 자원조성국 산림토목과
- 시도 : 농정국 산림과(특별·광역시, 제주도 녹지·산림과)
- 산림환경연구소 : 사방사업과

※ 시·군에서는 사방사업을 실행하지 않으며 단, 특별·광역시의 경우는 시에서 직영 또는 구청장이 실행하는 경우도 있음

## 산림환경기반조성(공공)

### 1. 목 적

산림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여 산림자원의 과학적 관리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산림피해 방지

### 2. 추진방향

- 산성우 등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산림피해실태 파악 및 방지대책 강구
-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상 기본이 되는 산림입지조사 추진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 ~ 2004	합 계
사 업 량	○ 전국산림입지 조사 (천ha)	207	1,100	1,100	1,400	1,300	1,393	6,500
	○ 산림환경오염 관리 (분야)	-	-	1	1	1	1	4
사 업 비	계	284	1,825	2,709	4,001	3,644	6,615	19,078
	○ 국 고	284	1,825	2,709	4,001	3,644	6,615	19,078
	○ 지 방 비	-	-	-	-	-	-	-
	○ 용 부 자 담	-	-	-	-	-	-	-

나. '96 지원계획 : 2,709백만원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시행주체

- ┌ 산림입지조사 : 시·군 및 관리소
- └ 산림환경오염관리 : 도 및 산림환경연구소

- 지도감독 : 시·도 및 영림서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전국산림입지조사

- 산림토양의 특성, 생산능력(지위), 이용가능성(지리)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산림입지도를 작성하여 과학적인 산림경영 도모

- 조사내용 : 입지환경 및 토양단면조사, 임목조사, 지리조사 등

- 산림환경오염관리

- 산림환경오염관리를 위해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산림피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평가하고 피해 산림의 회복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생태계의 안정화 도모

#### (2)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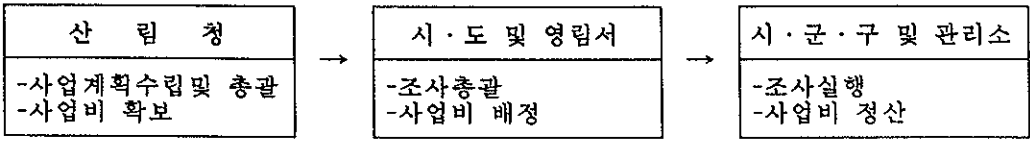
- 산림입지조사 ┌ 국유림 : 영림서, 관리소
- └ 민유림 : 도, 시·군

- 산림환경오염관리 : 도, 산림환경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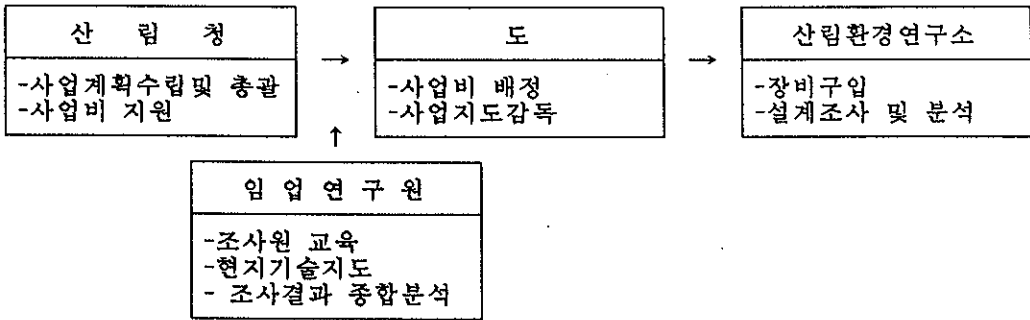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사업비 전액 국고지원(국고보조 100%)

(4) 사업시행체계

○ 전국산림입지조사



○ 산림환경오염관리



다. 사업시행

○ 산림입지조사

- 국, 민유림중 입지조사 미 실행지를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사업지 선정
  - 산별시범사업단지와 생산입지권역을 우선적으로 조사
  - 임업진흥촉진지역, 집단조림지, 기타 생산입지로 보전·육성하여야 할 산림
  - 국립공원,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등 법정제한림이 단지화 되어있는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관내의 연간조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조사 실시
  - 조사지역내 국유림과 민유림이 같이 있을 때에는 지역완결주의에 따라 국유림과 민유림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
- 민유림은 도 또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주관으로 해당 시·군 또는 학계, 조사기관 등이 상호 협조하여 현지조사 및 입지도를 작성하고, 국유림은 영림서가 조사 주체가 되고 해당 관리소가 현지조사 및 입지도 작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사업집행 및 정산보고

○ 산림환경오염관리

- 지원사업비는 대기오염측정 장비구입 및 산성우에 의한 산림피해 실태조사 사업에 활용
- 산림환경오염관리분야는 신규사업 일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도 및 산림환경연구소와 시·군이 긴밀히 협조 추진
- 대기오염측정장비내역 및 산성우에 의한 산림피해실태조사요령은 별도시달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사업집행 및 정산보고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부서에서 책임사후관리

### 나. 보 고 : 분기보(분기별 사업진도 보고)

- 산림입지조사
  - 시·군 및 관리소 : 사업종료후 시·도 및 영림서에 보고
  - 시·도 및 영림서 : 시·군 및 관리소의 사업결과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보고
- 산림환경오염관리
  - 산림환경연구소 : 도에 보고
  - 도 : 산림청에 보고

※ 단, 현지조사결과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를 경유하여 임업연구원에 보고하고, 임업연구원은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산림청에 보고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산림입지조사
  - 중앙 : 산림청 산지계획과
  - 시·도 :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 시·군 : 산림(녹지)과
  - 영림서 : 사업과
- 산림환경오염관리
  - 중앙 : 산림청 산림환경과
  - 도 : 산림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 산불방지대책(공공)

### 1. 목 적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를 강화하여 산림생태계의 파괴를 최대한 방지하고 산림의 공익 기능 발휘

### 2. 추진방향

- 예방위주의 산불방지대책 적극 강구
- 진화조직의 정비와 장비 현대화로 조기진화체제 구축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	'95	'96	'97	'98	'99~ 2004	합 계
○ 사업량계								
	-헬기 도입(운영)	1(19)	3(22)	3(25)	2(27)	(27)	(27)	(27)
	-경비행기 도입	-	1	-	2(3)	(3)	(3)	(3)
	-산불감시원	15,000	13,000	13,000	13,000	13,000	60,000	127,000
	-밤비바켓	-	5	5	15	15	60	100
	-동력펌프	70	70	-	-	-	-	-
	-휴대용무전기	400	400	600	800	800	4,800	7,800
	-산림방재차	-	3	20	40	50	240	353
	-수조탱크	-	-	100	200	300	1,200	1,800
	-진화급식비	260,000	40,000	80,000	80,000	100,000	320,000	880,000
	-소화약제	120	90	90	90	100	540	1,030
	-공익근무요원	-	13,173	17,000	13,000	2,215	132,900	178,288
	-산불감시시설 등	60	60	60	120	150	720	1,170
	-무인감시시스템	-	-	-	1	2	12	15
사	계	7,841	31,091	63,618	64,460	60,536	311,892	539,438
업	-일 반	5,483	14,750	17,141	16,957	12,559	75,042	141,932
비	-국 특	1,871	2,848	2,636	2,636	2,636	15,816	28,443
	-지방비	487	13,493	43,841	44,867	45,341	221,034	369,063

나. '96지원계획

구 분	'96 계 획		비 고
	물 량	금 액	
계		17,141	
○ 헬기도입 (운영)	3대	15,999	
○ 밤비바켓	5개	55	
○ 지상진화장비 등		640	
- 산불진화급식비	80,000명	200	50%보조
- 휴대용무전기	600대	81	30%보조
- 방화복	3,780착	57	"
- 산림방재차	20대	180	"
- 수조탱크	100개	94	"
- 등짐펌프	1,890개	28	"
○ 산불소화약제	100ha	90	
○ 산불소화탄개발용역비	1식	100	
○ 산불감시시설	60동	36	30%보조
○ 보상금	6명	18	
○ 기 타	-	203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 주관기관 : 산림청 보호과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헬기도입 : '97까지 27대 확보 (도당 3대 기준)
  - '95현재 22대 (대형 7, 중형 13, 소형 2)
- 경비행기를 이용한 공중감시체계 구축
- 지상진화장비 확대보급
- 지방격납고 신설 (호남권, 영동권)
- 산림공익근무요원을 시·도, 영림서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입산자 계도, 산림내 취사, 밀렵행위 등 감시

#### (2) 지원규모 및 조건

- 진화장비 : 국고 30%, 지방비 70%
- 진화급식비 : 국고 50%, 지방비 50%

#### (3) 사업시행체계

- 산림청 : 산불방지대책수립, 시·도별 시달
- 시·도 : 산불방지대책수립, 시·군별 시달
- 시·군·구 : 산불방지활동, 산불진화장비구입, 감시원배치 등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불방지추진상황 지도점검 실시 (2회 : 봄철, 가을철)

나. 보 고 : 산불방지 추진상황 보고 (2회 : 봄철, 가을철)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산림청 보호과
- 시·도 : 산림(녹지)과
- 시·군 : 산림(녹지)과



# 야생조수보호(공공)

## 1. 목적

야생조수의 보호증식으로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며 조수의 서식밀도 유지와 유해조수로부터 농림어업의 보호를 위한 수렵장 운영

## 2. 추진방향

- 야생조수의 보호증식으로 자연생태계 균형유지
  - 조수보호구역 확대설정, 야생조수의 적정밀도유지, 조수서식 실태조사로 효율적인 조수행정추진등
- 수렵장 적정운영, 야생조수 불법포획단속 및 대국민홍보강화
- 조수보호 국제협력강화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94	'95	'96	'97	'98	'99~2004
	계	3,718	338	338	338	338	338	2,028
-	일반	2,893	263	263	263	263	263	1,578
·	국고	1,991	181	181	181	181	181	1,086
·	지방비	902	82	82	82	82	82	492
-	국특	825	75	75	75	75	75	450

○ 사업량

구 분	합 계	'94	'95	'96	'97	'98	'99~2004
· 새집달기 (개)	31,273	2,843	2,843	2,843	2,843	2,843	17,058
· 먹이식물식재 (본)	108,900	9,900	9,900	9,900	9,900	9,900	59,400
· 보호구표지판 (개)	1,342	122	122	122	122	122	732
· 경계표지판 (개)	4,191	381	381	381	381	381	2,286
· 보호수의과수술 (본)	440	40	40	40	40	40	240
· 서식실태조사 (명)	18	18	18	18	18	18	18
· 시범수렵장운영 (개소)	1	1	1	1	1	1	1

※ 서식실태조사는 매년 18명, 시범수렵장운영 매년 1개소

나. '96 지원계획 : 338백만원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구청장 및 영림서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가) 조수보호구역 확대설정 및 서식환경조성

○ 조수가 서식하는 산림과 철새도래지등에 조수보호구를 확대설정

	'94	2004
· 조수보호구	597개소 (123,205ha)	→ 625개소 (139,572ha)
· 특별보호구	107 " ( 3,742 " )	→ 125 " ( 4,636 " )

○ 야생조수 서식환경조성을 위해 조수보호구역내에 먹이식물식재, 보호구표지판등 설치

(나) 야생조수 실태조사

- 효율적인 조수보호 및 수렵행정 추진을 위해 야생조수의 서식실태조사를 전국 주요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고정조사구 134개소(4,020ha)에서 매월 2회 실시

(다) 조수의 인공증식·방사

- 야생조수를 인공증식·방사하여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에 기여

(라) 야생조수 진료센터 운영

- 지역별로 설치된 진료센터의 적정운영으로 부상당한 조수를 신속하게 운반치료

(마) 유해조수 구제

- 구제제도의 사전홍보로 관련민원 일소 및 농림어업의 피해 최소화

(바) 수렵장 운영

- 수렵장의 운영으로 야생조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림어업의 보호
- 강릉영림서 시범수렵장은 순종멧돼지 사육기술개발 및 종돈보급장 위주로 운영
  - 기간 : 11. 1~2. 28(4개월간)
  - 수렵장 [ 순환수렵장 : 1-2개도씩 순환실시(경기, 제주제외)  
고정 " : 제주, 거제(강원도 1개소 시설중)

(사) 조수보호의 국제화

- 한·러 철새보호협정 이행철저
  - 철새의 이동경로 조사
  - 철새도래 서식실태 조사
- CITES협약 준수
  - 국제적 차원의 야생조수 멸종방지와 공동연구사업 추진
- RAMSAR협약 가입 및 한·일, 한·중 철새보호협정 체결추진

(아) 야생조수 불법포획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 산림공익근무요원의 단속요원화로 밀렵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체제의 강화
  - 산림공익근무요원(12,135명) 단속요원화
- 불법포획 등 위법행위자 단속강화
- 보호단속요원에 대한 교육강화로 자질향상

(자)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 중요 천연림과 최고령 수목등을 발굴,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확대
-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중 수간이 부패되었거나, 구멍등이 생긴 보호수는 외과수술 실시
-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

(2) 지원대상

- 재정자립도가 낮고 야생조수 서식밀도가 높은 도의 시·군을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지원
- 국가기관인 강릉영림서의 시범수렵장 운영예산은 전액지원

(3) 지원규모 및 조건

- 야생조수 서식실태조사(국고보조 100%)
- 서식환경조성(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50%)
- 보호수 외과수술(국고보조 30%, 지방비보조 70%)
- 시범수렵장 운영(국고보조 100%)

(4) 사업시행체계

- 시행주체
  - 시·군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추진 및 관리
  - 강릉영림서 시범수렵장은 강릉영림서에서 직접 운영관리
- 지도감독
  - 시·도 → 산림청(산림환경과)

## 5. 사업대상지 선정

### 가. 선정기준

- 조수보호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보조사업 신청물량을 감안 시·도별 사업대상을 심사 선정

### 나. 선정절차

- 보조사업신청 → 보조사업선정(산림청)  
(시·군→시·도)

## 6. 사업계획 수립

- 시·군단위로 사업별 기본조사후 실시설계등 사업계획 수립 시행

## 7. 사업시행

- 시·군 책임하에 야생조수 서식실태조사 및 서식환경조성은 임업연구원, 도 산림환경연구소의 협조로 시행하고, 보호수의과수술은 사단법인 한국수목연구회 또는 나무병원의 협조 및 용역으로 시행

## 8.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 및 영림서에서 책임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 나. 보고

- 시·군 : 연 1회 점검평가후 시·도에 보고
- 시·도, 영림서 : 연 1회 " 산림청에 보고
- 산림청 : 연 1회 심사결과 개선조치사항을 농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공지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산림청 자원조성국 산림환경과
- 시·도 : 산림과(녹지과)
- 영림서 : 서무과
- 시·군·구 : 산림과(녹지과, 공원녹지과)

#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 1. 목 적

-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 조성제공 및 농산촌지역사회 균형발전 및 산주소득증대 도모
- 산림내에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건전사고 함양 및 체험에 의한 자연학습공간 조성제공

- 2004년까지 200개소의 산림휴양시설 확충 -

- 자연휴양림 : 100개소
- 산림욕장 : 65개소
- 숲속 교실 : 35개소

## 2. 추진방향

- 야외휴양수요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조성
- 휴양림 조성을 통한 산촌소득원 개발
- 휴양림 구역은 입지여건을 감안 최대한 확대지정
- 산림훼손의 최소화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
- 지리적 여건 및 휴양수요 특성에 부합하는 휴양공간조성
- 입상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산림경영 병행추진
- 휴양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88~94	'95	'96	'97	'98~2004	합 계
사업량	계	71	14	12	13	90	200
	- 자연휴양림	51	5	5	5	34	100
	- 산림욕장	6	8	6	6	39	65
	- 숲속 교실	14	1	1	2	17	35
사업비	계	24,691	14,120	23,154	13,600	94,600	170,165
	- 일반	5,642	3,273	5,549	3,520	22,120	40,109
	- 국특	7,548	3,548	10,456	3,200	25,400	50,152
	- 농특	5,955	3,360	1,120	3,360	23,520	37,315
	- 지방	2,989	2,499	5,549	2,080	13,480	26,597
	- 자부담	2,552	1,440	480	1,440	10,080	15,992

## 나. '96 지원계획

(단위: 사업량-개소, 사업비-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합 계	국 비	지 방 비
합 계	12	11,098	5,549	5,549
- 자연 휴양림	7	9,098	4,549	4,549
· 사전설계	1	58	29	29
· 1차년도 (강원, 충남, 경북)	3	2,520	1,260	1,260
· 2차년도 (전북, 전남, 경북)	3	2,520	1,260	1,260
· 시설보완	(10)	4,000	2,000	2,000
- 산림욕장	5	2,000	1,000	1,000

※ 용자(1,120백만원) 및 국특(10,456백만원) 제외.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1) 국유림 : 영림서 관리소장
- (2) 공유림 : [ 시·도 유림의 경우 : 시·도지사  
시·군 유림의 경우 : 시장·군수
- (3) 사유림 : 시·도지사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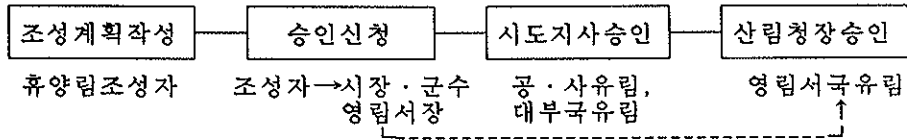
- 국민휴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 편의시설의 종류 : 오솔길, 야영장, 산림욕장, 순환로, 등산로, 숲속의 집, 방문자 안내소, 취사장, 화장실, 자연관찰로 등

#### (2) 지원규모 및 조건

- 국유림 : 개소당 12억원(전액 국고보조)
- 공유림 : 개소당 12억원을 2개년 분할지원(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유림 : - 8억원을 기준으로 70%까지 용자지원(용자 70%, 자부담 30%)  
- 3년거치 7년상환(년리 3%)

### (3) 사업시행 체계

- 휴양림 조성자
  - 영림서국유림 : 관리소장
  - 도관리국유림 : 시장·군수
  - 대부국유림 : 수대부자
  - 공유림 : 시·도지사, 시장·군수
  - 사유림 : 산림소유자
- 사업시행 절차



## 5. 사업대상지 선정

### 가. 선정기준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임상이 울창한 산림
-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 1단지 구역면적이 국·공유림은 100ha이상, 사유림 30ha이상의 산림

### 나. 선정절차

- “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으로써 휴양림예정지 적지평가조사결과 조성가능지 이상으로 평가된 산림소유자가 시·군에 신청

## 6. 기본계획수립

### 가. 기본조사항목

- 지형조건 : 해발, 경사, 방위, 지세등
- 임 상 : 수종 및 ha당 축적등
- 수원관계 : 계곡부의 수량풍부 여부등
- 기암괴석관계 : 특징적인 바위, 봉우리, 고갯길등 이름
- 희귀 동·식물 분포 및 서식관계 :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종류, 밀도등
- 경관관계 : 계곡 및 봉우리, 입상등 경관
- 인근 지역과의 관계 : 사찰, 명승고적, 유적지, 온천, 약수터, 저수지등
- 지역특산물 : 산림부산물(산나물, 열매, 버섯등), 기타 특산물(목공예품, 향토음식등)의 종류등



## 나. 실시설계

- 휴양림 구역면적을 최대한 확대하여 휴양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
- 오솔길, 등산로 등은 외곽산정까지 확대조성 활용공간을 넓히므로써 이용 효율 제고
- 시설물은 분산시설을 억제하고 가급적 복합적·종합적으로 설치
- 주변자연경관과 어울리게 지역특색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되, 인근 산촌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7. 사업시행

- '97 신규조성사업 예정지는 입지여건을 고려 사전설계 실시
- '96년 2년차 조성사업지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교실등 다양한 휴양공간조성
-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

## 8. 행정사항

### 가. 보 고

보 고 명	보고종류	보 고 기 한
○ '96 공·사유림 자원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상황 보고	수 시	승인후 10일이내
○ '96 자연휴양림 조성(보완)결과 보고서	즉 보	준공직후
○ '96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년 보	'97년 1월초
○ 자연휴양림 조성 이력카드	수 보	
○ '96 산림욕장 조성결과 보고	즉 보	준공즉시
○ 숲속교실 운영계획 대 실적	년 보	익년 1월초
○ 국고보조금 정산 실적보고	년 보	사업완료 즉시

##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산림청 산림경영국 산지계획과
- 시·도 : 농정국 산림과(산림국 산지개발과)
- 시·군 : 산림과(녹지과)

## 산림박물관건립 및 수목원조성(공공)

### 1. 목 적

지역향토수종 등 가치있는 유전자원과 산림사료의 영구적 보존·전시 및 학술 연구를 통하여 산림문화 창달과 대국민 자연학습장 제공

### 2. 추진방향

#### 가. 산림박물관 건립

- 2000년까지 권역별(중앙, 강원, 충청, 호남, 영남)로 1개소씩 건립
-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건립
- 산림훼손의 최소화로 자연경관 유지보전

#### 나. 수목원 조성

- 2000년까지 각도별 1개소씩 9개도 조성
- 지역향토수종, 각종 희귀식물 등 가치있는 산림자원 보전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사업량-개소, 사업비-백만원)

구 분		92~94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계	7	3	2(4)	2	-	-	14	
	박물관 수목원	2	1	1(2)	1	-	-	5	
		5	2	1(2)	1	-	-	9	
사업비	계	31,250	2,208	5,880	6,250	6,250	7,000	58,838	
	국 고	15,625	1,104	2,940	3,125	3,125	3,500	29,419	
	지 방 비	15,625	1,104	2,940	3,125	3,125	3,500	29,419	
	융 자	-	-	-	-	-	-	-	-
	자 부 담	-	-	-	-	-	-	-	-

※ ( )내는 기초성개소의 연속사업임

## 나. '96 지원계획

(단위:사업량-개소, 사업비-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합 계	국 비	지 방 비
계	6	5,880	2,940	2,940
- 산림박물관	3	4,276	2,138	2,138
· 신규설계(순창)	1	276	138	138
· 공주박물관	1	2,000	1,000	1,000
· 진양박물관	1	2,000	1,000	1,000
- 수 목 원	3	1,604	802	802
· 신규설계(강원)	1	104	52	52
· 1차년도사업 (충북, 경북)	2	1,500	750	75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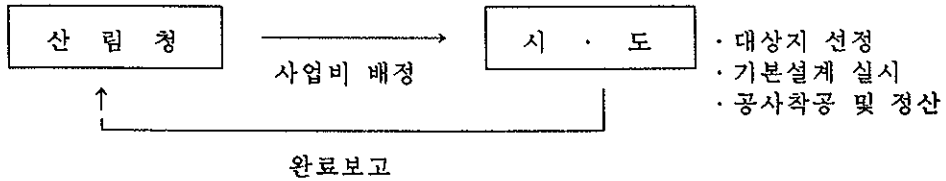
- 산림박물관
  - 박물관, 내부전시물 및 각종 부대시설 설치등
- 수목원 조성
  - 전시원, 온실, 교육동, 묘포장, 관리사, 주차장, 관찰로, 순환로, 조경사업 등

### (2)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산림박물관 : 총80억 규모를 4년계획으로 추진(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수목원 : 총30억 규모를 4년계획으로 추진(국비 50%, 지방비 50%)

#### (4) 사업시행 체계



### 5. 사업대상지 선정

가. 박물관 : 중앙, 강원, 충청, 호남, 영남권별로 1개소씩 조성하되, 대상지는 해당권역 시·도지사 책임하에 선정

나. 수목원 :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되, 대상지는 해당 시·도지사 책임하에 선정조성

### 6. 행정사항

#### 가. 보 고

- 설계 보고 : 설계완료 즉시 보고
- 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1) 중 앙 : 산림청 산림경영국 산지계획과(02-961-2337~8)
- (2) 시·도 : 농정국 산림과(산림국 산지개발과)
- (3) 시·군 : 산림과(녹지과)

## 산촌종합개발(공공)

### 1. 목 적

산촌지역의 목재와 임산자원을 이용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여 산촌소득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도모하고 산촌마을의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특색있는 임업촌락을 조성

### 2. 추진방향

- 정주권개발과 연계한 특색있는 「산림도시」로 발전도모
  - 중심마을 : 공동시설확충, 제재소등 목재가공시설 지원
  - 산촌마을 : 정주생활환경개선과 소득원개발사업등 지원
  - 주변산림 : 입도시설, 휴양림 조성, 간벌등 산림사업 촉진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사업량-마을,사업비-백만원)

구 분	92~94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	1(4)	3(5)	5(11)	11(15)	130(115)	150	
사업비	계	-	2,240	7,118	11,200	59,840	291,200	371,598
	국 고	-	2,240	4,238	5,600	47,520	145,600	205,198
	지방비	-	-	960	2,400	5,280	62,400	71,040
	융자 자부담	-	-	1,920	3,200	7,040	83,200	95,360

※ 사업량의 ( )내는 설계대상 마을수임.

나. '96 지원계획 : 7,118백만원(국고 80%, 지방비 2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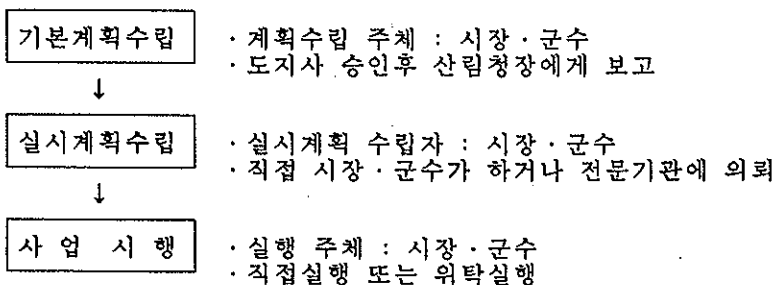
- 생산기반 정비(경지정리, 밭 기반정리, 농어촌 용수개발등) 계획
- 소득원개발(버섯단지, 산채재배단지, 임산물 가공시설, 지역특산물판매장) 공동작업장 등
- 자연휴양림 조성, 산림사업 등
- 산림사업실행을 통한 산촌소득향상

#### (2) 지원대상 : 산촌지역 주민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마을당 총 2,240백만원
  - 보조금 : 1600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
  - 융자금 : 640백만원
    - 산촌소득원개발 : 금리 5%, 3년거치 7년상환
    - 주택 증·개축 : 금리 3%, 3년거치 7년상환
    - 주택 신축 : 금리 5%, 5년거치 15년상환
  - 설계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398백만원(마을당 약80백만원)

#### (4) 사업시행 체계



## 5. 사업대상지 선정

### 가. 선정기준

- (1) 정주체계 형성
  - 정주권개발 계획등과 연계될 수 있는 마을정주체계가 형성된 지역
- (2) 산촌구분
  - 임야율이 75%이상인 지역
- (3) 대상지역 선정 세부기준 : 산별시범사업단지지역내 산촌마을
  - 마을규모는 20~50호 정도의 자연부락중 집단마을
  - 사유림 협업체가 조직되어 산림개발 가능성이 높고 산림기능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거나 앞으로 사유림 휴양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
  - 산촌개발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가 높으며, 마을에 개발의 주체(사람)가 있으며, 개발능력이 있는 지역
  - 입지여건상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 농림수산부, 내무부등 기존사업계획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
  - 사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선정

## 6. 사업계획수립

### 가. 기본조사

- (1) 현 황
  - 일반현황, 산촌개발계획 실태, 인문, 지리적 현황 등
- (2) 조사 및 계획내용
  - 기본조사 및 토지이용계획, 단지조성계획
  - 전기통신 및 수자원계획
  - 환경관련 시설계획
  - 생산기반 정비계획 등
- (3) 산촌소득원 개발계획
  - 소득기반 조성
    - 공동저장시설, 공동판매장, 밀원단지조성, 임간방목장 등
    - 향토수종 및 관상수 생산, 야생화체단지 조성, 산나물 등 산채생산, 특용작물단지 생산, 버섯류 생산 등

- 임산물 가공·이용시설
  - 제재소, 목가공품 생산시설, 도토리묵 공장 등
- 자연휴양림 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으로 화원단지조성
  - 산벗나무, 진달래, 철쭉, 산수유나무 등
- 사업계획에 따른 효과 분석
  - 조사자 종합의견
  - 주민의견 및 주민의식조사 분석결과

##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행가능한 사업실시 설계

## 7. 사업시행

시장·군수 책임하에 사업실행

## 8.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개발된 마을에 대한 산림사업 계속지원
- (2) 마을 정주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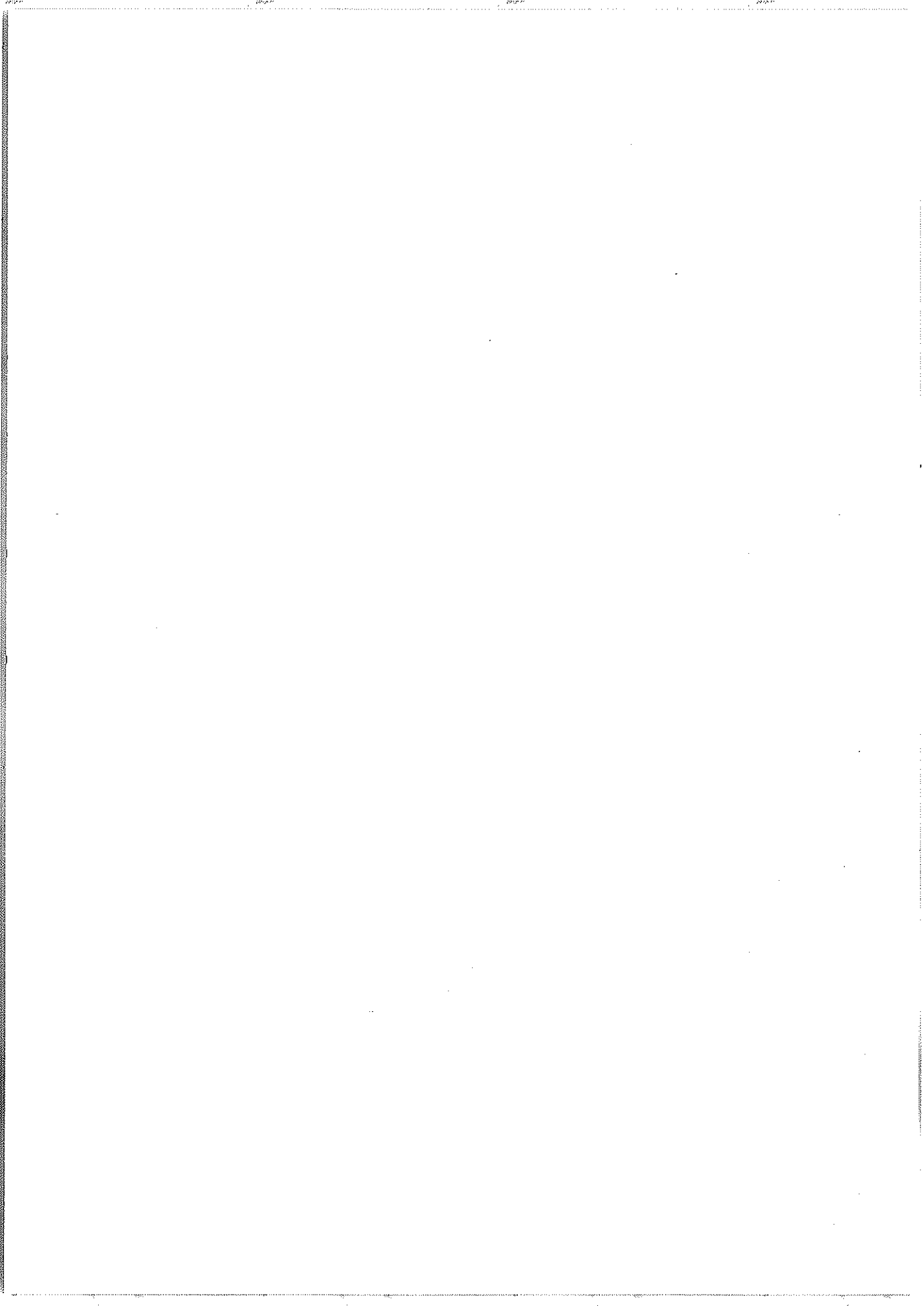
### 나. 보 고

- (1) 기본 및 실시설계 : 계약 즉시
- (2) 추진상황 : 분기말 익월 5일까지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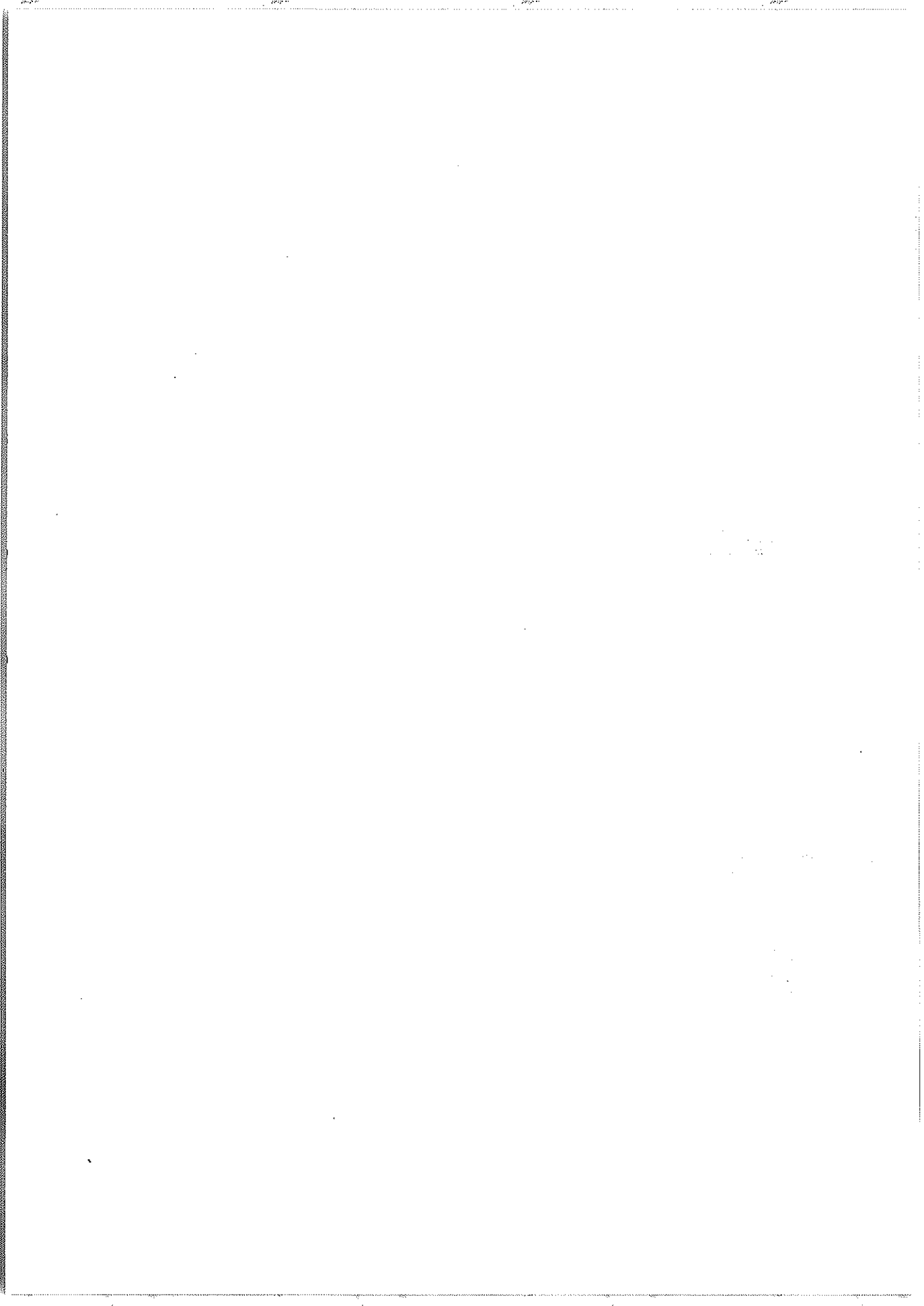
- (1) 중 양 : 산림청 산림경영국 산지계획과(02-961-2337~8)
- (2) 시·도 : 농정국 산림과
- (3) 시·군 : 산림과(녹지과)





# 〈어업·어촌지원〉

## 1. 수산자원 조성



# 내수면 어업개발 (자율)

## 1. 목 적

- 유희농경지 및 수면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
- 산업화에 따른 내수면 환경변화로 어로어업의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 필요성 대두
- 담수어의 양식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동물성 단백질 공급과 수질환경 개선

## 2. 추진방향

- 내수면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 댐, 호, 저수지 등에 시설된 가두리 양식시설을 육상양식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 부응
  - 양식어민들이 생산한 담수어를 직접 출하 함으로써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직매장 시설 지원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 가두리양식장육상전환	사업량	-	5	5	8	8	8	34	
	사업비	계	-	2,500	2,500	4,000	4,000	4,000	17,000
		국고	-	500	500	800	800	800	3,400
		지방비	-	250	250	400	400	400	1,700
		융자	-	1,000	1,000	1,600	1,600	1,600	6,800
	자담	-	750	750	1,200	1,200	1,200	5,100	
○ 양어장수질정화시설	사업량	-	20	20	20	20	120	200	
	사업비	계	-	1,000	1,000	1,000	1,000	6,000	10,000
		국고	-	200	200	200	200	1,200	2,000
		지방비	-	100	100	100	100	600	1,000
		융자	-	400	400	400	400	2,400	4,000
	자담	-	300	300	300	300	1,800	3,000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 담수어축양 시설	사업량	22	12	14	24	24	184	280	
	사업비 (총계)	계	4,400	2,400	5,000	9,200	9,200	65,400	95,600
		국 고	-	-	-	-	-	-	-
		지방비	-	-	-	-	-	-	-
용자	3,080	1,680	3,500	6,440	6,440	45,780	66,920		
자담	1,320	720	1,500	2,760	2,760	19,620	28,680		
- 대단위 담수어양식단지	사업량	-	-	2	4	4	26	36	
	사업비	계	-	-	2,600	5,200	5,200	33,800	46,800
		용자	-	-	1,820	3,640	3,640	23,660	32,760
자담	-	-	780	1,560	1,560	10,140	14,040		
- 담수어양어장시설	사업량	22	12	12	20	20	158	244	
	사업비	계	4,400	2,400	2,400	4,000	4,000	31,600	48,800
		용자	3,080	1,680	1,680	2,800	2,800	22,120	34,160
자담	1,320	720	720	1,200	1,200	9,480	14,640		
○ 담수어유통 시설	사업량	5	2	2	3	3	16	31	
	사업비	계	2,214	1,000	1,000	1,500	1,500	8,000	15,214
		용자	1,550	700	700	1,050	1,050	5,600	10,650
자담	664	300	300	450	450	2,400	4,564		

나. '96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물 량	금 액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계		9,500	700	350	5,600	2,850
○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	5 개소	2,500	500	250	1,000	750
○ 양어장 수질정화 시설	20 "	1,000	200	100	400	300
○ 담수어축양 시설	14 "	5,000	-	-	3,500	1,500
- 대단위담수어양식단지	2	2,600	-	-	1,820	780
- 담수어양어장 시설	12	2,400	-	-	1,680	720
○ 담수어유통 시설	2	1,000	-	-	700	30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사업주체가 필요시에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

나. 사업 현황

##### 1) 사업 내용

가)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

- 정부 맑은물 공급시책에 따라 상수원에 시설된 가두리양식장 철거를 위해 해당 어민에게 육상양식장 전환시설비 지원

나) 양어장수질정화시설

- 정부의 맑은물공급 종합대책과 관련 500㎡ 이상의 양어장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자금력이 취약한 내수면 양어장에 시설비 지원

다) 담수어축양시설

- 농어촌에 지역특산 어종개발 및 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 지원

라) 담수어유통시설

- 담수어의 유통단계 단축으로 양식어민 및 소비자 보호와 가격안정

##### 2) 지원조건 및 규모

사 업 명	용자기간			지 원 율			
	연리	거치	상환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 가두리 양식장 육상 전환	5 %	5 년	10년	20 %	10 %	40 %	30 %
○ 양어장 수 질 정 화 시 설	3 "	5	10	20 "	10 %	40 "	30 "
○ 담 수 어 축 양 시 설							
- 대단위담수어양식단지조성	5 "	5	10	-	-	70 "	30 "
- 담 수 어 양 어 장 시 설	5 "	3	5	-	-	70 "	30 "
○ 담 수 어 유통 시 설	5 "	3	5	-	-	70 "	30 "

## ○ 사업규모

- 사업집행주체는 지역적 여건, 양식대상어종 및 사업의 종류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를 정하며, 사업별로 갖추어야 할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음. 다만,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관련시설을 할 수 있음

①가두리양식장육상전환 : 사육시설(치어지, 양생지), 폐수처리시설 등  
(다만, 총사업비중 자담(30%)을 사용하여 부지구입 가능)

②양어장 수질 정화시설 : 침전 정화시설, 정화기기 설치 시설 등  
(정화시설 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기준으로 시설하여야 함 : 별지 참조)

③담수어축양시설 :

- 대단위담수어양식단지조성 : 사육시설(치어지, 양생지), 폐수처리시설, 양어장 직판장시설, 전시장시설 등

- 담수어양어장시설 : 사육시설(치어지, 양생지), 폐수처리시설 등

④담수어유통시설 : 축양시설 및 판매장, 전시장, 폐수처리시설 등  
(간이 가공시설 및 부대시설 등)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가두리양식장육상전환 : 상수원에서 가두리양식장을 경영하는 자가 육상양식 이전을 희망하는 자

○ 양어장 수질정화 시설 : 내수면 양식면허를 받고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

○ 담수어축양시설

- 대단위담수어양식단지조성 : 내수면양식면허(허가, 신고포함)를 받고 1년이상 경영하는 새마을양식계, 영농법인, 내수면양식생산조합(협회) 등 단체,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협업체

- 담수어양어장시설 : 내수면양식업을 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담수어유통시설 : 새마을양식계, 영농법인, 내수면양식생산조합(협회) 등 단체 또는 양식어민 3인 이상의 협업체

### 2) 신청절차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어민은 신청서를 시장, 군수(농어촌어촌지도소 포함)에게 제출

###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통합요령 제1호서식)

○ 사업집행주체가 정하는 관계서류

## 라. 대상자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 공동기준

- 사업집행주체는 당해 부지가 관계법에 의해 허용이 가능한 지 사전에 확인하여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용자조건 및 자담능력이 있는 자
  - \* 하천법, 농지이용과보전에 관한법, 산림법, 도시계획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 사업별 우선순위 해당자라 하더라도 5년 이내 동종 사업을 지원받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사업별 선정기준

##### ①가두리양식장육상전환

- 선정대상
  - . 상수원에서 가두리양식장을 경영하는 자가 육상양식 이전을 희망하는 자
- 우선순위
  - . 육상양어장 시설완료 즉시 상수원 지역의 가두리를 철거하겠 다는 각서를 제출한 자
  - . 어업권 만료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자

##### ②양어장수질정화시설

- 선정대상
  - . 내수면양식면허(신고어업 포함)를 받고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
- 우선순위
  - . 배출수량이 많아 수질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유수식양어장"을 경영하는 자
  - . 양어장 폐수에 의하여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양어장을 경영하는 자

##### ③담수어축양시설

- 선정대상
  - . 대단위 담수어양식단지 조성
    - : 내수면양식면허(허가, 신고포함)를 받고 1년이상 양식업을 경영하는 새마을 양식계, 영농법인, 내수면 양식생산조합(협회)등 단체, 3인이상으로 구성되는 협업체



· 담수어 양어장 시설

: 내수면 양식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우선순위

- 댐, 호, 저수지에서 가두리양식장을 경영하는 자가 육상 전환을 희망하는 자
- 토산어종을 양식하고자 고밀도 집약양식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집행주체가 당해지역 여건 등을 감안, 대외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④ 담수어유통시설

- 선정대상

- 소비지에 직매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새마을양식계, 영농법인, 내수면 양식 생산조합(협회)등, 양식어민 3인이상의 협업체

- 우선순위

- 시 이상의 소비지에 직매장시설을 희망하는 단체 및 협업체
- 군, 읍 소재지 및 관광단지 등에 직매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단체 및 협업체

#### 2) 선정절차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어업별, 농어가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한도내에서 대상자 및 대상지역 선정

마. 기타사항 :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 군수

나. 보 고 : 정부 투융자사업 보고요령에 의거 보고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수산청 생산국 자원조성과
- 도 : 수산국(식산국) 수산과(어업진흥과)
- 군 : 수산과(산업과 수산계)

# 수산 양식사업 (자율)

## 1. 목적

어업인의 수산양식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생산성 및 어가소득 증대 도모

## 2. 추진방향

-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어패류 양식시설 확대 개발
- 수산 종묘생산 시설등을 확충하여 안정적 양식 도모
- 사료저장고, 개량부자 대체사업 등의 생산기반시설 확립 및 어장환경 개선
- 다수어민의 소득원개발을 위해 공동어장 인근수역을 양식장으로 개발

##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94 까 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천ha)		110	3	3	3	3	18	140
사 업 비	계	103,516	18,325	19,752	21,095	21,095	126,570	310,353
	국 고	9,788	5,780	6,434	5,238	5,238	31,428	63,906
	지방비	4,426	1,030	1,185	1,158	1,158	6,948	15,905
	융 자	56,238	7,580	8,197	10,494	10,494	62,964	155,967
비 자 담	33,064	3,935	3,936	4,205	4,205	25,230	74,575	

나. '96 지원계획(안) : 14,631백만원

- 양식어장개발 (일반회계 및 농특용자) : 3,720백만원

- 어장정비정리 300ha 1,200, 어류양식 15개소 1,200, 가리비 25ha 1,000,  
전복20ha 320백만원

○ 양식기반시설 (일반회계 및 농특용자) : 3,923백만원

- 어류종묘배양장 3개소 480, 패류종묘배양장3개소 480, 사료저장고6개소 480, 사료제조기 5대 60, 개량부자 444천개 1,066, 김유기산구입지원 2,200톤 1,144, 우렁쉥이작업선 1대 213백만원

○ 공동어장 양식장화 지원 (농특세사업) : 6,988백만원

- 어류양식 15개소 1,200, 패류양식 1,554ha 4,588백만원  
(전복 50ha 600, 가리비 1,000ha 2,400, 바지락 250ha 600, 피조개 240ha 960, 고막 14ha 28백만원)

- 종묘중간생산시설 3개소 1,200백만원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현황

1) 지원대상

- 일반예산 및 농특용자사업 :수협(어촌계), 3인이상 어민협업체, 어민
- 농특세사업 : 수협(어촌계)

2)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한도)
- 일반회계 및 구조개선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내 용		지 원 한 도				
	물량	금액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담
○ 가 리 비	25ha	1,250	1,250		1,000		250
○ 전 복	20 "	400	400		320		80
○ 어 류 양 식	15개소	1,500	1,500		1,200		300
○ 종 묘 배 양 장 고	6 "	1,200	1,200		960		240
○ 사 료 제 조 기	6 "	600	600		480		120
○ 개 량 부 자	5대	75	75		60		15
○ 김 유 기 산 구 입 지 원	444천개	1,332	1,332	533	533		266
○ 어 장 정 비 정 리	2,200톤	2,860	2,860	1,144		858	858
○ 우 령 쉼 이 작 업 선	300ha	1,500	1,500	1,200		300	
	1조	300	300	63	150	27	60

- 농특세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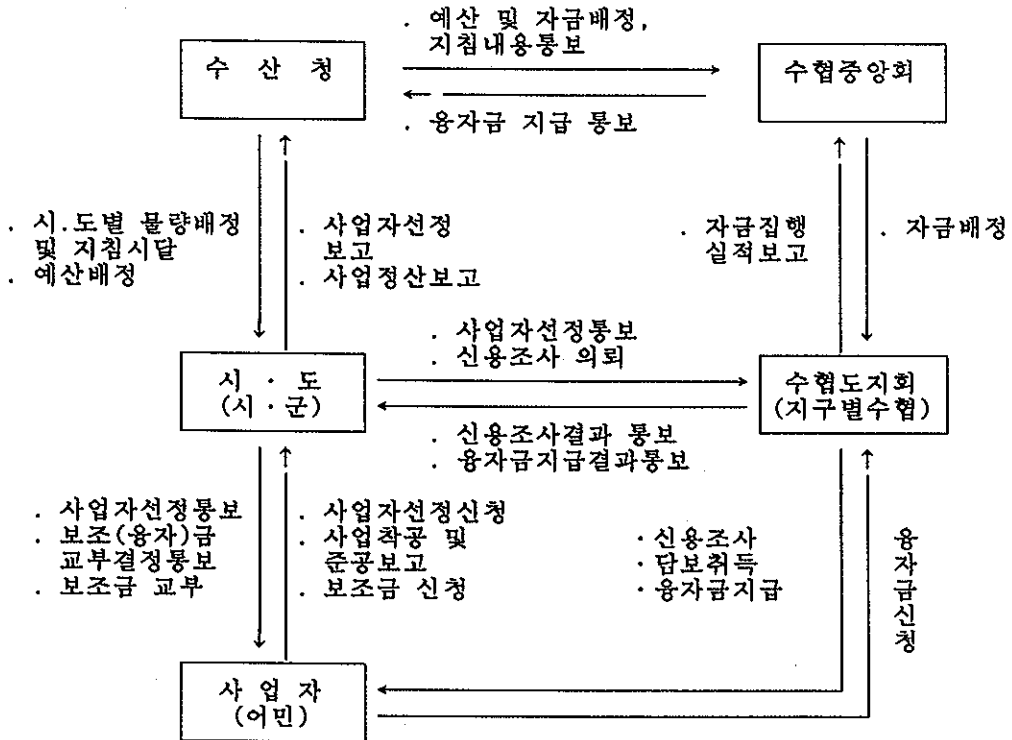
사 업 별	내 용		지 원 한 도				
	물량	금액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담
○ 어 류 양 식	15개소	1,500	1,500	600	600		300
○ 전 복	50ha	750	750	300	300		150
○ 가 리 비	1,000 "	3,000	3,000	1,200	1,200		600
○ 바 지 락	250 "	750	750	300	300		150
○ 피 조 개	240 "	1,200	1,200	480	480		240
○ 고 락	14 "	35	35	14	14		7
○ 종묘중간배양장	3개소	1,500	1,500	600	600		300

○ 지원조건

사 업 별	지원비율(%)				년리 (%)	용자기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담		계	거치	상환
<b>&lt; 일반 및 구조개선사업 &gt;</b>								
○ 가리비, 전복, 어류양식, 종묘배양장, 사료저장고, 사료제조기		80		20	5	10	3	7
○ 개 량 부 자	40	40		20	5	10	3	7
○ 김 유 기 산	40		30	30				
○ 어장정비정리	80		20					
○ 우령행이작업선	21	50	9	20	5	10	3	7
<b>&lt; 농특세 지원사업 &gt;</b>								
○ 어류양식, 전복, 가리비, 바지락, 피조개, 고막 종묘중간배양장	40	40		20	5	10	3	7

\* 지원율은 '9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변동될수 있음.

### 3) 사업시행체계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양식어업을 경영코자 하는 어민단체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및 개인
- 2) 신청절차  
시·도, 시·군 등에 사업계획서 제출
- 3) 구비서류
  - 사업자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통합요령 제1호서식)
  - 택지확보증명서 또는 택지사용승락서(시설택지를 요하는 사업)
  - 자기자금 예치증명서

## 라. 대상자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시·도 또는 시·군 농발위 심의결과에 준함  
(사업타당성, 수행능력, 자부담능력, 양식적지 여부등 종합검토)
- 우선순위
  - 신규어장 개발
  - 수협(어촌계), 협업어민, 어민개인순에 의하며, 바다목장화권역·불법어업 근절시범어촌계·시군단위농어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지역과 저소득 어촌계

### 2) 선정절차

- 신청 (사업자) → 심사 (시·군, 시·도 농발위) → 결정내용 통보 (신청자, 수협)

## 마. 기타사항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나. 보 고

- 분기보(매분기 익월 5일한)
  - 수산사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수산청고시 89-20) 서식 제5호
- 연보(익년 1월15일한) : 동 서식 6호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수산청 생산국 증식과
- 시·도 : 수산국(농정국, 수산진흥관실)  
생산과(수산과, 수산진흥관실)
- 시·군 : 수산과

##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공공)

### 1. 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및 어민소득 증대 도모

### 2. 추진방향

#### 가. 기본방향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조정

나. 사업의 집행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톤,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 ~ 2004	합 계
사 업 량	972	2,064	2,310	6,839	22,941	94,599	129,725
사 업 비 용 자 담	계	5,752	13,566	19,236	31,827	54,524	189,708
	국 고	5,752	9,688	12,157	19,782	42,373	165,939
	지방비	-	2,315	2,911	4,355	4,461	4,204
	용 자	-	1,250	3,454	6,151	6,151	15,523
자 담	-	313	714	1,539	1,539	4,042	8,147

나. '96 지원계획(안) : 연근해어선 2,310톤(159척), 15,611백만원

- 연안어업 : 해선망, 낭장망, 연안안강망어업 등 420톤(124척)
- 근해어업 : 대형선망 1,680톤(2통, 14척), 대형트롤 130톤(1척)  
잠수기어업 80톤(20척) 등 1,890톤(35척)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연안어업 : 해선망어업자(구획어업포함), 낭장망어업자, 연안안강망어업자
- 근해어업 : 대형선망어업자, 대형트롤어업자, 잠수기어업자

### 2) 신청절차

- 연안어업 : 어업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
- 근해어업 : 어업인이 해당 지구별, 업종별조합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

### 3) 구비서류

- 보상액의 내용과 증빙서류(시·도지사가 별도지정)

## 라. 대상자선정

### ○ 연안어업

- 해선망어업 및 낭장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하되 조업수역별 또는 시·군별로 선정하는 것을 우선함. 다만, 대상어선이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된 금액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선정가능
- 집행주체는 당해 사업대상어선에 대하여 실태조사(별표1)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켜야 함
  - 어선의 방치상태로 보아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어선
  - 사업자 선정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상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
  - 어선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동일인 인지를 확인(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받은자와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동일인 인지 여부)하여 이에 위반되는 어선
  - 어선이 없고 어업허가장만 소지한 자
  -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어선이 다른경우

### ○ 근해어업

- 당해 어업의 허가를 받은자로서 업종별조합장으로 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 이때 관련 수협장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추천, 다만, 잠수기어업의 경우는 사업집행주체가 당해 어업허가를 받은자를 대상자로 선정
  - 노후어선을 소유한자
  - 사업자 선정 시점을 기준 3년이상 계속해서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대형선망어업은 당해 조합에서 '95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대상자로 자체선정된 경우는 예외)
- 당해년도 구조조정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당해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어선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켜야 함
  - 어선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동일인 인지를 확인(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받은자와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동일인 인지 여부)하여 이에 위반되는 어선
  - 어선이 없고 어업허가장만 소지한 자
  -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어선이 다른경우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협조: 시장·군수)

- 국립수산물진흥원장, 수협중앙회장, 한국어선협회장은 사업집행주체로부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연안어업 : 해선망어업(구획어업 포함), 낭장망어업, 안강망어업의 어선·어구(이하 "어선등"이라함)로 함
- 근해어업
  - 대형선망어업, 대형트롤어업, 잠수기어업의 어선등으로 함
- 사업물량 및 사업비는 별도 시달하는 당해년도 사업내시서에 의함  
다만, 근해어업의 경우 초과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해당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부담하여야 함

2) 지원조건

- 연안어업 : 국고 80%, 지방비 20%

- 근해어업

- 대형선망어업: 본선의 잔존가치평가액과 본선과 부속선의 폐선처리비 국고100%, 부속선(등선과 운반선)은 잔존가치평가액 용자80%, 자담(업종별수협)20%
- 대형트롤어업: 어선의 잔존가치액평가액과 폐선처리비 국고 100% 폐업보상비 용자 80%, 자담 20%(업종별조합)
- 잠수기어업: 국고 60%, 용자 20%, 지방비 20%

3) 사업시행체계

- 수 산 청 : 소요예산확보, 집행지침시달  
사업 추진사항 점검, 확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구별 및 업종별수협 협조)
  - 사업 세부 집행계획 수립
  - 사업대상 어업실태조사 및 허가정비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희망어업자 신청
  - 대상자별 보상금산출
  - 사업자확정, 사업자별 보상금결정 통보
  - 어선, 어구등 시·도지사 인수, 어업허가취소
  - 보상금지급
  - 폐선처리
  - 사업추진결과 보고
  - 다음해 사업 소요예산 파악, 신청

## 다. 사업시행

### 연안어업

#### ○ 보상금의 산출

- 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동 사업에 의거 어선을 매입할 계획임을 통지하고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토록 통보
- 보상금의 산출은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주체가 적정하게 산출

#### ○ 사업자확정

- 보상금 산출결과에 따라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확정, 이 경우 입찰한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쌍방간 합의로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 노후어선을 소유한 자
  - 어업경영 상태가 불량한 자
  - 후계자가 없는 어업자
  - 당해어선에 대한 소득의존도가 낮은 어업자
  - 기타 어업실태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 집행주체가 선정한 자

#### ○ 보상금의 교부결정, 확정

- 집행주체가 사업자별 보상금 결정후 사업자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수산업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어업의 허가가 취소될 것임을 고지
- 보상금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어선에 설치된 재활용 가능한 장비등을 자체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등의 잔존가치액은 집행주체가 보상금에서 제외
- 사업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이전 당해 어선등을 집행주체가 지정한 장소(해체처리장소등)로 인도
- 집행주체는 인도받은 당해어선의 허가를 취소하고 등록을 말소시킨후 사업자에게 보상금 지급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의 보상금지급은 그 상속인에게 함

#### ○ 사업자별 보상금 결정등 사업추진에 관한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등

- 집행주체가 다음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당해도에 설치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
  - 사업자별 보상금결정에 관한사항
  - 기타 집행주체가 이사업집행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산조정위원장이 상기사항 심의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상황을 청취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자료등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음

## ○ 어선등의 해체(폐기)처리

- 집행주체는 인도받은 어선등을 해체(폐기)처리 하여야 함. 다만, 낱장망 또는 연안안강망어업에 활용되었던 어선이 선택의 상태로 보아 어업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안어업중 구조조정 대상어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어업의 노후 어선 대체용으로 매각할 수 있음. 이 경우 교체된 어선은 매입자가 해체(폐기) 처리토록 하여야 함.
- 어선등의 해체(폐기)처리는 전문업체를 선정 처리하여야 함.

## 근해어업

### ○ 보상금의 산출

- 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당해 어선을 매입할 계획임을 통지하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토록 통보
- 보상금 산출은 집행주체가 사업대상자의 어선등에 대하여 대형선망어업은 잔존가치평가액, 기타어업은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여야 함
- 어선(본선 및 부속선)에 설치된 재활용 가능한 장비등을 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받기전 매각 가능. 이 경우 매각된 장비등의 잔존평가액을 보상금에서 제외.

### ○ 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확정

### ○ 보상금(보조금 및 용자금)의 교부결정 확정

- 집행주체가 보상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당해 어업의 허가가 취소될 것임을 고지
-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청구 신청과 함께 당해 어선등을 집행주체가 지정한 장소(해체처리장소등)로 인도하여야 함.
- 집행주체는 인도받은 당해 어선의 어선등록 말소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위입받고 허가를 취소한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의 보상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
- 사업집행주체가 용자금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 또는 확정하였을 때에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해당 시·도지회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용자금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 여신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용자금중 대형선망어업과 대형트롤어업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 차주가 되고 잠수기어업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차주가 되어야 함.
- 보상금중 용자금은 업종별(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지급받아 자부담금을 합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용자금에 대한 용자조건은 금리 연 3%,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함.

### ○ 어선등의 해체처리

- 집행주체는 사업자로 부터 인도받은 어선등을 해체(폐기)처리하여야 함. 이 경우 어선등의 해체(폐기)처리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5. 행정사항

### 가. 사업집행

- 집행주체가 평년수익액을 산출할 수 없어 수산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이를 의뢰(용역)한 경우, 1-2회의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보상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보상금 집행잔액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수산사업보조금집행및 관리에 관한 규정(수산청고시 제89-20호 '89.6.20)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수산청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확정(취소, 변경포함)은 내시서로 같음.
- 본 사업의 집행순기는 별표2과 같음

### 나. 사후관리

- 전문기관(업체)등 용역기관의 선정,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상태등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함
- 집행주체가 전문기관(업체)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조사(업무)가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

### 다. 보고

- 집행주체가 당해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사업자선정, 어업허가 취소, 보상금지급 및 폐선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집행주체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투용자 사업실적 보고요령에 의거 수산청장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집행 완료보고서를 작성 사업추진의 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x7)를 첨부하여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라.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수산청 생산국 연근해과
- 시·도 : 수산과, (전남도:어업진흥과, 경남도:생산과)
- 시·군 : 수산과

## 6. 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음

<별표1>

## 어선실태조사서표(예시)

조사자 직 성명 (인)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사일시	
주 소					
허가번호		허가기간	19 . . . ~ 19 . . . ( )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의 명칭.종류		
건조일자	경과년수		톤수	허가톤수: ,	표시톤수 :
선체 재질		기관종류	육상디젤( ), 디젤( )   마력		
어선의상태	신조( ), 중고( ), 노후( ), 방치되어있으나 수리시 사용가능( ), 폐선( )				
◦ 어선상태에 대한 조사자 의견			◦ 어선, 어구등의 전경사진 및 사진설명등 (사진별첨)		
◦ 소유자변경에 관한사항 - 현재 이전등록사항: -변경일자: -전소유자 : - 임차허가시 원소유자 : -임차기간:					
◦ 현소유자의 직업 또는 어업경력등					
◦ 조업실태 -년간출항(조업)일수, 승선자(명) -어구 및 어법현황					
- 채포물의 종류 및 수량, 금액(위판실적 및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자료등 첨부) . . .					
◦ 공익사업시행등으로 보상을 받은 실적유무등					
◦ 기타(위장전입, 최근허가권 매매사례등) 등 어선의 특기사항					

<별표 2>

## '96사업집행 순기

구 분	일 정	비 고
○ 세부 집행계획 수립	1. 1 - 1. 15	
○ 대상어업허가 실태조사 및 어업허가 일제정비	1. 16 - 2. 28	
○ 사업대상자선정 및 보상금 결정·통지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보상의 청구 - 감정평가사 및 수산전문기관 용역조사 등 실시 - 어업허가 폐지처분 고지 - 보상금 결정 및 사업자 확정 - 보상금 교부 결정 및 통지	3. 1 - 10. 10	
○ 보상금 교부 확정. - 어업허가 취소 - 사업자별 보상금 지급	10. 11 - 10. 31	
○ 폐선처리 - 전문업체 용역 등	11. 1 - 11. 30	

# 어항 조성 (공공)

## 1. 1.3종 어항건설

### 1. 목 적

- 어업활동의 기반시설이 되는 어항시설 확충을 통하여 어촌지역의 생산성 향상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
  - 어선의 정박, 계류등 안전수용
  - 어획물의 효율적 양륙처리
  - 선수품 보급, 어선(어구)수리등 출어준비
  - 어장 어촌을 연계한 정주환경 조성

### 2. 추진방향

- 이미 지정된 85개항중 미완공 37개항을 집중 투자하여 어항 기본시설을 조기완성
- 전국적으로 조화된 어항의 균형개발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어항을 확대 지정 및 개발 추진
  - 85개항 ('95) → 310개항 (2004)

### 3. 투융자 계획

- 년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 2004	합 계
사업량 (완공)	48	1	5	3	21	117	195
사업비 (국고)	534,699	109,280	127,989	146,616	182,078	1,313,787	2,414,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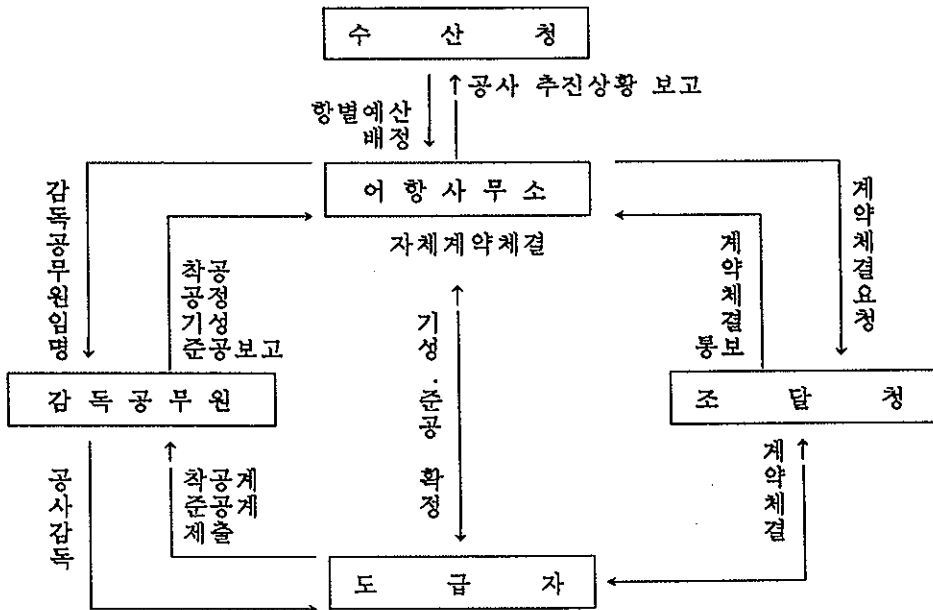
#### 4. 사업추진 계획

- 사업 주관기관 : 수산청
- '96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투자항수)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1. 3종어항	58개항	127,989	127,989	

- 사업시행 체계



#### 5. 행정사항

- 업무담당 기관 및 부서
  - 중앙 : 수산청 어항과 (집행부서 : 동.서.남해 어항사무소)



## 2. 2종 어항건설

### 1. 목 적

- 그 지방의 중심지에 소재한 어촌, 어항, 어민, 어장, 어선, 관광자원이 모자이크화된 종합 어업근거지인 2종어항을 개발
- 기상악화시 어선의 안전수용으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2. 추진방향

- 어항법 제7조에 의하여 시설계획이 수립된 항부터 년차적으로 개발추진
- 완공항 위주로 개발

### 3.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94까지	'95	'96	'97	'98	'99 -2004	합 계
사업량	132	6	15	18	30	122	323
사업비	157,810	37,500	38,500	60,000	104,000	180,000	577,810
국 고	62,021	18,750	19,250	30,000	52,000	90,000	272,021
지방비	95,789	18,750	19,250	30,000	52,000	90,000	305,789

※ 사업비 재원은 전액 농특세 (국고 50%, 지방비 50%)

### 4. 사업추진계획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96 지원계획(안) : 385억원
- 사업신청 : 시.도 → 수산청

### 5. 행정사항

- 사후관리 : 시.도
- 기타사항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 업무담당 기관 및 부서
  - 중앙 : 수산청 시설관리국 관리과
  - 시.도 : 수산과 또는 관련과
  - 시.군 : 수산과 또는 수산계

### 3. 폐유저장시설 설치

## 1. 목 적

제1.3종 어항내에 폐유수거 용기를 설치하여 동항을 출입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저장하여 폐유의 해양투기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도모

## 2. 추진방향

- 제1.3종 어항중 면세유회유를 10드림이상 공급하는 어항에 설치
- 기존 폐유수거 용기가 설치된 어항은 설치제외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 - 2004	합 계
사 업 량		-	-	14	9	-	-	23개소
사 업 비	계	-	-	26	17	-	-	43
	국 고	-	-	26	17	-	-	43
	지방비	-	-	-	-	-	-	-

나. '96 지원계획(안) : 14개소 26,040천원  
 ※ 개소당 1,860천원 30드림 기준

## 4. 사업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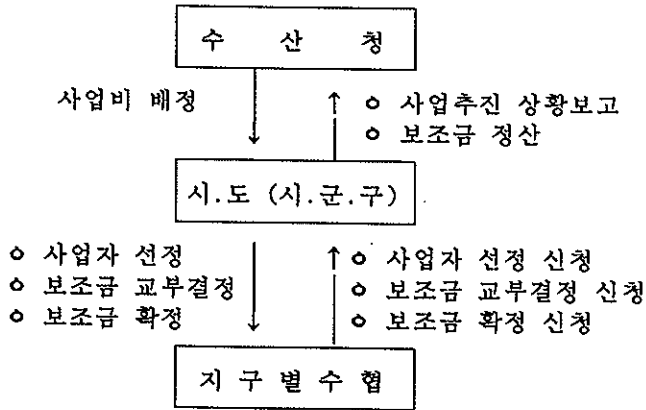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나. 사업현황

- 사업내용 : 폐유수거용기 설치
- 지원대상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지원규모 및 조건 : 개소당 30드림기준, 국고100%
  - 배정 사업량을 초과 시설 또는 기타 사유로 총 사업비가 투자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기자금으로 부담함

○ 사업시행 체제



다.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라.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제1.3종 어항에서 연간 면세유탄유를 10드럼이상 공급하는 수협으로서  
철제 폐유수거 용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항을 관리하는 수협

마. 사업시행 기준

- 폐유를 용기에 용이하게 주입하거나 배출이 가능한 구조
- 빗물 등이 용기에 주입되지 않는 구조
- 뚜껑이 용이하게 닫히거나 열리는 구조이며 이탈되지 않는 구조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자가 관리

나. 보고 및 기타사항

- 사업집행주체(시.도)는 분기별 추진상황을 수산청에 보고
- 이 사업의 추진절차는 "수산사업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수산청 시설관리국 관리과
- 시.도 : 수산과 (어정과, 생산과)
- 시.군.구 : 수산과 또는 관련과

# 수산자원 조성 (공공)

## 1. 수산자원 조성

### 1. 목 적

- 연안수역에 인공어초 시설로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대량생산, 방류할 수 있도록 대규모 도립 수산종묘 배양장 시설 지원으로 종묘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감소추세에 있는 수산자원 증강과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
- 민간배양장에서 생산한 수산종묘를 매입방류하므로써 수산자원 증강과 어민소득 증대

### 2. 추진방향

- 인공어초시설 확대
  - 총적지 307천ha를 대상으로 어촌 인근어장부터 시설, 단계적으로 깊은곳 시설
  - 연안어장은 자원조성용, 불법어업 빈번수역은 자원보호용 어초시설 등 수역과 어종의 특성에 적합한 어초 시설
- 도립 종묘배양장 시설 확충
  -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대량생산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도립배양장 시설 지원
  - 연안 각도에 1개소씩 총 8개소 시설 목표
- 민간배양장 생산종묘 매입·방류로 민간차원의 자원조성 참여 유도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계
계		171,030	60,651	75,840	90,981	98,912	535,440	1,032,854
인공어초시설	사업량(천ha)	89	17	19	27	32	180	364
	사업비	166,371	42,986	54,636	80,281	95,212	534,240	973,730
	- 국 고 - 지방비	129,834 36,537	34,389 8,597	43,709 10,927	64,225 16,056	76,170 19,042	427,392 106,848	775,723 198,007
도립 배양장	사업량(개소)	1	4(1)	2(4)	1(2)	(1)	-	8
	사업비	3,500	17,500	21,000	10,500	3,500	-	56,000
	- 국 고 - 지방비	1,750 1,750	8,750 8,750	10,500 10,500	5,250 5,250	1,750 1,750	- -	28,000 28,000
매입 방류	사업량(천미)	170,975	3,300	4,080	4,000	4,000	24,000	210,355
	사업비(국고)	1,159	165	204	200	200	1,200	3,128

\* 배양장 ( )는 전년도 계속사업임

#### 나. '96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물량	사업비			비고
		계	국 고	지방비	
계		75,840	54,413	21,427	
인공어초시설	19,000ha	54,636	43,709	10,927	전국 10개 시·도
도립 배양장	6개소	21,000	10,500	10,500	계속4, 신규2
중요매입방류	4080백만미	204	204	-	우럭, 대하 등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 : 시.도지사

나. 사업현황

### [ 인공어초시설 ]

- 시설수역 : 전국 10개 시.도, 수심 10-50m 수역
- 어초종류 : 8종(사각형, 원통형, 반구형, 잠보형, 요철형, 팔삼각형, 육각형, 육교형)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 [ 도립종묘배양장시설 ]

- 시설장소 : 전국 8개 연안 시.도중 시설을 희망하는 시.도
- 총사업비 : 7,000백만원 (사업기간 : 2개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연간생산능력 : 2,000만마리(어.패.갑각류 등)

### [ 종묘매입.방류 ]

- 방류장소 : 인공어초를 시설하여 방류종묘의 서식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수역 또는 인근수역과 종묘의 잠입이 용이한 연안수역
- 방류크기 : 어류는 3cm이상, 갑각류(새우)는 1.5cm이상
- 지원조건 : 국고 100%

라. 사업시행체계

- 수 산 청 : 사업집행지침 시달 및 물량배정
- 시.도지사 : 사업집행주체로서 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사항 추진
- 수산진흥원 : 사업추진시 업무 협조

## 5. 사업대상지 선정

- 인공어초시설 : 도, 수진, 학계, 수협,업계등으로 구성된 시.도 어초협의회에서 지역별, 어초종류별 시설물량 결정후 시설 (시설 적지조사는 수산진흥원 협조)

### - 시설적지

- . 수산생물이 서식하는 수심 50m이천수역
- . 매몰, 유실의 우려가 없고 경사가 완만한 곳
- . 오염우려가 있는 공단주변 및 주요항로가 아닌 곳
- . 자원조성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역
- . 어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연안수역

- 도립 종묘배양장 시설 : 도, 수진, 학계, 수협,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 협의회에서 시설후보지 선정 및 시설등에 필요한 사항 결정
  - 시설적지
    - 매립·간척사업, 공단조성 및 생활하수 유입등에 의한 오염이나 환경변화 우려가 없는 청정수역
    - 종묘양산 공급 및 방류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곳
    - 배양장 시설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
- 종묘 매입·방류 : 수진원장의 사전협의를 거쳐 방류어종의 서식환경에 적합하고 오염원이 없는 곳으로서 자원조성 효과가 높은 수역을 선정

## 6. 기타사항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시달하는 지침·지시에 의함

## 7.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어초 시설해역의 위치가 표기된 1/50,000 어초시설 기본도 작성 비치 (도, 시·군, 어촌지도소, 수협 등)
- 어초시설 전과정 사진촬영 및 어탐기록 보관
- 5년내 시설어장에 대한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 기타 수산시설 관리규정에 의거 관리
- 종묘방류 수역에 대하여 조업상태, 생산량 및 방류효과 조사 기록 유지
- 방류후 동 수역에 대한 대어민 홍보와 일정기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 나. 보고사항 및 기타

- 투융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요령에 의거 보고
  - 사무관리규정 제48조(정기보고의 지정), 제51조(보고기일) 및 제76조(서식승인의 표시)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64조(정기보고의 지정 및 서식승인) 및 제66조(정기보고 서식의 승인번호)
- 시·도지사는 어초시설 적지조사와 시설입회 및 시·도지사가 의뢰하여 어초 효과조사에 참여하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제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여비를 지급해야 함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수산청 자원조성과
- 시·도 : 수산과(자원조성과, 어정과)

## 2. 연어 치어방류 지원

### 1. 목적

- 동해안의 연어 자원 증강으로 어업자원 활용
- 북태평양 연어자원 어획입지 확보

### 2. 추진방향

- 연어 인공부화장(강원, 경북도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비 일부 지원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마리, 백만원)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 사업량	116	16	16	25	25	150	348
◦ 사업비 (국고)	824	70	70	100	100	850	2,014

나. '96 지원계획(안) : 2개소 70백만원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강원도, 경북도

나. 사업내용

- 연어 소상하천 정비 및 친어 채포장 설치
- 치어 부화, 사육관리
- 치어 하천 방류

### 5. 기타사항

가. 사후관리 : 강원도, 경북도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수산청 자원조성과
- 시·도 : 강원도, 경북도 수산과



### 3. 지방수산물과학관 건립

#### 1. 목적

- 각종 수산물 표본전시관과 수족관을 설치하여 교육과 학술연구에 활용
- 수산·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로 수산업 발전에 기여

#### 2. 추진방향

지방수산물과학관 건립비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4	'95	'96	'97이후	합 계
사 업 량(개소)		1	(1)	1(1)	(2)	2
사 업 비	계	1,000	4,778	14,164	39,000	58,942
	국 고	500	2,389	2,000	6,000	10,889
	지 방 비	500	2,389	12,164	33,000	48,053

##### 나. '96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 방 비	
2 개소	14,164	2,000	12,164	전시시설 공사비 및 설계비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및 사후관리 : 시·도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수산청 생산국 연근해과
- 시·도 : 수산국 수산과 (어정과)

다. 기타사항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 4. 자영수산과 학생 급식비 지원

### 1. 목적

- 수산업을 합리적으로 자영할 수 있는 어업인후계자 육성
- 어촌에 정착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수산인력 양성

### 2. 추진방향

- 수산계 고교에 개설된 자영수산과 재학생에 대하여 기숙사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
  - 자영수산과 개설학교 : 4개교 (주문진, 대천, 완도, 거제수교)
  - ※ 교육부의 "수산고등학교 육성계획"에 의하여 '87년부터 계속 지원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0~'94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과제)	2,600	395	395	395	395	2,370	6,550
사업비(국고)	620	107	123	123	123	738	1,834

#### 나. '96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강원도 (주문진수교)	충 남 (대천수교)	경 남 (거제수교)	전 남 (완도수교)	경 북 (포항수교)
학생수(명)	395	50	100	110	95	40
사업비 (국고)	123 123	16 16	31 31	34 34	29 29	13 13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5개 학교 395명
- 식비 지원기준 : 수산청 50%, 교육부 30%, 학생부담 20%
- 사업시행체계
  - 수산청 : 예산확보 및 보조금 내시
  - 시. 도 : 보조금 교부
  - 수산계고등학교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도지사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수산청 연근해과
- 도 : 해당도 수산과

다. 기타사항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 5. 어업질서확립 지원자금

### 1. 목 적

소규모 생계형 불법어업을 합법어업으로 전업하도록 지원하여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유지와 질서있는 어업으로 육성발전

### 2. 추진방향

- 10톤미만 생계형 불법어선은 합법어업으로의 전업을 유도하되 합법어구 구입비 및 시설비등 최소한의 전업자금 (최당 10백만원 이내) 용자지원
- 불법 소형기저 어선 3,000여척을 2개년계획 ('96-'97)으로 전업지원 추진
- 10톤이상 기업형 불법어선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강화 추진

### 3. 투용자 계획

#### 가. 년차별 투용자 계획

(단위 : 백만원)

	'96	'97	계
사 업 량	1,000 척	2,000	3,000 척
국고(용자)	10,000	20,000	30,000

#### 나. '96 지원계획(안)

- 대상척수 : 1,000척
- 지원액 : 10,000백만원

### 4. 사업계획추진

#### 가. 사업 집행주체 : 시·도지사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불법어업의 효율적인 전업 유도를 위해 이구구입비, 시설비등 전업에 필요한 소요자금 용자 지원

2) 지원대상

불법어구를 자진·반납하고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적당 10백만원
- 용자조건 : 연리 5%, 1년상환

4) 사업시행체계

- 전업지원 대상자 선정 (시·도지사) → 용자금대출 (수협)  
→ 사후관리 (시·도지사, 수협)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 (용자금 관리: 수협)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수산청 생산국 지도과
- 시·도: 각시·도 수산과(생산과, 어업지도과)

다. 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수산청장이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 지도선 건조사업 (공공)

### 1. 목 적

어업질서확립 추진을 위한 연근해 불법어업 단속 및 어선안전 조업 지도

### 2. 추진방향

- '97년까지 현행 수산청 어업지도선 18척을 20척으로 확보 운영
-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 및 어선안전 조업지도를 위하여 전국 연안 78개 시·군 지도선 연차적 확보 추진
- '97년 이후 기존 노후어업지도선의 연차적 대체건조 추진

### 3. 투융자계획

○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계	사 업 량	41척	7	2	6	4	36	96척
	사업비계	53,284	6,650	3,836	12,696	9,036	112,860	198,362
	국 고	46,262	5,035	2,986	9,664	7,536	97,860	169,343
	지 방 비	7,022	1,615	850	3,032	1,500	15,000	29,019
수산청 지도선	사 업 량	18척	1	1	1	1	6	28척
	사업비계	40,484	3,420	2,136	6,631	6,036	82,860	141,567
	국 고	40,484	3,420	2,136	6,631	6,036	82,860	141,567
시·도 지도선	사 업 량	23척	6	1	5	3	30	68척
	사업비계	12,800	3,230	1,700	6,065	3,000	30,000	56,795
	국 고	5,778	1,615	850	3,033	1,500	15,000	27,776
	지 방 비	7,022	1,615	850	3,032	1,500	15,000	29,019

## 4. 사업추진계획

### 1. 수산청 지도선

#### 가. '96 건조계획(안)

- 건조규모 : 500톤급 1척
- 사업비 : 2,136백만원

#### 나. 사업집행 주체 : 수산청

#### 다.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어선 안전조업 지도, 불법어업 단속 및 외국과의 어업협정 수행을 위한 어업지도선 건조

##### 2) 사업추진 절차

건조계획 수립(수산청)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설계기관) → 건조계약체결(조달청) → 착공 및 건조공사(조선소) → 준공 및 취항

#### 다. 행정사항

- 사후관리 : 수산청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 업무담당 기관 및 부서 : 수산청 생산국 지도과

### 2. 시.도 지도선

#### 가. '96 지원계획(안)

- 사업량 : 1척 (100톤)
- 사업비 : 1,700백만원 (국고 850백만원, 지방비 850백만원)

#### 나. 사업집행 주체 : 인천광역시

다. 사업현황

1) 사업내용

효율적인 어업질서확립 추진과 역할분담 차원에서 관할 해역 책임단속을 위한 시·도지도선 건조 지원

2) 사업추진 절차

사업내시 (수산청) → 어업지도선 건조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 건조 설계 (설계기관) → 건조계약 체결 (인천광역시) → 착공 및 건조공사 (조선소) → 준공 및 취항

라. 행정사항

○ 사후관리 : 인천광역시 수산과

○ 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 업무담당 기관 및 부서

- 중앙 : 수산청 생산국 지도과

- 시·도 : 인천광역시 수산과



### 3. 시·도 지도선 유류비 지원

#### 1. 목 적

연근해 불법어선의 원활한 지도단속으로 어업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함

#### 2. 추진방향

시·도 관할수역의 책임단속을 위해 시·도지도선의 연간 소요 유류비 일부 국고 지원

####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94	'95	'96	'97	'98	'99-04	합 계
○ 사업량	3 척	3	58	78	78	468	688 척
○ 사업비 (국고)	27	27	1,188	1,700	1,700	10,200	14,842

나. '96 지원계획(안)

- 대상척수 : 58 척
- 지원액 : 1,188백만원

## 4. 사업계획추진

가. 사업 집행주체 : 시.도지사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시.도 관할수역의 책임단속을 위해 시.도지도선 유류비 지원
- 현행 동.서해 특정해역관할 일부 시.도지도선(인천, 강원)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전 시.도지도선으로 확대 지원
- ('95) 3척 → ('96) 58척

2) 지원대상

- 시.도(시.군)보유 지도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

3) 사업시행 체계

- 수 산 청 : 시.도별 유류비 예산배정
- 시.도지사 : 시.도(시.군) 보유지도선에 대한 세부 유류비지원계획 수립 집행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유류비 집행결과를 수산청장에 년 2회(상.하반기) 보고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수산청 생산국 지도과
- 시.도 : 각 시.도 수산과(어업지도과, 생산과, 자원조성과)

라. 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산청장이 별도 지시하는바에 의함



## 2. 어업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



# 어선건조.대체사업 (자율)

## 1. 노후어선 대체

### 1. 목 적

연근해 노후어선을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성이 높은 어선으로 대체하도록 지원하여 안전 조업 및 어업경영 개선

### 2. 추진방향

선령 16년(강선, FRP선은 21년)이상 연근해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안전성과 성능이 우수한 합성수지 어선 또는 강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53,058톤	4,780	4,366	7,435	7,695	57,000	134,334
사업비	계	209,878	1,549	32,076	51,245	55,052	399,000	778,800
	국고	16,464	1,320	3,237	1,960	2,100	-	25,081
	융자	131,261	3,919	22,424	39,036	41,942	319,200	577,782
	자담	62,153	6,310	6,415	10,249	11,010	79,800	175,937

#### 나. '96 지원계획(안)

(단위 : 톤, 천원)

	물 량	사 업 비			
		계	보 조	용 자	자 담
계	4,365.6 톤	32,076,000	3,236,640	22,424,160	6,415,200
8톤 미만	1,731	11,424,600	2,284,920	6,854,760	2,284,920
8톤 이상	2,408	15,892,800	-	12,714,240	3,178,560
표준어선형	226.6	4,758,600	951,720	2,855,160	951,72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용자 취급기관 : 수협중앙회장 (또는 회원 조합장)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8톤미만 노후어선을 표준어선형 또는 일반형의 합성수지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준가격(표준어선형 : 톤당 2,100만원, 일반형 : 톤당 660만원)의 20% 보조, 60% 용자
- 8톤이상 노후어선을 합성수지어선 또는 강선어선으로 대체건조 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준 가격(톤 당 660만원)의 80% 용자

\* 표준어선형어선의 종류

- 동해안형 3종 (2.99톤 채낚기, 2.98톤 통 발, 1.71톤 유자망)
- 서해안형 3종 (7.93톤 유자망, 4.99톤 유자망, 1.99톤 유자망)
- 남해안형 3종 (7.93톤 연 승, 4.99톤 유자망, 2.98톤 통 발)

### 2) 지원대상

- 8톤 미만 : 연안 FRP 어선 건조자
- 8톤 이상 : 근해어선 건조자
- 표준어선형 : 수산특정 연구사업으로 개발된 9종의 연안 FRP 어선 건조자

### 3)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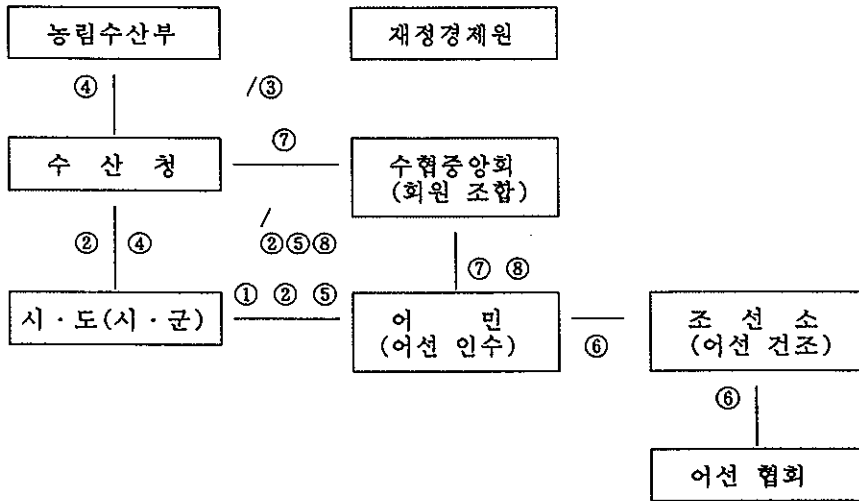
○ 사업별 지원율

- 8톤 미만 표준어선형 및 일반형 : 보조 20%, 용자 60%, 자담 20%
- 8톤 이상 : 용자 80%, 자담 20%

○ 상환조건(공통)

- 3년거치 10년상환, 년리 5%

4) 사업시행 체계



○ 수 산 청

- 사업집행지침 마련 ④
- 사업계획 종합조정 ③
-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시·도(시·군)

- 사업자 선정, 통보 ②
- 사업추진 지도 감독
  - 보조금(용자금) 교부결정 ⑤
  - 준공검사 ⑥
  - 사후관리

○ 어 민 : 사업자선정 신청 및 추진 ①

○ 수협중앙회

- 자금차입 및 배정 ⑦
- 용자금 교부 ⑦
- 기자재 공동 구매 단가체결·공급 통보 ⑧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조업 또는 위판실적이 있는 연근해 어선으로서 다음 해당자
  - 목선 선령 16년(강선, FRP선은 21년)이상 노후어선 대체자. 다만, 목선 선령 16년(강선, FRP선은 21년)미만인 어선이더라도 노후로인한 수리, 정비등의 경비가 동급의 신조어선 보다 과다 소요된다고 어선 검사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어업허가가 유예된 피해어선 복구자
  - 어업허가가 유예된 자진폐선 처리자

### 2) 신청절차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시·도(시·군)에 제출

### 3) 구비서류

- 사업자선정 신청서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통합요령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

#### 참 조

- 사업자 선정
  - 노후어선 폐선 계획서
  - 해난사고사실 증명서(피해어선)
  - 노후어선 사실확인서
- 보조금(융자금)교부 신청서
  - 보조금(융자금) 교부 신청서
  - 어선건조 설계도, 건조사양서 및 기자재 명세서
  - 자기자금예치 증명서
  - 어선건조공사 지원보증서
- 착 공 시 : 착공계
- 준 공 시
  - 준공계
  - 준공사진
  - 공사비 정산서
  - 노후어선 폐선 완료보고서
- 피대체어선 처리내역. 다만 폐선처리는 적법하게 하여야 함

## 라.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사업 신청내용(8톤미만, 8톤이상, 표준어선형)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되 동일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건조규모가 적은 어선, 피대체 어선 소유기간이 오래된자 순으로 함. 다만, 표준어선형의 경우는 동 선형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해역별 3종이 우선하여 각1척씩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
  - ① 표준어선형에 의한 연안어선 건조자(건조완료후 2년간 분기별 조업실적 및 어업경영 자료 제출과 연간 15일 이내 성능시험을 위하여 어선과 필요한 편의제공 가능자)
  - ② 선령 16년(강선, FRP선은 21년)이상의 노후어선 대체용으로서 선령이 높은 어선 대체자
  - ③ 어선의 노후 등으로 관리유지비 과다 소요 어선의 대체자, 어업허가가 유예된 자진 폐선 처리자
  - ④ 어업허가가 유예된 피해어선 복구자

### 2) 선정절차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

## 마. 사업시행

### 1) 사업비

- 사업비 등은 별도 시달하는 사업비 내시서에 의하되, 사업비 지원은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지원율에 따라 지원하되 초과되는 금액은 사업자 부담
- 사업비라 함은 어선건조에 소요되는 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및 기타(감리감독 용역비 및 수입 제비용등)로 하고, 사업자가 직접 구매(공동구매 포함)한 기관, 통신장비 등은 사업비 결정 및 정산시 어선제조 원가의 직접 재료비에서 제외

### 2) 지원대상 제외

- 어업허가, 면허 또는 신고가 없는 어선을 대상으로 신조코자 하는 자  
다만, 면허가 가능한 어선의 경우는 제외
-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자. 다만, 일시 운항중단을 신청하여 계류중인 경우 및 폐선처리 확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산자원보호에 영향이 큰 낭장망, 연안안강망, 해선망(구법)어업과 구획어업중 해선망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 해안매립, 간척등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시행청(자)으로 부터 폐업보상을 받은 어선 및 폐업보상이 예정된 어선을 대체 건조코자 하는 자
- 최근 2년이내에 불법어업에 종사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는 어선과 그 소유자 또는임차자
- 항내 정박중 관리 소홀 등으로 피해받은 어선을 복구 건조코자 하는자
- 허가정수가 초과된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쌍끌이), 대형근해트롤, 대형선망 어업의 어선을 대체 건조코자 하는자. 다만 어업의 명칭이 같은 허가받은 어선 2척을 합하여 1척으로 건조하는 경우는 제외
- 피대체 노후어선의 톤수보다 증톤하여 건조코자 하는자. 단 어업허가가 가능한 경우 피대체 어선의 규모에 따라 연안어선은 3톤미만인 경우는 3톤미만까지, 3톤이상 5톤미만은 5톤미만까지, 5톤이상 8톤미만은 8톤미만까지, 근해어선은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근해외줄낚시어업에 한하여 피대체 어선규모의 130%이내에서 건조 할 수 있음

### 3) 건조방법등

- 사업자는 안전성과 성능이 우수한 대체 어선의 건조를 위하여 수산청장이 고시한 표준어선형 설계도서 또는 한국어선협회장(한국선급협회포함)이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 승인한 설계도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계약 조선소가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건조공사를 중단하는 등 정부지원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한 조선소를 택하여 공사계약을 하여야 하며, 조선소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책임하에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정부 지원사업 건조계약 조선소의 경영부실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될 경우 건조공사를 계속할수 있는 조선소를 사업자가 조속히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장이 보증하는 어선건조공사 지원 보증서를 보조금(용자금) 교부 결정 신청시 사업계약 조선소로부터 제출받아 필요한 경우 보증내용을 이행하도록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장에게 촉구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선소에 대하여 3년이하의 기간내에 어선건조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자의 약정기일까지 착공 또는 준공하지 않았거나 공사를 지연시켜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조선소
  -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건조 사업자와 건조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등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어선을 건조한 조선소
  - 최근 2년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개조한 사실이 있는 조선소
- 표준어선형 어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표준어선형 건조조선소의 전문화를 추진하여 표준어선형에 대한 건조기술 축적으로 표준어선형을 지속개량 보완하고, 생산가격절감을 통하여 표준어선형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의 지정 조선소에서 건조하여야 하며,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은 조선소를 지정하여 시·도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표준어선형 건조 조선소의 전문화 사업에 대하여 대어민 홍보를 하여야 함

-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은 업종별 어선의 전문건조사업장으로 지정한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표준어선형 어선의 건조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표준어선형어선을 설계한 한국어선협회의 건조기술 지도를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4) 기자재(기관, 장비등)의 조달방법 등

##### ○ 기자재의 공동조달

- 수협중앙회장은 어선건조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공동 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대상자 확정시기 이전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 통보함
- 시·도지사는 사업자별 기자재 조달방법을 수협중앙회 도지회장에게 통보하며, 도지회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기자재의 개인 구입

- 사업자가 기자재를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물품 조사기관 또는 수협의 공동구매 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기자재는 양질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관은 선박용기관을 사용하여야 함 다만, 기자재중 주기관을 제외한 기존의 장비에 대하여 검사기관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사용할수 있으며 동 장비에 대한 사업내시서의 해당액에 대하여는 자기부담(사업비에서 제외)으로 함

#### 5) 자기자금 예치등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기가 부담하여야할 금액의 20%이상을 수협에 예치하고, 그 증서를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 신청시 첨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적립된 자기 부담액을 계약금,공사비,기자재 구입등에 사용토록 하여야 함
- 수협은 어선 건조용 공동구매 기자재(기관, 장비등)의 자금을 사업자가 적립한 자기자금 및 융자금에서 변제하고 정산함

#### 6) 공사의 추진사항 관리

- 시·도지사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융자금)교부결정 내용 및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등에 의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점검하게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공사가 완료된 때의 준공검사, 완성되기전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고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관 및 입회관을 임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함
-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보조금(융자금)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하여 공사를 하거나 공사를 지연, 중단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보조금(융자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 40톤이상 및 표준어선형 건조사업자는 어선법 등에서 인정하는 감리 유자격자와 어선건조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감리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내역서 및 기타 관계서류 등에 의거 당해 어선이 공사비 내역대로 건조될 수 있도록 건조공사를 감독하여야 함

#### 7) 사업비 정산

- 시·도지사는 결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공동구매 기자재금액 : 수협에서 공동구입 공급한 기자재로서 자재사업단에서 정산 통보하는 품목별, 실수요자별 정산가격으로 함
- 건조조선소 시공금액 : 건조조선소가 제출한 판인 영수증 금액으로 함.
- 사업자 공급기자재 금액 : 사업자가 제출한 판인 영수증 금액으로 함.

#### 8) 기 타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동일인이 정부지원 어선건조사업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함
- 시·도지사와 한국어선협회는 표준어선형으로 개발된 연안 어선건조를 위해 설계도서 제공, 건조에 따른 필요한 사항등을 사업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협중앙회,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등과도 긴밀히 협의함
- 사업집행주체는 8톤미만 건조물량이 사업비 내시물량에 미달되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6개 어업(기선권현망, 근해채낚기, 근해형망, 근해연승, 근해붕수망, 잠수기)은 어선건조규모를 40톤미만 범위내에서 피대체어선의 동일 규모 이내로 조정 지원하고,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정받은 어장관리선은 동규칙 "별표 8"에 의한 관리선의 규모 이내에서 조정 지원할 수 있음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 및 수산시설 관리규정에 의함

### 나. 보 고

시·도지사는 사업자 선정결과(척수, 톤수, 업종별, 사업비 내역별)를 수산청에 보고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수산청 시설관리국 어선과
- 시·도 : 수산국 (식산국), 수산과 (어업지도과, 어업진흥과, 생산과)
- 시·군 : 수산과 (산업과 수산계)

## 사업계획서

1. 현 황 (세부사업명 : ) \* 사업별 관련사항만 기재

◦ 피대체어선(장비 등) 및 피해어선 등

선명(업종), 톤급(선질)	진수년월일 (피해어선은 피해일)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또는 유예내용	최종어선검사		최근위판·또는 입·출항일 (조합, 신고소)	피대체장비 설비, 기관명
			일 자	종 류		
						품명:  기종(규격):

- 피대체어선 소유기간 (년.월.일) :

- 기타 :

2. 사업계획

◦ 어선 등 건조(설치) 계획 : \* 신규, 대체 여부 표시

업종(톤급, 선질) 품명(기종, 규격 등)	예 정 공 기		피대체어선 처리계획	신 청 내 용
	착공일	준공일		

\* 신청내용은 각 사업별 신청자격에 있는 표준어선형 건조, 노후기관대체, 제조업체 등을 표시

- 어민후계자, 국산기관사용자, 낙도.벽지 어민은 해당 여부를 기재 :
- 기자재 생산업체 지원은 생산품목, 회사설립일 등을 기재 :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 기타 (지원 사업효과 등) :

## 2. 어선기관 대체

### 1. 목 적

어선의 저효율 노후 추진기관을 신품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 지원하여 안전조업 및 해난사고 예방

### 2. 추진방향

- 육상용기관을 개조한 기관등의 저효율 노후추진기관을 연료절약형 선박용기관으로 대체 지원
- 무동력 어선의 동력화 지원

###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마력, 백만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458,196마력	30,000	36,000	74,000	87,000	180,000	865,196	
사업비	계	56,566	4,800	5,760	11,840	13,917	28,800	121,683
	국 고	2,606	-	-	-	-	-	2,606
	용 자	41,126	3,840	4,608	9,472	11,134	23,040	93,220
자 담	12,834	960	1,152	2,368	2,783	5,760	25,857	

나. '96 지원계획(안)

- 사업량 : 36,000마력
- 사업비 : 5,760백만원(용자 4,608, 자담 1,152)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용자취급기관 : 수협중앙회장 (또는 회원 조합장)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저효율 노후기관을 500마력 이하의 신품 선박용기관으로 대체 설치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준 가격(마력당 16만원)의 80% 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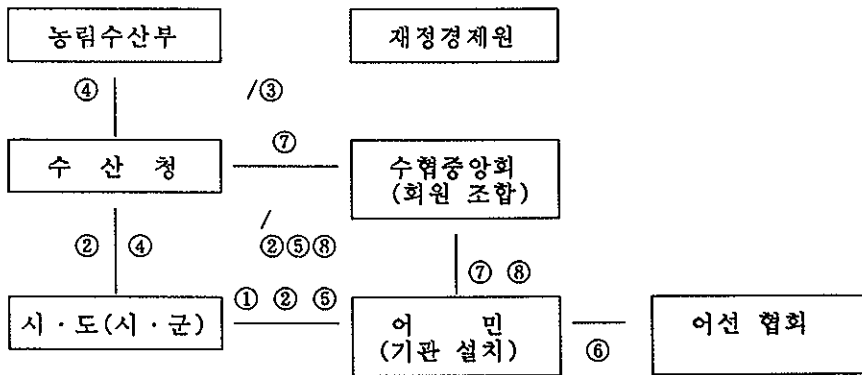
2) 지원대상

- 소구 및 옥상용 기관등을 대체코자 하는자
- 노후된 기관을 대체코자 하는자
-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을 설치코자 하는자

3) 지원규모 및 조건

- 실수요자당 : 80백만원 (500마력 x 16만원)이내
- 지원율 : 용자 80%, 자담 20%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상환, 년리 5%

4) 사업시행 체계



○ 수 산 청

- 사업집행지침 마련 ④
- 사업계획 종합조정 ③
-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시·도(시·군)

- 사업자 선정, 통보 ②
- 사업추진 지도 감독
- 용자금 교부결정 ⑤
- 준공검사 ⑥
- 사후관리

○ 어 민 : 사업자선정 신청 및 추진 ①

○ 수협중앙회

- 자금차입 및 배정 ⑦
- 용자금 교부 ⑦
- 기자재 공동 구매 단가체결·공급통보 ⑧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연근해어선으로서 500마력이하 선박용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2) 신청 절차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업사업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시·도(시·군)에 제출

3) 구비서류

○ 사업자 선정 신청서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통합요령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는 "어선건조·대체사업"중 "노후어선 대체" 의 별지 제1호서식 참조)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연근해어선중 500마력이하의 선박용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되 동일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소형어선 소유자, 저마력기관 대체자, 어민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① 소구기관 및 육상용기관을 개조한 기관등을 대체코자 하는 자
  - ② 노후된 기관을 대체코자 하는 자
  - ③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을 설치코자 하는 자

2) 선정절차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

마. 사업시행

1) 어선용기관의 조달방법

- 수협중앙회장은 어선기관 대체사업에 필요한 선박용 추진기관에 대하여 기종별 공동 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대상자 확정시기 이전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자별 기관 조달방법을 수협 도지회장에게 통보하며, 도지회장은 적극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자가 기관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물품 조사기관 또는 수협의 공동구매 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2) 기 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농림수산 사업 통합실시 요령 및 수산시설 관리규정에 의함

나. 보 고

시·도지사는 사업자 선정결과(대수, 마력, 업종별, 사업비 내역별)를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수산청 시설관리국 어선과
- 시·도 : 수산국(식산국), 수산과(어업지도과, 어업진흥과, 생산과)
- 시·군 : 수산과(산업과 수산계)

### 3.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

#### 1. 목 적

어선장비·설비의 현대화 또는 자동화로 조업능률 향상 및 어업 경영개선 도모

#### 2. 추진방향

- 노후된 재래식 어로·하역설비, 냉동·냉장설비등 대체지원
- 열악한 선원거주위생시설 개선지원
- 어로설비 자동화 지원

####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척, 백만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256 척	232	180	30	36	600	1,334	
사 업 비	계	40,633	11,591	9,000	3,000	3,621	60,000	127,845
	국 고	354	-	-	-	-	-	354
	용 자	30,823	9,273	7,200	2,400	2,897	48,000	100,593
	자 담	9,456	2,318	1,800	600	724	12,000	26,898

나. '96 지원계획(안)

- 사업량 : 180척
- 사업비 : 9,000백만원 (용자 7,200, 자담 1,80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용자취급기관 : 수협중앙회장 (또는 회원 조합장)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노후된 재래식 장비·설비대체, 선원 거주위생 환경개선, 어로설비 자동화 등을 하고 자 하는 경우, 척당 사업비 50백만원 한도 기준 80% 용자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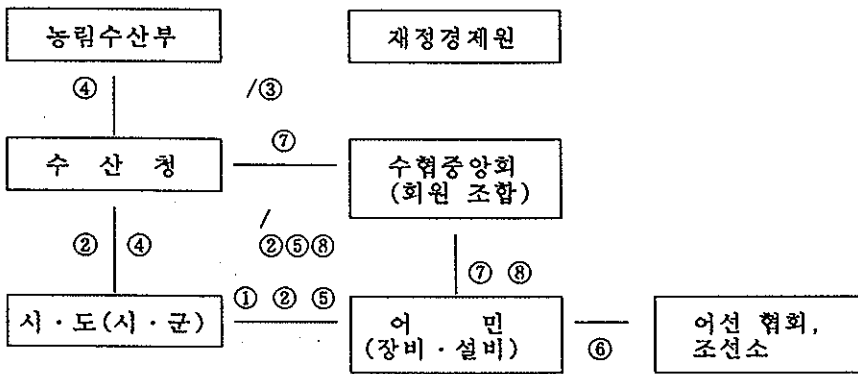
2) 지원대상

- 연근해어업허가(면허)가 있는 어선으로서 조업 또는 위판실적이 있는자
  - 노후된 어로·하역·설비, 구명·소방설비, 항해용구, 전기설비, 냉동·냉장설비 및 수산물처리 가공설비를 대체하는 경우
  - 어선원의 거주 위생설비인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침실, 휴게실 등을 개선하는 경우
  - 어로설비를 기계화, 자동화 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경우

3) 지원규모 및 조건

- 척 당 : 50백만원 이내
- 지원율 : 용자 80%, 자담 20%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상환, 년리 5%

4) 사업시행 체계



○ 수 산 청

- 사업집행지침(안) 마련 ④
- 사업계획 종합조정 ③
-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시·도(시·군)

- 사업자 선정, 통보 ②
- 사업추진지도 감독
  - 용자금 교부결정 ⑤
  - 준공검사(설비) ⑥
  - 사후관리

○ 어 민 : 사업자선정 신청 및 추진 ①

○ 수협중앙회

- 자금차입 및 배정 ⑦
- 용자금 교부 ⑦
- 기자재 공동 구매 단가체결·공급통보 ⑧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연근해 어업허가(면허)가 있는 어선으로서 조업 또는 위판실적이 있는 자

### 2) 신청 절차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시·도(시·군)에 제출

### 3) 구비서류

#### ○ 사업자 선정 신청서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통합요령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는 "어선건조.대체사업"중 "노후어선 대체" 의 별지 제1호서식 참조)

## 라.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가 있는 어선으로서 조업 또는 위판 실적이 있는자
-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어선규모가 적은자, 선령이 낮은 어선 소유자, 어민후계자, 국산장비를 사용하는자 순으로 함
  - ① 노후된 장비·설비의 대체자
  - ② 어선원 거주위생 설비 개선자
  - ③ 어로 장비·설비 등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자

### 2) 선정절차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

## 마. 사업시행

### 1) 어선 장비·설비의 조달 방법

- 수협중앙회장은 어선장비에 대하여는 품목별 공동구매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대상자 확정시기 이전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수산청장에게 통보함
- 시·도지사는 사업자별 장비 조달방법을 수협중앙회 도지회장에게 통보하며, 도지회장은 적극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자가 장비를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물품조사기관 또는 수협의 공동구매 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2) 기 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농림수산 사업 통합실시 요령 및 수산시설 관리규정에 의함

### 나. 보 고

시·도지사는 사업자 선정결과(적수, 대수, 업종별, 사업비 내역별)를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수산청 시설관리국 어선과
- 시·도 : 수산국(식산국), 수산과(어업지도과, 어업진흥과, 생산과)
- 시·군 : 수산과(산업과 수산계)

# 어선용기계 공급 (자율)

## 1. 목 적

어선용기계의 보조지원 공급으로 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선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경쟁력 제고 및 어업경영 개선 도모

## 2. 추진방향

- 어선용기계의 100만원이내 보조 지원
- 수협중앙회장을 간접보조 사업자로 선정 추진하여 어민편의 도모

## 3. 투용자 계획

가. 연차별 투용자 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3,244대	4,000	2,250	4,000	4,000	24,000	41,494
사업비	계	6,884	7,634	4,500	7,634	7,634	45,804	80,090
	국	1,378	1,909	1,125	1,909	1,909	11,454	19,684
	지방비	1,378	1,909	1,125	1,909	1,909	11,454	19,684
	용자	1,568	2,291	1,350	2,291	2,291	13,746	23,537
	자담	2,560	1,525	900	1,525	1,525	9,150	17,185

나. '96 지원계획(안)

- 사업량 : 2,250대
- 사업비 : 4,500백만원(보조 1,125, 지방비 1,125, 용자 1,350, 자담 90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용자취급기관 : 수협중앙회장 (또는 회원 조합장)
- 시·도지사는 수협도지회장 또는 지구별 수협장(이하 "수협장"이라함)을 간접보조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노후된 어선용기계를 대체하거나 자동화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2백만원 기준 50% 보조, 30% 용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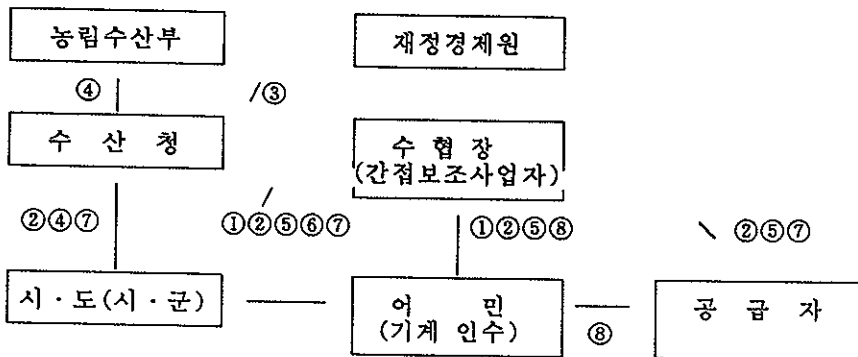
2) 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가 있는 어선의 소유자로 다음 해당자
  - 기존의 노후장비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설치코자 하는 자
  - 노후어선 대체를 위한 신조어선에 장비를 설치코자 하는 자
- 지원대상 어선용기계
  - 무전기, 로타,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 어군탐지기, 자동조상기, 기상팩시밀리, 안정기, 양망기, 양송기, 구명장비, 자동조난발신기와 기타 어선의 안전조업 및 어업능률 향상을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계

3) 지원규모 및 조건

- 실수요자당 : 2,000천원 이내
- 지원율 : 보조 25%, 지방비 25%, 용자 30%, 자담 20%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상환, 년리 5%

4) 사업시행 체계



◦ 수산청

- 사업집행지침(안) 마련 ④
- 사업계획 종합조정 ③
-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어민 : 사업자선정 신청 ①

◦ 시·도(시·군)

- 사업자 선정, 통보 ②
- 사업추진지도 감독 ②
- 보조금(용자금) 교부결정 ⑥
- 준공확인 ⑧
- 사후관리

◦ 수협중앙회

- 사업자선정 신청 ①
- 기자재 공동 구매 단가체결·공급통보 ⑤
- 자금차입 및 배정 ⑦
- 용자금 교부 ⑦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가 있는 어선의 소유자

2) 신청 절차

수협장은 어선용기계 기종별 실수요자를 모집 조사하고, 실수요자 선정신청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여야 함

3) 구비서류

◦ 실수요자 선정 신청서

- 실수요자 선정신청 및 위임장  
(신청서: 통합요령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어선건조.대체사업"중 "노후어선 대체"의 별지 제1호서식 참조)

◦ 실수요자 선정후

- 자담금 납부 증명서
- 물품 검·인수증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가 있는 어선으로서 조업 또는 위판 실적이 있는 자
-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되 동일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어선규모가 적고, 선령이 낮은 어선소유자, 어빈후계자, 국산장비 설치를 희망하는자 순으로 함
  - ① 노후된 장비의 대체자
  - ② 신규로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자
  - ③ 노후어선 대체를 위한 신조어선에 장비를 설치코자 하는자

2) 선정절차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의거 시·군 농발심의회에서 선정

마. 사업시행

1) 사업비 지원범위

- 사업비라 함은 어선용기계의 구매(입)가격(설치비를 포함하여 계약된 경우에는 설치비 포함)과 구매부대 비용을 포함하되 용자수속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외

- 지원 사업비는 실수요자당 2,000천원 한도내에서 사업비의 50%를 보조 지원(국고 25%, 지방비 25%)하고, 30%를 용자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함. 다만, 사업비가 2,000천원을 초과하는 어선용 기계에 대하여는 1,000천원을 보조지원하고 600천원을 용자지원하며, 보조금과 용자금울 제외한 금액은 실수요자 부담

## 2) 지원대상 제외

- 수산자원 보호에 영향이 큰 낭장망, 연안안강망, 해선망(구법) 어업과 구획어업중 해선망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 최근 2년이내에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어선과 그 소유자
- 최근 2년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
- 어선점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자. 다만, 일시 운항중단을 신청하여 계류중인 경우 및 폐선처리 확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해안매립, 간척등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시행청(자)으로부터 폐업보상을 받은 어선 및 폐업보상이 예정된 어선
- 어선의 규모 및 구조상 어선용기계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어선

## 3) 어선용기계 구입방법

- 수협중앙회장은 어선용기계 공동구매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대상자 확정시기 이전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수협장에게 통보하여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시 사업비 검토에 지장이 없도록 함. 다만, 실수요자가 수협의 공동구매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공동구매 규격품외의 기종을 직접구매 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 물가조사기관에서 작성 발표하는 가격을 적용함
- 수협중앙회장은 공동구매 계약체결시 어선용기계의 성능보장, 사후봉사 및 하자 보수등 품질관리 기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무전기, 레이다 등은 공장등록을 필하고, 전기통신공업법에 의한 유자격 업체 인지를 확인하여 사후 봉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수협장은 어민이 직접 구입하는 기계에 대하여 성능 보장 및 사후봉사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

## 4) 보조금(용자금)의 교부신청등

- 수협중앙회장은 간접보조 사업자선정통지서를 받은 즉시 그 결과를 실수요자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내에 보조금(용자금)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조금(용자금)교부결정서를 일괄 발급하여야 함
- 수협중앙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즉시 실수요자 명단 및 소요사업비 내역, 지원 기계 품명, 지원일시 등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일괄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용자금)교부확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 보조금(용자금) 교부결정서를 통보받은 수협장은 용자수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급자에게 물품 인도지시서를 발급함

- 용자수속을 필한 실수요자는 자담금을 납부한후 수협장으로 부터 물품검.인수증을 발급받아 공급자로부터 어선용기계를 인수함
- 수협장은 시·도지사에게 보조금(용자금)지급을 일괄 신청하며, 시·도지사는 해당 보조금(용자금)을 수협장에게 일괄 지급함
- 공급자는 어선용기계 인도 완료시 사업자로 부터 물품검.인수증을 인수하여 수협장에게 제출하고 어선용기계 대금 지급신청 및 정산을 함

#### 5) 사무의 위임

시·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수 있음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농림수산 사업 통합실시 요령 및 수산시설 관리규정에 의함

### 나. 보 고

- 수협중앙회장은 원활한 어선용기계 공급을 위하여 기종별 구매단가계약을 조속히 체결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구매계약 결과를 수산청장, 시·도지사등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자 선정결과를 선정 즉시 수협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자 선정 결과(품목별, 대수, 사업비 내역별)를 수산청장에게 보고

다. 기타사항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 라.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수산청 시설관리국 어선과, 수협중앙회 자체사업단
- 시·도 : 수산국(식산국), 수산과(어업지도과, 어업진흥과, 생산과)
- 시·군 : 수산과(산업과 수산계)

# 내수면양식용 기자재 공급 (자율)

## 1. 목 적

- 양식용기자재 공급 확대로 양식어가 부담 경감
- 단위 면적당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밀도 집약양식 추진

## 2. 추진방향

양식시설에 대한 기계화 촉진으로 수산물 생산증대 및 양식경영 개선 유도

##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	합 계
사업량		1,315	618	461	750	750	-	3,894
사업비	계	1,565,000	735,000	553,400	900,000	900,000	-	4,653,400
	국 고	391,000	183,750	138,350	225,000	225,000	-	1,163,100
	지 방 비	391,000	183,750	138,350	225,000	225,000	-	1,163,100
	용 자	470,000	220,500	166,020	270,000	270,000	-	1,396,520
	자 담	313,000	147,000	110,680	180,000	180,000	-	930,680

나. '96 지원계획(안)

(단위 : 천원)

	물 량	금 액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계	461	553,400	138,350	138,350	166,020	110,68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주체가 필요시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지원 사업비는 실수요자당 2,000천원 한도내에서 사업비의 50%를 보조 지원(국고 25%, 지방비 25%)하고, 30%를 용자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함. 다만, 사업비가 2,000천원을 초과하는 양식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1,000천원을 보조지원하고 600천원을 용자지원하며, 보조금과 용자금울 제외한 금액은 실수요자 부담

2) 지원규모 및 조건

사 업 량	용자기간(년)			지 원 율 (%)			
	연리	거치	상환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461 대	5 %	1	4	25	25	30	20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양식어업의 면허(허가·신고 포함)를 받고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
- 2) 신청절차 :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민은 신청서를 시장·군수(읍면동, 농어촌지도소 포함)에게 제출
- 3) 구비서류 : 사업집행주체가 정하는 관계서류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사업대상자

- 양식어업면허(어업허가, 신고 포함)를 받고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 (해면, 내수면)

○ 사업자선정 우선순위

- 소규모 양식장을 경영하는 자
- 농어민후계자 및 새마을양식계
- 기 지원받은 양식어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원받은 기자재의 내용 연수 경과등을 감안,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

2) 선정절차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한도내에서 대상자 선정

### 3) 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

나. 보 고 : 정부 투융자사업 보고요령에 의거 보고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수산청 생산국 자원조성과
- 도 : 수산국(식산국) 수산과(어업진흥과)
- 군 : 수산과(산업과 수산계)

# 해면 양식용 기자재 공급 (자율)

## 1. 목 적

- 양식용기자재 공급 확대로 양식어가 부담 경감
- 단위 면적당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밀도 집약양식 추진

## 2. 추진방향

양식시설에 대한 기계화 촉진으로 수산물 생산증대 및 양식경영 개선 유도

##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	합 계
사업량		-	679	373	750	750	-	2,552
사업비	계		830,000	447,600	900,000	900,000	-	3,077,600
	국 고		207,500	111,900	225,000	225,000	-	769,400
	지방비		207,500	111,900	225,000	225,000	-	769,400
	용 자		249,000	134,280	270,000	270,000	-	923,280
	자 담		166,000	89,520	180,000	180,000	-	615,520

나. '96 지원계획(안)

(단위 : 천원)

	물 량	금 액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해 면	373	447,600	111,900	111,900	134,280	89,52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주체가 필요시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양식 어가별 사업지원 한도액은 총 2,000천원으로 함

2) 지원규모 및 조건

사 업 량	용자기간(년)			지 원 율 (%)			
	연리	거치	상환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373 대	5 %	1	4	25	25	30	20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양식어업의 면허(허가, 신고 포함)를 받고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
- 2) 신청절차 : 지원받고자 하는 어민은 신청서를 시장,군수(유면동, 어촌지도소 포함)에게 제출
- 3) 구비서류 : 사업집행주체가 정하는 관계서류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사업대상자

- 해면양식어업면허(어업허가, 신고 포함)를 받고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

○ 사업자선정 우선순위

- 소규모 양식장을 경영하는 자
- 어민후계자 및 새마을양식계
- 기 지원받은 양식어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원받은 기자제의 내용  
년수 경과등을 감안,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

2) 선정절차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한도내에서 대상자 선정



### 3) 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

나. 보 고 : 정부 투융자사업 보고요령에 의거 보고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수산청 생산국 증식과
- 도 : 수산국(식산국) 수산과(어업진흥과)
- 군 : 수산과(산업과 수산계)

## 어선용기자재 생산업체 지원 (공공)

### 1. 목 적

어선용기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으로 어선용품의 성능향상 및 원활한 생산공급 도모

### 2. 추진방향

어선용 기자재 생산업체의 단기운영 자금 용자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개사, 백만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33개사	7	5	5	6	30	85
사업비	계	8,187	1,500	1,500	1,500	1,500	9,000	23,187
	용자	6,399	1,200	1,200	1,200	1,200	7,200	18,399
	자담	1,788	300	300	300	300	1,800	4,788

#### 나. '96 지원계획(안)

- 사업량 : 5개사
- 사업비 : 1,500백만원 (용자 1,200, 자담 300)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장

- 용자취급기관 : 수협중앙회장 (또는 회원 조합장)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어선용기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을 업체당 300백만원 한도기준 80% 용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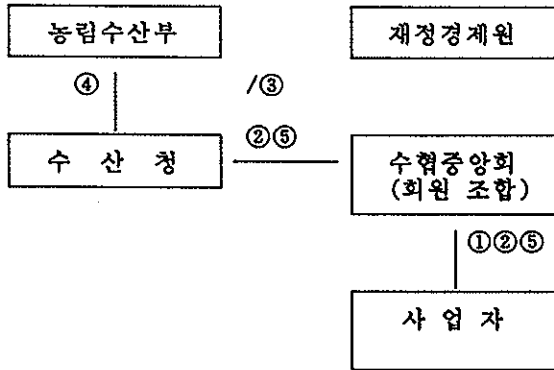
2) 지원대상

어선건조 업체 또는 어선용기자재를 제조하는 업체 등

3) 지원규모 및 조건

- 업체당 : 300백만원 이내
- 지원율 : 용자 80%, 자담 20%
- 상환조건 : 1년상환, 년리 8%

4) 사업시행 체계



◦ 수 산 청

- 사업집행지침(안) 마련 ④
- 사업계획 종합조정 ③
-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 업 자 : 사업자선정 신청 및 추진

◦ 수협중앙회

- 사업자 선정, 통보 ②
- 사업 추진 지도 감독
  - 자금차입 및 배정 ⑤
  - 사후관리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오징어 자동조상기, 집어등, 안정기, 어로용유압기기(원치, 양망기, 양승기등)등을 제조하거나 제조하고자 하는 업체
- 어선용발전기, 냉동설비, 어획물처리 설비등을 제조하거나 제조하고자 하는 업체
- 항해, 구멍, 소방설비등을 제조하거나 제조하고자 하는 업체
- 어선의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합성수지(FRP) 소형어선(40톤급이하)을 건조하거나 건조하고자 하는 업체

### 2) 신청 절차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회원조합)에 신청

### 3) 구비서류

- 사업자 선정 신청서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서는 통합요령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는 "어선건조.대체사업"중 "노후어선 대체"의 별지 제1호서식 참조)

## 라.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어선용품 제조업자 및 어선건조 사업자
  - 다음 각호 업체의 순으로 하고
    - ① 어선용기자재를 제조, 생산하고자 신규로 설립한 업체
    - ② 기존의 생산업체로서 운영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
  - 동일 순위인 경우 아래 업체의 순위로 한다.
    - ① 오징어자동조상기, 집어등, 안정기, 어로용유압기기(원치, 양망기, 양승기등)등을 제조하거나 제조하고자 하는 업체
    - ② 어선용 발전기, 냉동설비, 어획물 처리설비 등을 제조하거나 제조하고자 하는 업체
    - ③ 항해, 구멍, 소방설비 등을 제조하거나 제조하고자 하는 업체
    - ④ 어선의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합성수지(FRP) 소형어선(40톤급이하)을 건조하거나 건조하고자 하는 업체

### 2) 선정절차

수협중앙회장이 선정

마. 사업시행

- 수협중앙회장은 사업자 모집을 하여 사업물량 신청을 수산청장에게 함
- 수산청장은 사업물량을 확보하여 수협중앙회장에게 시달함
- 수협중앙회장은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자선정후 수산청장에게 보고함
- 수협중앙회장은 어선용기자재 생산업체등에 사전에 널리 홍보하여 동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추진함
- 기타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수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수협중앙회장이 사후관리 책임을 짐

나. 보 고

수협중앙회장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즉시 수산청장에게 보고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수산청 시설관리국 어선과, 수협중앙회 여신관리부
- 시·도 : 수협중앙회 도지회
- 시·군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 수산물 개발 (공공)

## 1. 수산물 개발

### 1. 목 적

경쟁력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물 개발 및 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2. 추진방향

- 경쟁력있는 실용 기술개발 및 유전육종 등 첨단연구 강화
- 어업(어촌) 현장에서 해결을 바라는 당면 애로기술 개발
- 새로운 수산물 개발의 신속한 보급

### 3.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4	'95	'96	'97	'98	'99- 2004	합 계
사업량 (과제)	256	113	115	118	120	720	1,442
사업비 (국고)	47,962	27,594	30,917	36,365	40,563	324,601	508,002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국립수산물진흥원

나. 사업(업무) 내용

- 수산물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 어촌기술 개발.보급
- 수산물 생산.방류
- 시험연구 기반시설 조성 (종묘배양장 시설보강, 시험조사선 건조 등)
- 기타 시험연구 행정 지원

### 5. 업무담당기관

국립수산물진흥원, 지역별 산하 수산물연구소, 어촌지도소, 수산물종묘배양장

## 2. 수산특정 연구개발

### 1. 목적

세계화에 대응한 수산기술 개발.보급으로 어업인 소득향상 도모 및 국제경쟁력 제고

### 2. 추진방향

- 수산기술개발 연구과제 선정 연구비 국고 지원
  - 지원대상 : 연구기관, 학계 등
- 연구개발 기술 영어현장 보급 활용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0~'94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과제)	29	13	13	20	20	120	215
사업비(국고)	2,310	800	854	2,000	2,000	12,000	19,964

#### 나. '96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과제)	사 업 비 (국고)	비 고
계	13	854	
계 속 과 제	8	539	
신 규 과 제	5	315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수산청

나. 사업내용

- '96 사업과제 확정 : 13개과제 854백만원
  - 과제당 연구비 지원액 : 20 ~ 100백만원

○ '97 사업추진 계획 (일정)

- 사업계획 수립 ('95. 11)
- 사업과제 접수 ('95. 12)
- 사업과제 심의 ('96. 2)
- 사업과제 선정 ('96. 3)
- 예산요구 ('9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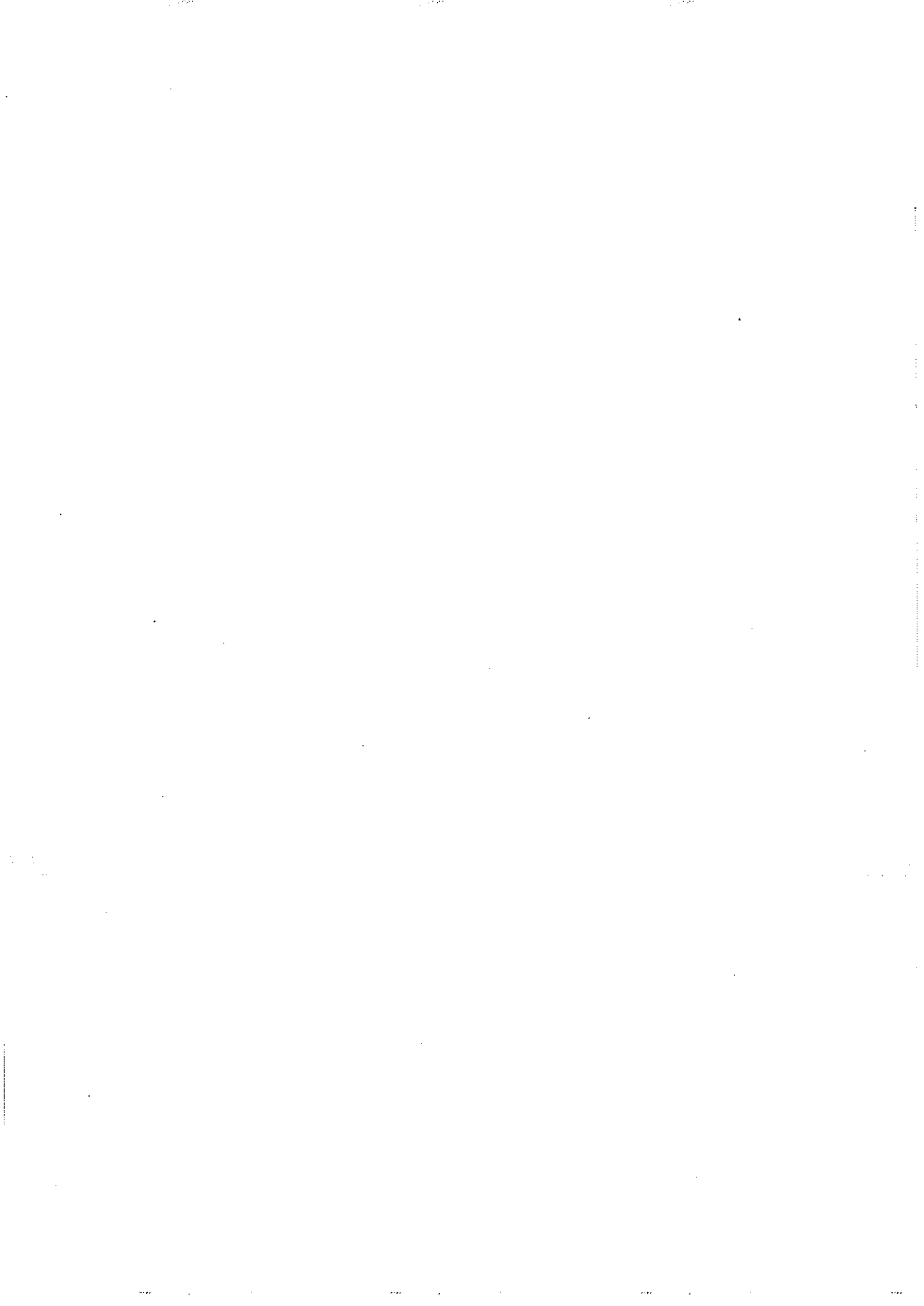
## 5. 행정사항

- 업무담당 및 사후관리 : 수산청 생산국 연근해과
- 기타사항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 3. 수산물생산 및 유통·가공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자율)

### 1. 목 적

- 산지의 어촌계, 수협등 생산자단체가 전래적인 지역 특산식품을 보전, 개발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 가공시설확충, 시설의 자동화, 현대화로 인력, 생산비절감, 유통단계축소, 품질상품성 향상으로 수산물 및 어민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 도모

### 2. 추진방향

- 새로운 개발제품등 성장잠재력이 큰 품목 지원
- 내수 및 수출 유망품목 중심 지원
- 생산지 가공품은 소비자 대형 백화점과 연계 공급체계 구축

### 3. 투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 사업량	73	6	6	6	6	36	133
○ 사업비	58,040	4,620	4,620	4,620	4,620	27,720	104,240
- 국 고	29,020	2,310	2,310	2,310	2,310	13,860	52,120
- 용 자	17,412	1,386	1,386	1,386	1,386	8,316	31,272
- 자 담	11,608	924	924	924	924	5,544	20,848

#### 나. '96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지 원 액 및 지 원 기 준			
		계 (100%)	국고보조 ( 50% )	용 자 ( 30 % )	자 담 ( 20 %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6개소	4,620	2,310	1,386	924
(개소당 지원한도액)	-	770	385	231	154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어촌의 전래적인 전통식품을 품질향상시켜 관광식품으로 상품화
- 전래적인 식품 고유의 풍미, 색깔 등 지역특성이 있는 향토식품으로 기존의 품질을 보전 개발

2) 지원대상

국내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어촌지역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인 어촌계, 수협 또는 어민후계자(5인 이상 법인체)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개소당 770백만원
- 지원조건
  - 지원율 : 국고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금 리 : 년 5%
  - 상환기간 : 10년 (3년거치, 7년상환)

4) 사업시행 체계

- 사업신청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수산청장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시설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지상권)을 확보한 자. 다만, 사업착수전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부지이어야 함.
- 자담 및 경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촌계, 수협 또는 어민후계자 (5인 이상 법인체)

2) 신청절차

- 사업자 → 시·군(시·도) → 수산청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통합요령 제1호서식)
- 부지확보 증명서 또는 사용허가서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사업자 우선순위는 산지조합, 어촌계, 어민후계자 협업 순으로 함  
 다만, 동일순위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부지확보 및 업무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선정함

2) 선정절차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에 의거 사업 신청

마. 사업시행

- 1)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다만, 집행주체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음
- 2) 사업기간 : '96. 1. 1 ~ '96. 12. 31
- 3) 사업추진일정

구 분	'95		'96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침시달 및 사업자선정	←————→														
○사업자선정			←————→												
○보조(용자)금 교부결정				←————→											
○착공 및 준공					←————→										
○보조(용자)금 교부확정 및 정산														←————→	

- 4)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계획을 승인  
 (제출일로 부터 20일이내)

## 5.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받아 시설한 시설물은 수산청장의 승인없이 처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산청장에게 보고함
  -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
  - 품목변경 : 시.도지사 승인
  - 품목추가 또는 일부변경 : 신고(시장, 군수)
  - 대표자 변경등 기타 경미한 상황 : 시장.군수 승인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에 의거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매월 1회이상 현지 확인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정부지원 사업자는 년도별 수입 및 지출상황(보조금은 별도계리), 결산상황(자산, 자본, 부채, 손익상황등), 제조원가, 매출현황, 임금지급상황 등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상시 비치하여야 함  
다만,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일된 서식을 정하여 비치토록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보조금과 용자금(원리금 상환기간 만료이전)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당초 사업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토록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수산청장에게 보고함
- 시장.군수는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비 조달계획, 원료조달계획, 생산 및 판매계획 소득효과 등을 제출받아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교부조건, 수산시설관리규정,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계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나.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다. 행정사항

○ 사업 추진사항 보고

구 분	보 고 기 한	최초 보고자	최종 수보자	비 고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실적	매월 익월 5일	시장, 군수	수 산 청 장	
생산 및 판매 실적	매반기 익월 10 "	"	"	
보조금정산 실적	'97. 1. 30 "	도지사(시장, 군수)	"	

- 사업 현황 및 관리카드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 상황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정부지원사업 홍보를 위하여 준공전 안내판 및 준공후 부착물을 설치토록 하여야 함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수산청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 시. 도 : 수산과, 어정과, 어업진흥과
  - 시. 군 : 수산과(산업과)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자율)

## 1. 목 적

- 수입 개방화에 대비, 수산물 가공시설 확충, 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국제경쟁력 제고
- 수산물의 처리·저장·가공으로 수산물의 식량화와 출하 및 수급조절에 의한 어가 지지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

## 2. 추진방향

- 수산물 처리·저장·가공시설의 현대화, 자동화 유도
- 노후시설에 대한 처리·저장·가공능력 향상
- 기술개발로 상품성, 국제경쟁력이 있는 신제품생산 및 수출유망 품목 중심지원
- 원료공급 및 판매가 용이한 지역 시설 유도

## 3. 투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계
사 업 량		69	15	15	17	17	102	235
사 업 비	계	66,650	16,750	20,500	23,500	23,500	141,000	291,900
	용자 자담	53,320 13,330	13,400 3,350	16,400 4,100	18,800 4,700	18,800 4,700	112,800 28,200	233,520 58,380

### 나. '96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지 원 액 및 지 원 기 준		
		계(100%)	용자(80%)	자담(20%)
합 계	15개소	20,500	16,400	4,100
○ 냉동·냉장시설 신설	12개소	18,000	14,400	3,600
○ 냉동·냉장시설 개보수	2 "	500	400	100
○ 수산물특수가공시설	1 "	2,000	1,600	40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냉동·냉장시설 신설 및 개보수
- 수산물 특수가공시설

2) 지원대상

- 어촌계, 수협, 어민, 일반업체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냉동·냉장 신설 : 개소당 1,200백만원
- 냉동·냉장 개보수 : 개소당 200 "
- 특수가공시설 : 개소당 1,600 "

○ 지원조건

- 지원율 : 융자 80%, 자담 20%
- 금리 : 생산자단체(어촌계, 수협) 및 어민 년5%, 일반인 년8%
- 상환기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

4) 사업시행 체계

사업자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수산청장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냉동·냉장시설 신설 및 특수가공시설 신설

- 시설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지상권)을 확보한 자.  
다만, 사업착수전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부지이어야 함.

- 자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냉동·냉장시설 개보수

- 수산업법 제49조에 의한 허가를 받고, 시설년도 3년이 경과된 업체

2) 신청절차

○ 사업자 → 시·군(시·도) → 수산청

### 3) 구비서류

- 농림수산물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통합요령 제1호서식)
- 부지확보 증명서 또는 사용허가서

### 라.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권자 : 시장·군수

### 2) 선정기준

#### 가) 냉동·냉장시설 신설

- 규모 : 규모는 부지 확보자금 이외의 사업비 범위내에서 정하되 수산물 얼음 제조시설이나 수산물 처리장시설등을 동시에 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 규모의 냉동·냉장설비를 갖추어야 함  
(냉동 5T/D, 냉장 500M/T)
- 대상 : 생산자단체(어촌계, 수협), 어민 및 일반인
- 자격
  - 시설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지상권)을 확보한 자  
다만, 사업착수전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부지이어야 함.
  - 자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우선순위
  - ① 농수산물사업 통합실시요령 제20조에 의거 사업희망자를 이미 선정하여 시·도별 우선순위로 확정된 자
  - ② 국내산 원료공급이 용이한 지역에 시설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자 또는 3년이상 수산물 냉동품을 자가수집, 생산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는 자
  - ③ 기술개발로 상품성, 국제경쟁력이 있는 신제품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④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중인 사업자가 자담으로 사업공정 50%이전에 정부지원을 희망할 때

#### 나) 냉동·냉장시설 개보수

- 대상 : 수산업법에 의한 냉동·냉장업의 허가가 있는 자(단체포함)
- 자격 : 수산업법 제49조에 의한 허가를 받고, 시설년도 3년이 경과된 업체
- 우선순위
  - ① EU 수산물 가공공장 등록 업체
  - ② 최근 냉동수산물 취급실적이 많은 업체

다) 특수가공시설 신설

- 대상 : 생산자단체(어촌계, 수협), 어민 및 일반인
- 자격
  - 시설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지상권)을 확보한 자  
다만, 사업착수전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부지이어야 함
  - 자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품목
  - 국내에서 주로 생산된 수산물을 이용하여 건조, 냉동, 가열, 발효, 숙성, 분쇄등의 방법으로 구이, 무침, 조림, 튀김, 탕, 농축액, 분말등 즉석 식료 또는 그 원료 공정까지 제조, 가공하는 품목으로서
    - 원료확보 용이 및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
    - 식품위생법등 각종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용이한 품목
- 우선순위
  - ① 수산물의 가공화를 위한 개발 출품경연에 참가한 실적이나 개발품에 대한 특허를 받았거나 출원한 자
  - ② 기술개발로 상품성, 국제경쟁력이 있는 신제품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③ 수입개방화에 따른 국내 생산어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가공제품 생산자

3) 신청절차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에 의거 사업 신청

4) 기타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마. 사업시행

- 1)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 2) 사업기간 : '96. 1. 1 - '96. 12. 31
- 3) 사업추진일정

사업명	'95		'96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냉동·냉장 시설 신설	지침시달 및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자 추천 및 선정	설계서 작성 및 심사	사업착공, 준공 및 정산											
○ 냉동·냉장 시설 개보수			←	←	←											
○ 특수가공 시설 신설			←	←	←											

## 5. 용자요령

- 가. 자금용도 : 냉동·냉장시설 신설 및 개보수, 특수가공시설 신설
- 나. 용자대상자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자
- 다. 채권보전 : 용자 취급기관의 여신관계 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함
- 라. 용자취급기관 : 수협중앙회
- 마. 기타사항
  - 사업비의 초과금액은 사업자의 자담으로 함
  - 냉동·냉장시설 신설의 경우 기계설계서에 대하여는 대한냉동협회의 안전성 검토서를 제출받아 용자금을 결정하여야 함

## 6.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2) 사후관리 내용
  - 시장·군수(수협중앙회장)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용자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군수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이탈, 타 용도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금회수, 타 농정사업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용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용자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용자기관은 즉시 회수하여야 함

### 나. 보고사항 등

- 시·도지사는 용자사업에 대하여 수산사업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수산청고시 제89-20호, '89.6.20)에 의거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수산청 유통가공과, 시·도(시·군) 수산과

# 수산물 종합가공단지 조성 (공공)

## 1. 목적

- 수산물 종합가공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수산가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산지 수산물 물류센터화로 소비자와 직거래 구축 및 원양어획물 수출 기지화
-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가격 안정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 2. 추진방향

- 수산제품의 가공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 수산물의 양육·처리가공·유통의 계열화

## 3. 연차별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5	'96	'97	'98	'99	2000	합 계
○사업량	10	3	4	2	3	2	24
○사업비	28,571	31,428	38,351	22,200	20,350	16,700	157,600
-용 자	20,000	22,000	26,845	15,540	14,245	11,690	110,320
-자 담	8,571	9,428	11,506	6,660	6,105	5,010	47,280

### 나. '96 지원계획(안)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량	지 원 액 및 지 원 기 준			
		계	국고보조	용 자	자 담
공동이용시설 신설 및 냉동·냉장시설 신설	11 (8)	31,428	-	22,000	9,428

※ ( )은 전년도 계속사업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장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공동이용시설 신설 및 냉동·냉장시설 신설

2) 지원대상

- 공동이용시설은 부산감천항 원양어업 전용부두 조성 배후매립지에 수산물 종합가공단지화에 이용되는 전기·통신, 공해방지, 하역시설 등과 단지내 시설의 공동관리를 위한 업무·복지시설을 포함함
- 배후지역내의 시설물은 반드시 수산물 처리저장·가공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에 국한함
- 부산 감천항내 부지사용권이 있는 자.

3) 지원규모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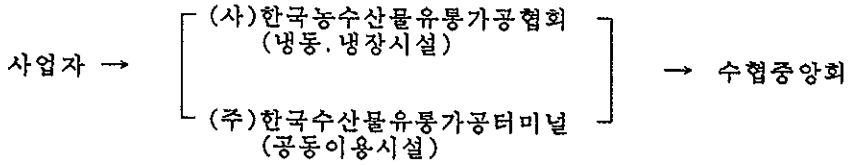
◦ 지원규모

시 설 명	개소	소요자금 (백만원)		
		계	용 자	자 담
계	11	31,428	22,000	9,428
◦ 공동이용시설 신설	8	7,829	5,481	2,348
- 업무 및 복지시설 신설	3	2,542	1,780	762
- 전기·통신시설 신설	2	3,800	2,660	1,140
- 공해방지시설 신설	2	500	350	150
- 하역시설 신설	1	987	691	296
◦ 냉동·냉장시설 신설	3	23,599	16,519	7,080
- 10천톤	1	10,131	7,091	3,040
- 15천톤	1	5,569	3,898	1,671
- 20천톤	1	7,899	5,530	2,369

◦ 지원조건

- 지원율 : 용자 70%, 자담 30%
- 금 리 : 년 5%
- 용자기간 : 5년거치, 10년상환

4) 사업시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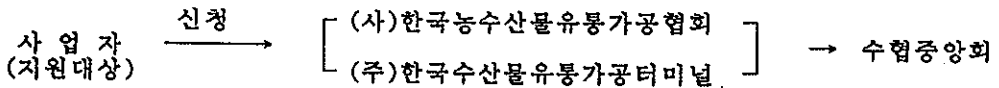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부산 감천항 시설설치 부지 소유 및 사용권이 있는 자

2)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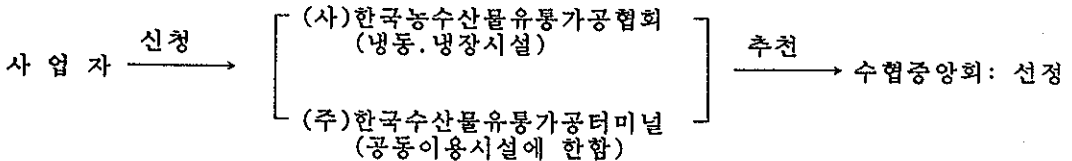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통합요령 제1호서식)
- 부지소유증명서 또는 사용허가서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절차



- 2) 지원대상자의 추천은 경영 및 용자금 상환능력 등이 있는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마. 사업시행

1) 사업집행주체 : 수협중앙회장

2) 사업집행기간 : '96. 1. 1 ~ '96. 12. 31



3) 사업추진일정

'95	'96										
12	1 ~ 4			5	6	7	8	9	10	11	12
지침시달	사업자신청 및 선정 설계서 작성 및 심사			사업 착공, 준공 및 정산							
←→	←→			←→							

바.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책임자 : 수협중앙회장 및 공동이용관리 주체

2) 사후관리 절차

수산시설 관리규정 및 여신관계 제규정에 의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 준공후에는 수산시설관리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의한 시설관리부담 비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함

3) 사업추진 보고

- 수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종료 다음달 10일까지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협중앙회 및 공동이용관리주체는 사업추진 상황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사업 집행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여야 함

4)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수산청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수협중앙회

# 수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공공)

## 1. 수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 1. 목적

- 우량제품 생산확대 및 소비계층 충족 기호식품 개발 촉진
- 다확성 어종의 가공촉진으로 어민소득 증대 및 소비자 보호
- EU 수준의 위생시설 및 어획물 처리 가공조건 이행으로 수출 지속

### 2. 추진방향

- 우수 수산제품 생산확대
- 국내수산물 이용을 제고 및 수출 촉진

### 3. 투융자계획

-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96	92	92	92	92	552	1,016
○사업비	100,018	13,975	15,225	16,770	16,770	100,620	262,128
-국 고	-	-	-	-	-	-	-
-지방비	-	-	-	-	-	-	-
-용 자	80,014	11,180	12,180	13,416	13,416	80,496	209,702
-자 담	20,004	2,795	3,045	3,354	3,354	20,124	52,426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냉동·냉장, 통조림, 어육연제품, 해조·조미가공, 염신평제조업 등의 운영자금 지원

2) 지원대상

냉동·냉장, 통조림, 어육연제품, 해조·조미가공, 염신평 제조업체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자금성질 : 융자금

- 융자금 총계 : 12,180백만원

○ 지원조건

- 지원율 : 융자 80%, 자담 20%

- 금 리 : 년 8%

- 융자기간 : 1년

- 융자한도 : 3억원이내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국내 원료어류 이용 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로 사업자 선정기준에 부합된 자

2) 신청절차

○ 신청자(가공업자) → 수협시·도지회 → 수협중앙회  
(업종단체 포함)

3) 구비서류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통합요령 제1호서식)

라. 대상자 선정

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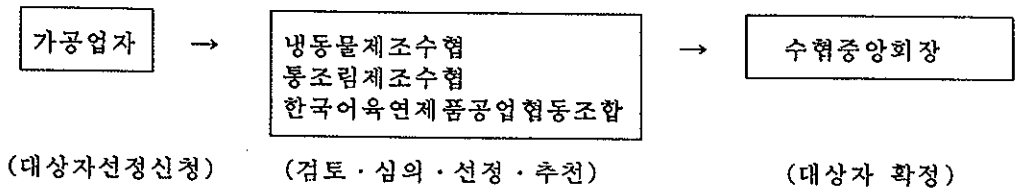
- ①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 ② EU 등록업체
- ③ 생산자와 가공자와의 연계가 있는 업체
- ④ 미FDA 영양표시제 및 HACCP제도 등 위생규제에 적극 대처하는 업체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⑤ 수산가공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업체

2) 선정기준 제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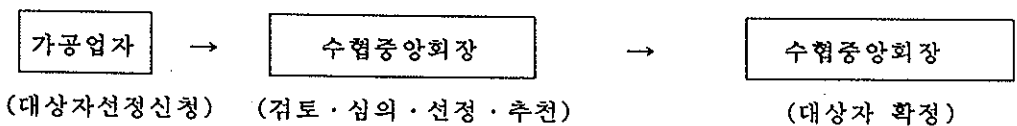
- 수산물 완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

3) 사업자 선정절차

- 냉동·냉장, 통조림 및 어육연제품 제조업체(제조수협 비회원사 포함)



- 해조·조미 및 기타가공업체



마. 사업시행

- 사업집행주체 : 수협중앙회장
- 가공업별 지원배분은 수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 5. 행정사항

-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책임자 : 수협중앙회장
  
- 사후관리
  - 여신관계 제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 중도포기자 발생시는 추가희망업체를 조사하여 티업체에 전배 조치
  
- 보고사항
  - 대상자선정 및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전배 승인
  - 지원업체의 제품별, 품목별 생산량을 년말을 기준하여 보고
  
- 기타 세부추진요령은 수협중앙회장이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음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수산청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수협중앙회

2. 어망 생산운영 및 시설자금

1. 사업 목적

수산물 주요 생산 어구인 어망류의 우량제품 생산을 지원하여 원활한 수급을 도모 하므로써 수산물 생산 증대 도모

2. 추진 방향

- 어망류 생산 제조업체에 운영자금 지원으로 생산업체의 경영 활성화
- 어망 및 로프 생산을 위한 신제품 기계류 (편망기, 제강기 등) 설치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비	17,805	6,624	7,875	9,375	9,375	57,250	107,304
- 융 자	14,224	5,300	6,300	7,500	7,500	45,000	85,824
- 자 담	3,581	1,324	1,575	1,875	1,875	11,250	21,480

나.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 어망생산 운영자금	◦ 물량(개소)	43	12	12	12	12	72	163
	◦ 사 업 비	17,805	5,337	6,995	7,500	7,500	45,000	90,137
	- 융 자	14,224	4,270	5,596	6,000	6,000	36,000	72,090
	- 자 담	3,581	1,067	1,399	1,500	1,500	9,000	18,047
◦ 어망생산 현대화	◦ 물량(대)	-	24	24	60	60	360	528
	◦ 사 업 비	-	1,287	880	1,875	1,875	11,250	17,167
	- 융 자	-	1,030	704	1,500	1,500	9,000	13,734
	- 자 담	-	257	176	375	375	2,250	3,433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 : 수협중앙회

나. 지원 대상업체 : 어망류 생산업체

다. '96 지원규모(안) 및 지원 조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금리	용자기간			용자한도 (업체당)	용자비율
		계	거치	상환		
○ 어망생산운영자금	연 8%	1	-	1	500 이내	총사업비의 80%이내
○ 어망생산시설 현대화	연 5-8%	10	3	7	200 이내	"

#### 5. 사업집행절차

- 사업자는 어망공업협회이사장의 사업자(용자) 추천을 받아 수협중앙회장에게 신청하고 수협중앙회장은 사업계획 및 사업 대상자를 종합 검토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연간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함

#### 6. 사후 관리

- 대한어망공업협회이사장은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어망류 생산 실적 및 시설 개보수 현황을 매분기별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수협중앙회장은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출자금의 운용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

#### 7. 행정사항

- 보고 : 사업자 선정 내역 및 자금 집행실적
-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지시에 의함
- 업무담당기관 : 수산청 수산정책국 어정과, 수협중앙회, 대한어망공업협회

# 영어자금 지원 (공공)

## 1. 목 적

연근해(내수면 포함) 및 원양어업의 어업 경영비를 저리로 지원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여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

## 2. 지원방향

- 영세어업인 우대 지원 (영어자금 소요액이 적은 어가에 지원을 우대)
- 영어자금의 적기 공급 및 생산자금화 유도
- 어업인 편의 위주 대출제도 확립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대출 확행)

## 3. 신청자격

수산업법 및 내수면개발촉진법상 면허, 허가를 득하였거나 신고를 필하고 직접 어업을 경영하는 자

## 4. 지원내용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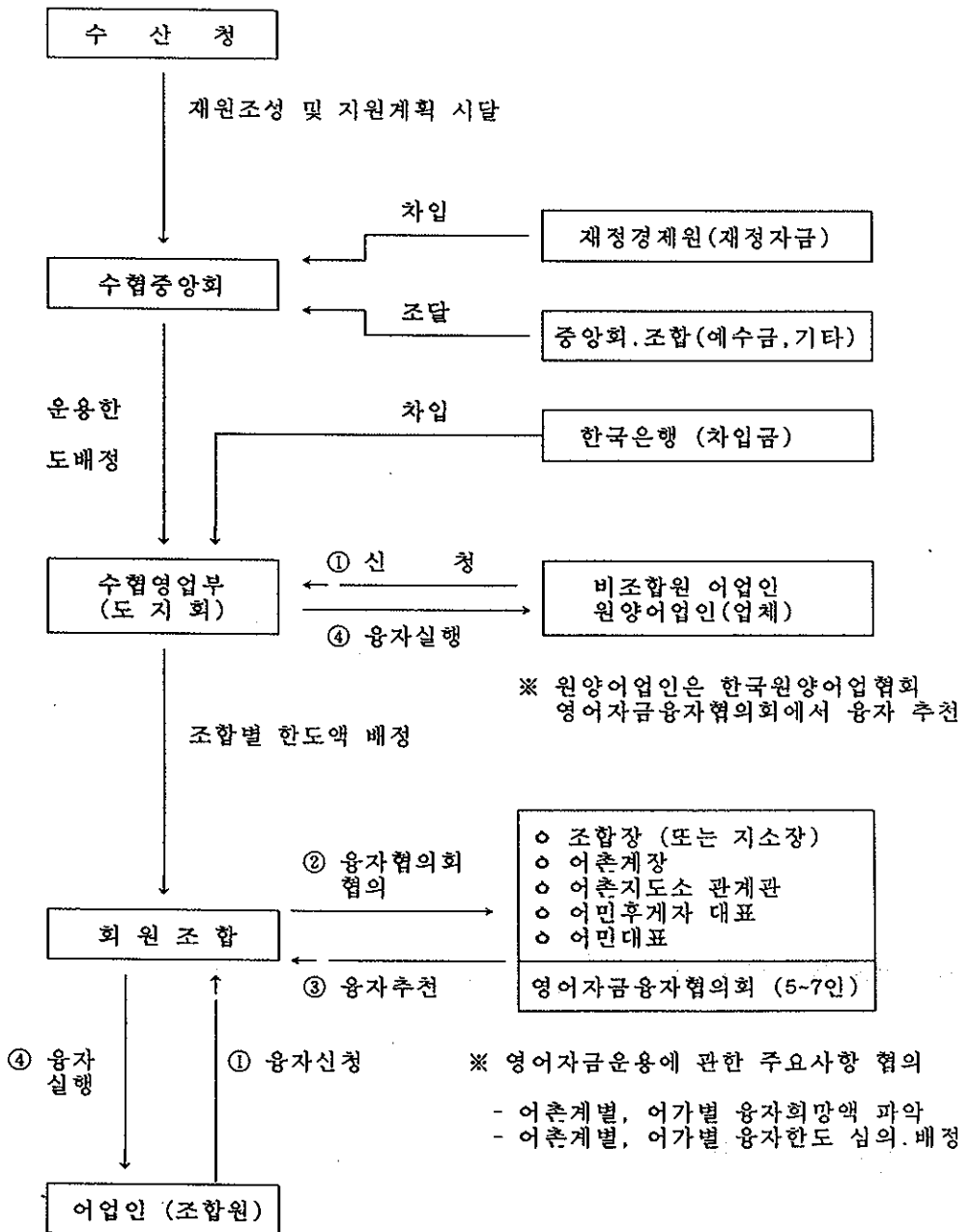
가. 사업시행 주체 : 수산청 (수협중앙회)

나. 지원 조건

- 금리 : 연리 5% (원양어업 6%)
- 대출기간 : 1년 이내 (생산소요기간이 2년 이상인 종묘생산 또는 어패류양식은 2년 이내)



다. 사업추진 체계도



## 5. 사업계획 수립

### 가. 사업계획 수립

- 기본계획 : 수산청
- 세부계획 : 수협중앙회
- '96지원계획(안) : 별도 시달

### 나. 사업계획수립시 고려할 주요사항

- 도지회별, 조합별 영어자금 소요액과 당해연도에 공급될 자금의 규모에 따른 비율
- 재해 등 특수한 사정으로 자금수요가 많은지역 증액 배정
- 조합의 평균 공급비율

## 6. 영어자금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가. 신청

- 신청절차 : 조합원은 소속 조합, 비조합원 및 원양어업인은 수협중앙회(도지회) 신청
- 신청시기 : 자금 필요시기에 연중 신청

### 나. 대상자 선정

영어자금 용자협의회에서 "영어자금운용요령 (수산청고시 제1994-26호)의 용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7. 대출방법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농림수산부훈령 제817호) 및 수협 여신규정에 의함

## 8. 사후관리

- 영어자금운용요령 (수산청고시 제1994-26호)
  - 정책자금이 정책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 감독
  - 정책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는 회수

## 9. 사업효과

- 어업경영비가 부족한 어가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므로써 어가의 금융부담 완화
- 자금의 적기 조달로 수산물 생산력 향상과 이에 따른 어가소득 증대

10. 사업안내기관 : 수산청 어정과,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도지회, 수산업협동조합

#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 (공공)

## 1.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1. 목 적

- 산지어획물의 신속한 양륙 판매로 어민수취가 제고
- 소비지 직출하 확대로 수산물유통단계 단축 및 유통마진 절감
- 수산물 수급 및 공급조절기능 구축으로 가격안정에 기여
- 저온유통체계 조기정착으로 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 어항내 해양오염 방지로 수산자원보호 및 연근해 생산력 제고

### 2. 추진방향

- 낙도, 벽지 준공어항등 새로운 위판장 시설수요 및 부족한 시설 확장
-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출하 할 수 있는 수산물 직판장, 공판장 및 종합판매장 건설
- 저온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활어 및 저온 수송차량 보급
- 위판장 전용면적 700㎡이상 시설은 폐수처리시설 우선 지원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개소, 대,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비	40,419	12,521	17,534	28,280	33,404	146,360	278,518
- 보조	9,700	2,614	4,345	6,944	8,391	35,360	67,354
- 융자	18,833	5,956	7,743	12,141	14,282	62,128	121,083
- 자담	11,886	3,951	5,446	9,195	10,731	48,872	90,091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계
○ 수산물 직판장	○ 물 량	8	5	5	15	15	102	150
	○ 사업비	3,625	2,000	2,000	7,500	7,500	51,000	73,625
○ 내륙지 공판장	○ 물 량	9	1	(1)	(1)	1	4	15
	○ 사업비	12,906	8,878	6,703	6,703	7,600	30,400	73,190
○ 수산물 종합 판매장	○ 물 량	-	-	2	3	4	11	20
	○ 사업비	-	-	6,000	9,000	12,000	33,000	60,000
○ 활어 및 냉동. 냉장차량	○ 물 량	22	10	10	20	20	68	150
	○ 사업비	380	150	150	400	400	1,360	2,840
○ 선어 위판장	○ 물 량	57,699	1,120	1,120	2,027	3,154	12,699	77,819
	○ 사업비	16,557	923	969	1,838	2,861	11,517	34,665
○ 활어 위판장	○ 물 량	3,332	200	495	1,000	1,100	7,005	13,132
	○ 사업비	3,273	370	912	2,039	2,243	14,238	23,120
○ 위판장 폐수처리 시설	○ 물 량	36	1	4	4	4	24	73
	○ 사업비	3,678	200	800	800	800	4,800	11,078

나. '96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물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보 조	용 자	자 . 담	
계		17,534	4,345	7,743	5,446	
○ 수산물 직판장	5개소	2,000	400	800	800	
○ 내륙지 공판장	1개소	6,703	1,340	3,351	2,012	
○ 수산물종합 판매장	2개소	6,000	1,800	2,400	1,800	
○ 활어 및 냉동. 냉장차량	10 대	150	-	120	30	
○ 선어 위판장	1,120평	969	291	387	291	
○ 활어 위판장	495평	912	274	365	273	
○ 위판장 폐수처리 시설	4개소	800	240	320	24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가 되며, 그 권한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음  
 다만, 수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수협중앙회장이  
 사업주관기관이 됨

#### 나. 사업현황

##### 1) 신청대상

- 수산물 직판장 : 산지수협, 어촌계, 어민후계자협의회
- 내륙지 공판장 : 수협중앙회
- 수산물 종합판매장 : 산지수협
- 활어 및 냉동·냉장차량 : 산지수협 및 수협중앙회
- 위판장 및 위판장폐수처리시설 :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 2)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지 원 한 도 (단위사업당)	지 원 비 율 (%)	용 자 조 건		
			금리	거치	상환
◦ 수산물 직판장	보조 : 80 용자 : 160	보조20, 용자40, 자담40	연5%	3년	7년
◦ 내륙지 공판장	보조 : 1,340 용자 : 3,351	보조20, 용자50, 자담30	"	"	"
◦ 수산물 종합 판매장	보조 : 900 용자 : 1,200	보조30, 용자40, 자담30	"	"	"
◦ 활어 및 냉동· 냉장 차량	용자 : 12	용자 80, 자담 20	"	"	"
◦ 선어 위판장	보조 : 130 용자 : 170	보조30, 용자40, 자담30	"	"	"
◦ 활어 위판장	보조 : 60 용자 : 75	"	"	"	"
◦ 위판장 폐수 처리 시설	보조 : 60 용자 : 80	"	연3%	"	"

### 3) 자금의 용도

- 수산물 직판장 : 직판장 건설 및 건물구입(분양) 자금
- 내륙지공판장 및 수산물 종합판매장 : 시설자금
- 활어 및 냉동.냉장수송차량 : 차량 구입자금
- 위판장 및 폐수처리시설 : 시설자금

### 4) 사업시행 체계

- 수산물직판장 및 수산물종합판매장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수산청장
- 내륙지 공판장 : 수협중앙회 → 수산청장
- 활어 및 냉동.냉장운반차량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수산청장  
(수협중앙회장 → 수산청장)
- 위판장 및 위판장 폐수처리시설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수산청장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수산물직판장 : 지구별,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민후계자협의회  
다만,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어민후계자협의회는  
전국(도.시군포함) 후계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10인이상의  
협업에 한함.
- 내륙지 공판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산업협동  
조합과 그 중앙회 또는 공익법인
- 수산물 종합판매장 : 지구별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 활어 및 냉동.냉장차량 : 산지수협 및 수협중앙회
- 위판장 및 폐수처리시설 :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로서 시설부지를 확보  
하고 자기자금 부담능력이 있는 자

2) 신청절차

- 사업자 → 시.군 → 시.도 → 수산청
- ※ 수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수산청으로 직접 신청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통합요령 제1호서식)
- 부지확보증명서 또는 사용허가서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수산물직판장
  - 사업자 우선순위는 ①산지조합, ②어촌계, ③어민후계자협의회 순으로 함.
  - 다만, 동일순위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부지확보 및 업무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선정함.
- 내륙지공판장 : 수협중앙회에서 '93 ~ '97 계속 사업
- 수산물종합판매장
  - 사업자 우선순위는 ①산지조합, ②업종별조합 순으로 함. 다만, 동일순위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부지확보 및 업무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선정함
- 활어 및 냉동.냉장 수송차량
  - 사업자 우선순위는 ①지구별, ②업종별, ③중앙회로 함. 다만, 동일순위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직판장 운영 및 직출하 실적을 감안하여 선정함
- 위판장 및 폐수처리 시설
  - 시.도지사가 수산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고 예산에 반영된 자
  - 낙도, 벽지 및 어항등에 기존시설이 없거나 부족한지역에 시설하고자 하는 자
  - 기존시설이 노후하거나 거리관계 기타 사유로 어민이용에 불편하여 대체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시.도지사가 특히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선정절차

농림수산물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 하되, 수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수산청에서 직접 물량 배정

## 마. 사업시행

### 1) 수산물 직판장

#### ○ 시설 지역

- 시 단위 이상의 대도시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수산물 소비가 많다고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관광지등의 지역에 대하여는 시 이하의 지역에서도 수산물직판장 시설을 할 수 있음.

#### ○ 운영 조건

- 수산물 직판장에서는 수산부류 취급품목을 전체 판매장 면적의 60%이상 되어야 함.

(수산부류 : 생선어류, 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해조류 및 것갈류)

### 2) 위판장

- 위판장 전면에는 청소 및 세척수 배수로를 설치하고 배수로 양단에는 어획물 찌꺼기등 오물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맨홀 설치
- 물양장 및 위판장 내부바닥은 적당한 기울기(2/100 ~ 5/100)를 두고 물고임이 없도록 바닥고르기
- 어획물 세척수는 청정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외해(방파제 외측 해안등)의 해수 유입시설 설치
- 청소 및 세척용 수도관을 일정한 간격(3~5m)으로 설치
- 밝고 깨끗한 색으로 위판장 내.외부 도장

### 3) 위판장 폐수처리시설

- 전용면적 700㎡이상인 위판장에는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의무화 (수질환경보전법)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사후관리책임자

수산물 유통개선사업은 시장·군수가 사후관리 책임을 지. 다만, 수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수협중앙회장이 사후관리 책임을 지.

#### 2) 사후관리 내용

- 시장·군수(수협중앙회장)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보조·용자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군수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용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용자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용자기관은 즉시 회수하여야 함.

나.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 다. 보고

시·도지사는 보조 및 용자사업에 대하여 수산사업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수산청 고시 제89-20호, '89.6.20)에 의거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라.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수산청 유통가공과
- 시·도 : 수산과, 어정과, 어업진흥과
- 시·군 : 수산과(산업과)

2. 수산 보급시설

1. 목 적

유류 및 용수 공급으로 원활한 어로활동 지원

2. 추진방향

새로운 시설수요 및 부족시설 확장과 노후시설 현대화

3.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249천D/M 27척	10 1	10.3	10 2	10 2	60 12	349.3 44
사 업 비	계	7,131	2,313	577	1,713	1,713	9,734	23,181
	보 조	2,139	519	173	514	514	2,920	6,779
	용 자	2,853	655	231	685	685	3,894	9,003
	자 답	2,139	1,139	173	514	514	2,920	7,397

※ 지원단가 : D/M당 56천원

4. 사업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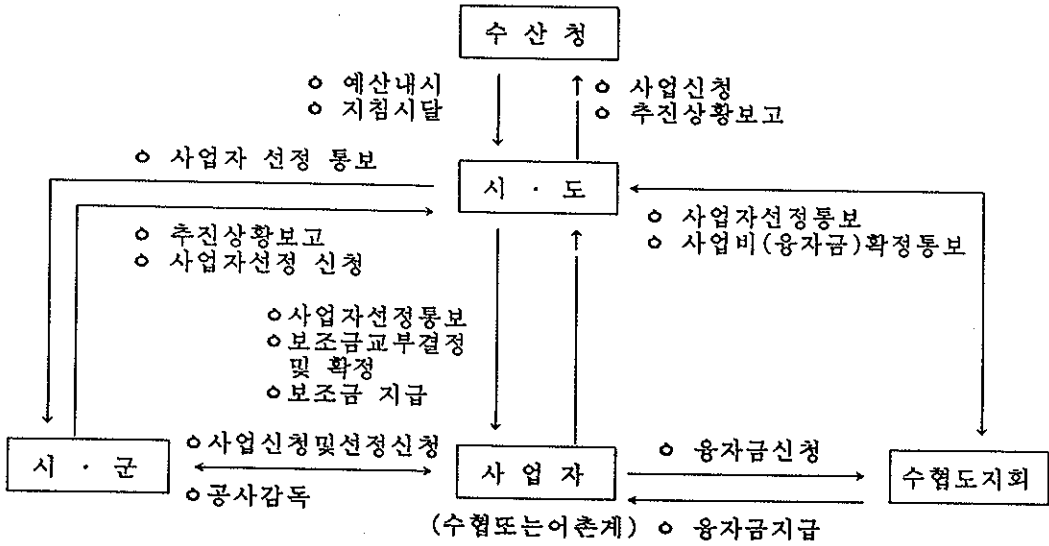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

나. 사업현황

- 사업내용 : 급유.급수시설
- 지원대상 :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 '96 지원규모(안) 및 조건

지 원 규 모 (천원)				조 건
사 업 량	계	보 조	용 자	◦ 지원율: 보조30%,용자40, 자담30 ◦ 용자조건: 3년거치7년상환 연 5%
10,300D/M	403,760	173,040	230,720	

○ 사업시행체계



다. 대상자 선정

○ 사업집행 주체는 시설부지를 확보하고 자기자금 부담능력이 있는자를 대상으로하여 다음 순위에 의하여 사업자를 확정함

- 시·도지사가 수산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고 예산에 반영된 자.
- 낙도, 벽지 및 어항등에 기존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시설하고자 하는자
- 기존시설이 노후하거나 거리관계 기타 사유로 어민이용에 불편하여 대체하고자 하는자
- 기타 시·도지사가 특히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기타 : 이외에 명시되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 (시장, 군수)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매분기말 추진사항을 다음분기초 5일 이내 보고와 사업 완료후 정산 보고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수산청 시설관리국 관리과
- 시·도 : 수산국(식산국), 수산과(어정과 또는 어업진흥과)
- 시·군 : 수산과(산업과 수산계)

### 3. 서해 5도 공동운반선 운영

#### 1. 사업 목적

서해 접적지역 도서 어민의 어획물 무료 운반, 공동 판매와 선수품·생필품의 염가 공급으로 생활 안정 도모

#### 2. 기본방향

서해 5도(소청도, 대청도, 백령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운항 승선원 인건비 보조

#### 3.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 사업 량	1 척	1	1	1	1	1	6
○ 사업 비	1,387	211	211	212	212	1,272	3,505
- 국 고	406	46	46	47	47	282	874
- 지방 비	645	60	59	60	60	360	1,244
- 자 담	336	105	106	105	105	630	1,387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인천광역시청

나. '96 지원계획(안) : 46백만원 (국고)

다. 사업자 : 용진군 수협

라. 기타 :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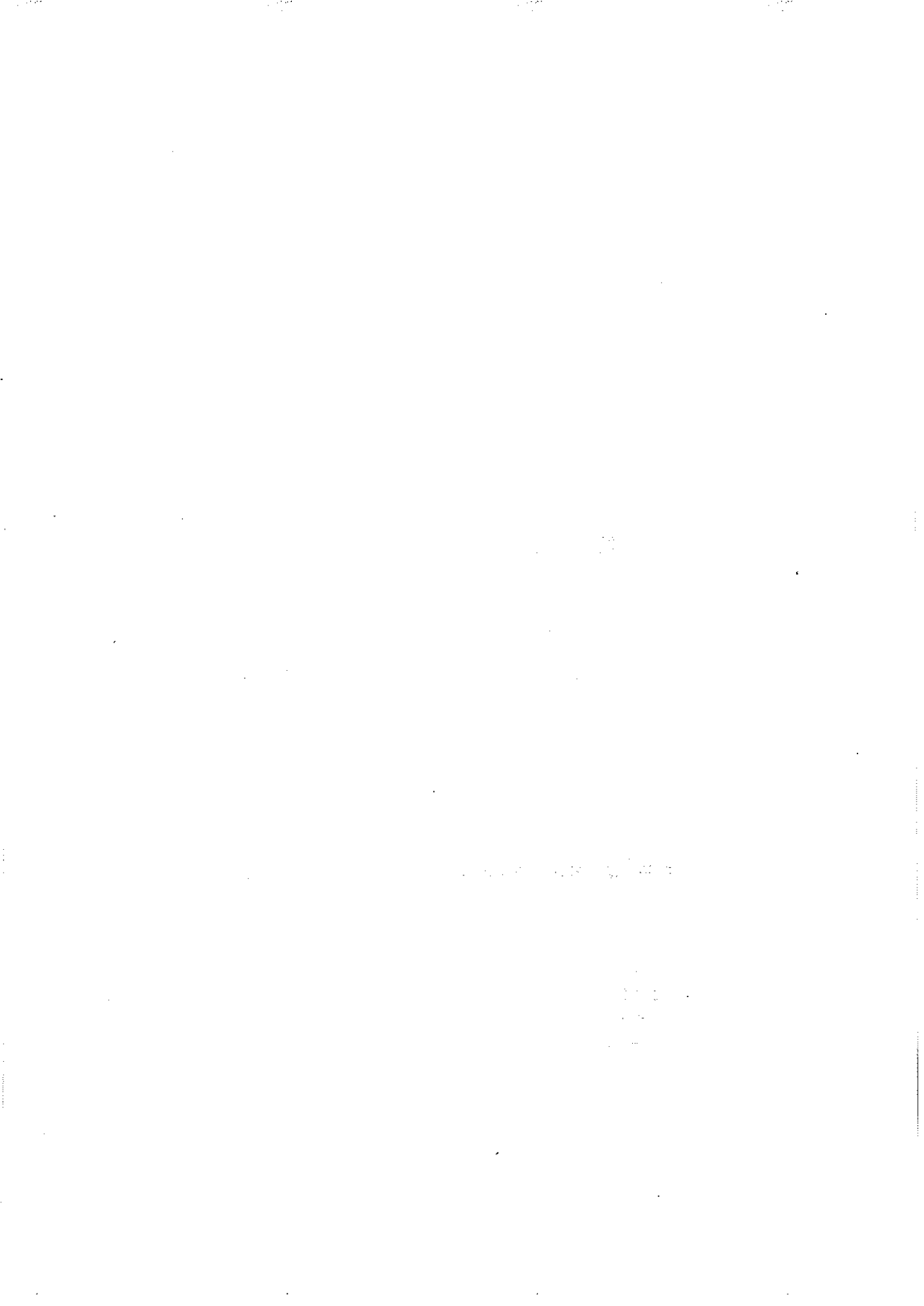
#### 5. 행정사항

○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수산청 수산정책국 어정과
- 시. 도 : 인천광역시 수산과



#### 4. 어업환경개선 및 어촌관광자원조성



## 어촌관광개발사업 (자율)

### 1. 목 적

도시민의 레저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여 어민소득증대 도모

### 2. 추진방향

- 자연경관이 수려한 어촌계에 활어횃집, 휴게소, 숙박시설, 관광선, 낚시터 등 관광 편의시설을 지원
- 지원대상 어촌계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단위사업 선택

###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45	20	10	52	43	393	563
사 업 비	3,913	2,000	1,000	5,200	4,300	39,970	56,383
- 용 자	2,203	1,200	600	3,120	2,580	23,992	33,695
- 지방비	1,142	600	300	1,560	1,290	11,997	16,889
- 자 담	568	200	100	520	430	3,981	5,799

나. '96 지원계획(안) : 1,000백만원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집행주체)

- 시·도지사 (다만, 사업집행 주체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음)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활어횃집, 휴게소, 숙박시설, 관광선, 낚시터 등 관광시설과 그 부대시설
- 2) 지원대상 : 관광자원이 부존되어 있는 어촌계
  - 수익성 및 휴식공간 여건에 따라 1개 어촌계에 2개 이상 단위사업 시행 허용 (횃집, 휴게소 동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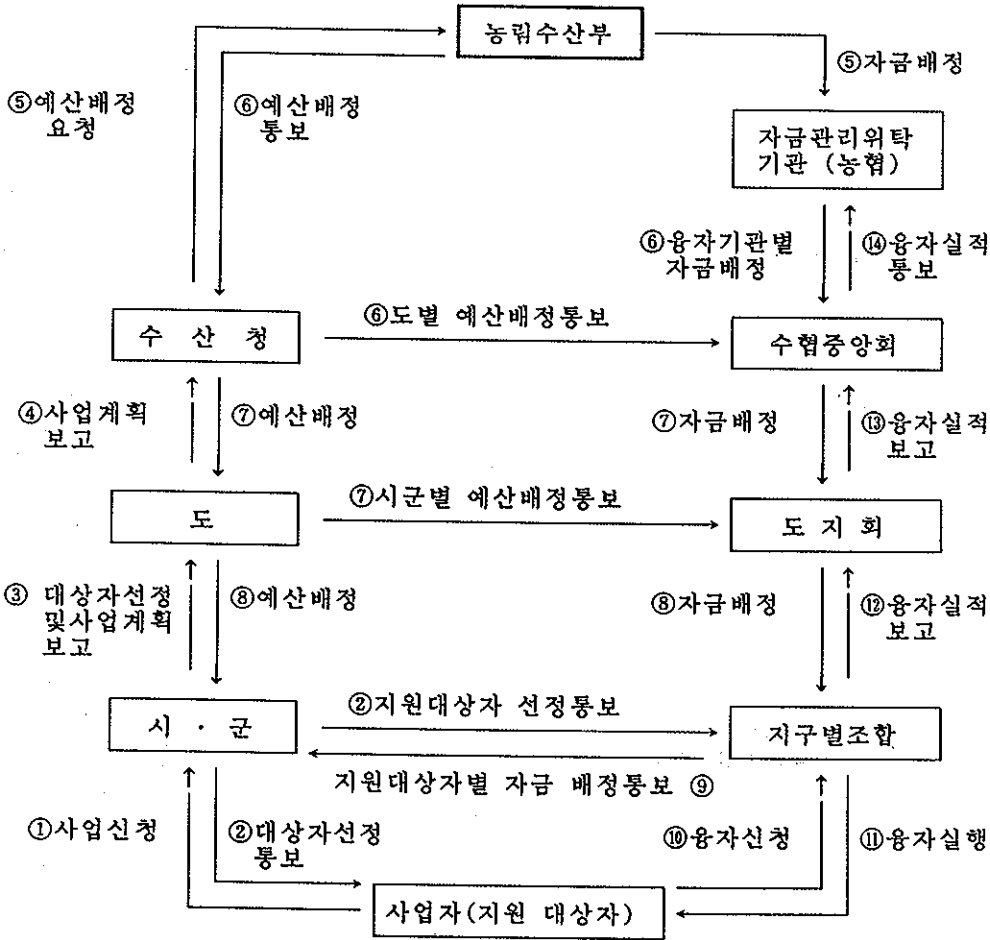
3) 지원규모 : 10개소 1,000백만원

- 지원조건 : 개소당 100백만원 (용자 60%, 지방비보조 30%, 자담 10)
- 용자조건 : 년리 5%, 3년거치 7년 상환

- 기타조건

: 사업비에는 시설비, 설계용역비, 자재구입비, 중요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사업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가 포함되나 토지구입비, 근거당설정비 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4) 사업시행체계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관광자원이 부존되어 있는 어촌계  
 다만, 이미 지원 실적이 있는 어촌계는 제외

2) 신청절차 : 어촌계 총의에 의해 시군에 신청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통합요령 제1호서식)  
농림수산정책자금 용자신청자금 (통합요령 제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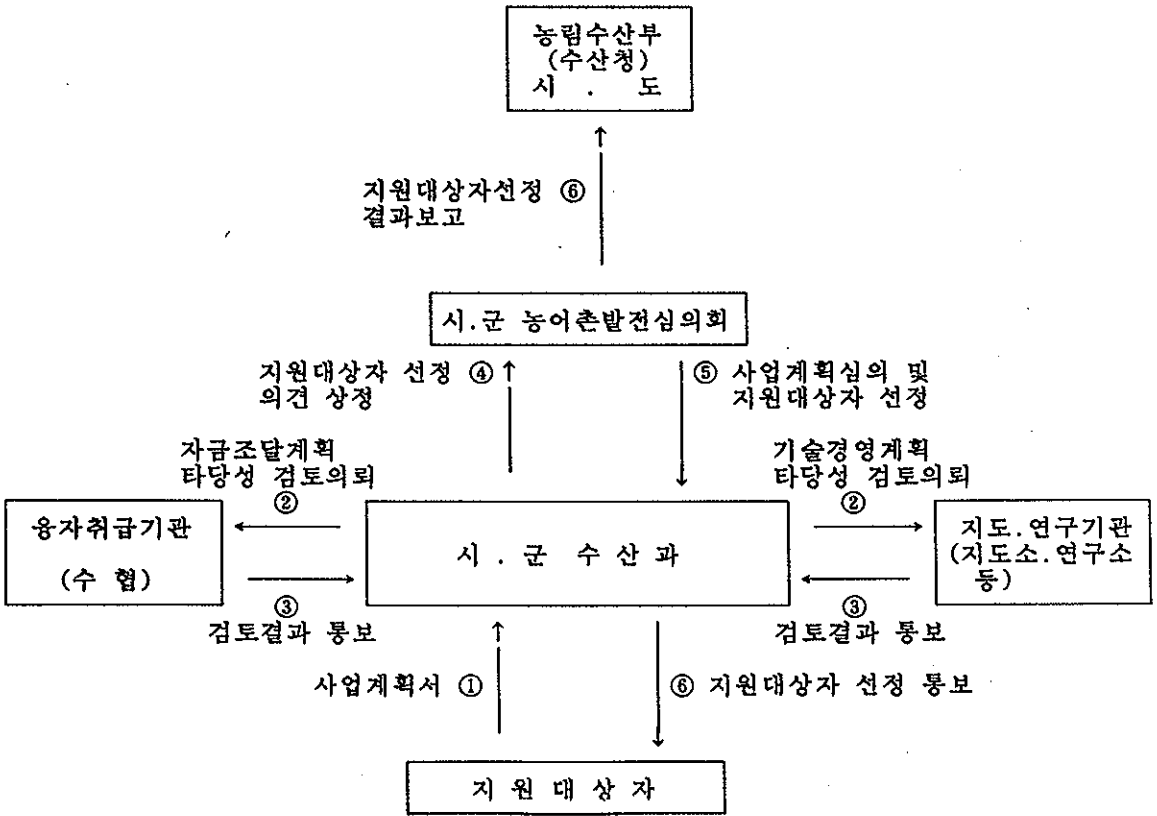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타 법령에 의해 시설물의 설치, 건축, 및 사업허가등에 제한을 받지않고 사업 수행이 가능한 어촌계
- 부지확보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어촌계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주변에 역사적 유적지, 유물, 문화재 등 관광자원이 부존된 어촌계
- 지명도가 높은 해수욕장, 낚시터 등이 있는 어촌계
- 지역 특산품이 개발된(개발 가능한) 어촌계
- 도로, 교통여건이 좋은 어촌계

2) 선정 절차

- 어촌계(사업자 신청) → 시장·군수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도



마. 사업시행

- 사업집행주체는 단위사업별로 설계도서를 징구한 후 전문기술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함
- 설계도서는 '95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와 공신력 있는 물가 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자나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감리자를 선정, 감리토록 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공사감리의 철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공사 감독관을 임명·책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함
- 공사감독관은 매월말 현재 사업공정과 전망,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집행주체는 준공 및 기성검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수산시설관리규정(수산청 훈령 602호)에 의거 관리

나. 보 고 : - 세부 사업별 집행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수산청장에게 보고 하고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확정시에는 완공사진을 첨부 보고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선정 사업자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시에는 변경사유(증빙서류 첨부)를 지체없이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수산청 수산정책국 어촌개발과 (02 - 753 - 6097)
- 도 : 수산국(농정, 지역경제국, 산업경제국) 수산과(어업진흥과)
- 군 : 수산과 (또는 수산계)

# 어장 환경정화사업 (공공)

## 1. 연안어장 정화

### 1. 목 적

어장환경 개선으로 어장의 장기보전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2. 추진방향

- 어장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6년까지 총 정화대상면적 21만ha를 1차완료
- 어장정화 추진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화방법 강구
- '96년 이후에는 오염 우심지역에 집중적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만 단위의 특정지역을 선정, 공유수면 등 광역정화 사업 실시

###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천ha,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 ~ 2004	합 계
사 업 량		134	40	45	40	39	420	718
사 업 비	계	11,572	6,727	7,723	11,712	15,459	84,000	137,193
	국 고	8,057	5,382	6,179	9,369	12,367	67,200	108,554
	자 담	3,515	1,345	1,544	2,343	3,092	16,800	28,639

나. '96 지원계획(안)

(단위 : ha, 천원)

어 장 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고	자 담
계	44,739	7,723,206	6,178,564	1,544,642
해조류어장	17,782	1,902,674	1,522,139	380,535
패류·공동어장	24,630	3,593,115	3,162,492	790,623
수하·채묘장	2,327	1,867,417	1,493,933	373,484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1) 사업 주관기관은 시·도지사가 됨. 다만,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집행 할수 있음
- 2) 일정해역을 선정하여 일괄정화(이하 "광역정화"이라 한다)로 실시되는 공유수면의 정화사업은 사업 집행주체가 하되 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할 경우에는 광역정화 구역내에 정화대상어장을 소유하고 있는 수협, 어촌계 위주로 선정함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및 정의

"어장환경 정화사업"이라 함은 해조류, 패류, 가두리, 수하식 및 공동어장과 양식 종묘 채묘장(이하"어장"이라 한다) 등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객토, 경운, 퇴적오폐물제거, 해적생물 구제 사업등을 말함. 다만, 불가사리 등의 해적생물 구제만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 요령에 의한 정화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 2) 지원대상

- 사업 대상어장은 어업면허·채묘허가를 받은 수협, 어촌계 어장을 주 대상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광역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이 경우 당해 구역내에 포함된 개인어장과 인근어장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해역도 포함되며, 지역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
- 우선지원 대상어장
  - 지형 및 조류소통 등 어장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어장정화 효과를 최대한으로 거양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제고할수 있는 어장(광역정화 등)을 우선 선정, 집중 지원함

- 어장환경 오염상태에 있어 저질및 수질이 여타어장보다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해역으로서 양식어장의 밀집도로 보아 우선 정화되어야 할 어장 (오염상태는 국립수산진흥원 등과 협의)
- 어장정화에 대한 지역어민의 의욕이 강하고 어장관리에 관심이 높은 어장

### 3) 지원규모 및 조건

- 해조류어장 : 17,782ha 단가 : 107,000원/ha
- 패류·공동어장 : 24,630ha 단가 : 160,500원/ha
- 수하·채묘장 : 2,327ha 단가 : 802,500원/ha
- 지원비율 : 국고 80% 자담 20%

※ 사업신청시는 자부담 예치증명서를 첨부하고 사업비 초과시는 자부담으로 함

### 4) 사업시행체제

사업자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 착공 → 사업시행  
(정화사업실시) → 준공 → 보조금확정(사업완료)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어장환경 정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수협 및 어촌계
- 양식어장 면허 또는 수산종묘 채묘업허가를 득한 자로서 어장환경 정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2) 신청절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

### 3) 구비서류

- 사업자 선정 신청시
  - 사업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자기부담 예치 증명서
- 보조금 교부신청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비 집행계획서
- 착공시
  - 사업 착수보고서
- 준공 및 보조금 확정시
  - 사업 종료보고서
  - 사업 정산서
  - 일일 작업일지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은 오염 우심해역울 기준으로 함
- 우선순위는 어촌계 소유어장, 수협 소유어장, 개인 소유어장 순위로 함

2) 신청절차

- 사업 집행주체는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은 사업집행 주체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 신청서를 사업집행 주체에 제출

마. 사업시행

1) 지역협의체의 설치운영

- 사업집행주체는 어장정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도 및 시.군.구단위의 어장정화사업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각각 구성함
- 도의 지역협의체 위원장은 어장정화사업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군.수진원, 어촌지도소, 수협, 학계, 어민대표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시.군.구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할 지역내 수진원, 어촌지도소, 수협, 학계, 어민대표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함
- 지역협의체는 매년 정화사업의 계획 및 실적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하여야 함
  - 당해 연도의 정화사업 해역 사업비, 사업 추진 시기 및 방법등
  - 이미 실시된 정화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사업 개선방안 강구

2)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수산사업 보조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수산청장에 대한 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확정(취소, 변경포함)은 당해년도 내시서로 같음함

3) 사업비 집행

- 이 요령에 의한 어장정화사업은 당해지역 실정을 감안,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부대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내시된 국고보조금 범위내에서 지역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불가피 할 경우 내시서상의 대상어장 종류를 조정 집행할 수 있음

#### 4) 사업준비 및 관리

- 사업계획에 의거 정화사업 실시예 필요한 어선.바지선.경운기.기타 정화장비 및 잠수부등 인력동원. 포크레인. 차량등 사용계약 체결
- 오폐물 수거용 마대구입, 오폐물 매립지 확보, 오폐물 소각지 확보
- 사업 집행주체는 각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명세를 당해년도 예산 편성기준,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토록하여야 함. 다만 물가정보지 및 정부노동단가 기준에 표기되지 아니한 품목의 단가는 지역협의체에서 결정할 수 있음
- 어장정화 사업을 실시한 어장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할 경우 어장정화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어장환경이 여타 어장보다 오염이 심화되었거나 어장정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집중정화가 필요하다고 지역협의회에서 결정된 어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음
- 수거된 오.폐물은 사업집행주체의 감독하에 완전히 소각하거나 인근 쓰레기 매립장에 이송처리 및 재활용 처리하여 수거오.폐물로 인한 2차오염을 예방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사업자로 하여금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 작업일지(별첨서식 8)를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함

#### 5) 사업 집행순기는 다음과 같음

- 사업자 선정 : '96. 3월 이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96. 4월 이내
- 사업완료 : '96. 11월 이내
- 보조금 확정 : '96. 12월 이내

※ 양식물의 종류나 지역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6) 기타사항

이 요령에 정하는 것 이외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사항은 사업 집행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음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사업집행 주체는 시.도별로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효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효과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화사업 실시전의 어장환경이 함께 조사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수산진흥원장(수산연구소장)은 사업의 효과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2) 사업집행 주체는 효과조사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그 계획과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나. 보고사항

사업집행 주체는 다음사항을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1) 사업자 선정(변경),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확정 보고 : 즉시
- 2)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 익월 5일 이내
- 3) 사업 종료보고 : 사업종료후 15일 이내, 사업 종료보고서 제출시에는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4X5)를 첨부함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수산청 생산국 어장보전과
- 시도 : 수산과, 생산과, 자원조성과
- 시군 : 수산과, 수산계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2. 자산과 부채 :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연간 시행회수, 장소, 참여 어촌계 또는 인원, 기타 등 구체적으로 명시

4. 보조금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부담자, 금액, 부담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방 법

7. 보조사업 효과

8. 사업비 명세

품 명	규 격	재 질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2. 공유수면 환경 광역정화

### 1. 목 적

오염이 심화된 공유수면의 광역정화로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 생산성 도모

### 2. 추진방향

- 오염이 여타 해역에 비하여 심한 만단위의 특정지역을 선정, 공유수면 광역정화 사업 실시
- 광역정화 추진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화방법 강구

###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 단위 : ha, 백만원 )

구 분		'96	'97	'98	'99 ~ 2004	합 계
사 업 량		4,500	4,500	4,500	27,000	40,500
사업비	계	2,160	2,160	2,160	12,960	19,440
	국 고 지방비	1,728 432	1,728 432	1,728 432	10,368 2,592	15,552 3,888

나. '96 지원계획(안)

( 단위 : ha, 천원 )

어 장 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 방 비
공유수면정화	4,500	2,160,000	1,728,000	432,00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1) 사업 주관기관은 시·도지사가 됨. 다만,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집행 할수 있음

- 2) 판단위의 오염우심 공유수면을 선정하여 일괄 정화(이하 "광역정화"이라 함)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집행주체가 됨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및 정의

공유수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객토, 밀갈이 등 저질개선, 퇴적오폐물 제거, 준설, 해적생물 구제, 기타 어장환경에 필요한 사업을 말함. 다만, 불가사리 제거 등 해적생물 구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본 지침에 의한 정화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 2) 지원대상

- 지원 대상어장은 판단위의 공유수면으로 하고 지역협의체의심을 거쳐 선정함. 다만, 어장정화사업의 효과 거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수산업법 제72조(어장관리에 관한 명령) 제1항 제1호및 제3호에 의거 어장의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이전, 철거, 휴업 등 어장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가 이루어진 어장은 이 사업에 포함할 수 있음
- 우선지원 대상어장
  - 지형 및 조류소통등 어장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의 정화 효과를 최대로 거양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제고할수 있는 공유수면을 우선 선정, 집중지원 함
  - 어장환경 오염상태에 있어 저질및 수질이 여타 해역보다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해역으로 함

### 3) 지원규모 및 조건

- 공유수면 정화 : 4,500ha, 단가 : 480,000원/ha
- 지원비율 : 국고 80%, 지방비 20%

### 4) 사업시행체제

사업집행 주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 집행함

## 5. 기 타

이 지침이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업시행, 행정사항, 기타사항 등에 관하여는 연안어장 정화사업 집행지침에 의함

## 6.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수산청 생산국 어장보전과
- 시 도 : 수산과(생산과, 자원조성과)
- 시 군 : 수산과

### 3. 어장정화선 운영

#### 1. 목 적

어장정화선 건조 운영에 따른 정화 효율성 제고 및 어장정화 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해 어장정화선 운영비 지원

#### 2. 추진방향

어장환경 개선사업은 국가 주요 공공사업으로 정화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역별 어장특성 및 어장 현지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어장정화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박운영비(유류비, 선체, 기관유지비등) 일부를 지원

####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組, 백만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 - 2004	합 계
사 업 량		-	-	2	3	5	30	40
사 업 비	계	-	-	1,040	1,646	2,743	16,460	21,899
	국 고 지방비	-	-	320	499	832	4,994	6,645
		-	-	720	1,147	1,911	11,466	15,244

※ 1조는 4척 기준( 단, '96년도는 2조 7척임)

나. '96 지원계획 (안)

- 지원규모 : 2조 7척(전남도 1조3척, 경남도 1조4척)
- 지원액 : 319,540천원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 : 시,도지사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어장정화선 운영비
- 2) 지원대상 : 어장정화선을 건조, 운영하는 시,도
- 3) 지원조건 : 정액보조

##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 가. 시·도지사는 어장정화선을 이용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 나. 예산집행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사업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다. 보조금의 집행한도는 '96예산 내시서에 의하되, 집행범위는 어장정화선단 유통비,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선용품 선구비에 한함

## 6. 기타사항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집행상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따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 7.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수산청 생산국 어장보전과
- 시도 : 수산과, 생산과, 자원조성과
- 시군 : 수산과, 수산계

# 어촌종합개발사업 (공공)

## 1. 목 적

- 취약한 어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촌계 평균소득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수준으로 향상
-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정주 환경조성

## 2. 추진방향

적지 및 협업능력을 갖춘 어촌에 대하여 특성에 맞는 생산기반 및 소득사업 지원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권역, 백만원)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계
사업량		10	15	16	15	15	89	160
사업비	계	13,170	52,500	56,000	52,500	52,500	316,500	543,170
	국고	6,585	26,250	28,000	26,250	26,250	158,250	271,585
	지방비	5,926	23,625	25,200	23,625	23,625	142,425	244,426
	자담	659	2,625	2,800	2,625	2,625	15,825	27,159

나. '96 지원계획(안) :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함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

시·도지사(다만, 권역 설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어업생산기반정비 : 어선계류시설, 해안시설, 육상가공시설
- 어촌소득원개발 : 자원조성, 자원조성시설, 어촌부업, 관광개발사업
- 어촌환경보전 시설 및 어민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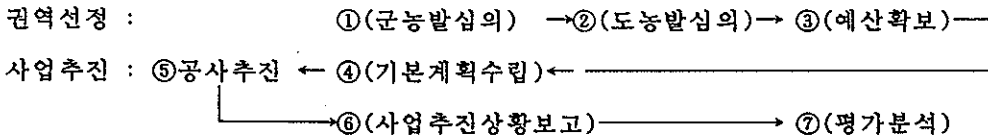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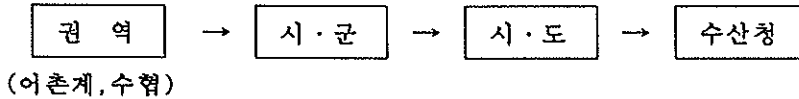


2) 지원대상 : 어촌계 및 지구별 수협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개 권역당 3,5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45%, 자담 5%

4) 사업시행체계



## 5. 사업대상지 선정

가. 권역선정 기준

- 사업집행주체는 연안어촌의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여건이 구비되고 다음 기준에 적합한 몇개의 읍면 또는 어촌계를 모아 1개 권역으로 설정하여야 함
  - 개발예정지의 교통, 자연경관등 어촌의 부존자원과 인근어장의 경제적투자 가치등 개발잠재력은 있으나 미개발된 지역으로서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 연안어민의 소득수준이 당해군 또는 전국의 연안어민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 수산업생산기반 시설이 당해군 또는 전국의 수산업 생산기반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나. 우선순위 및 선정절차

- 1)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별도의 조정이 없는 한 장기지원계획에 따름
- 2) 사업집행주체가 사업대상 권역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3) 사업집행주체는 권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6. 사업계획수립

- '96사업지원 신청권역은 '95.11.30까지 권역의 개발 개황을 제출
- '96예산확정 및 사업권역 지정 후 '96.3.30까지 기본계획서를 작성 제출

## 7. 사업시행

### 가. 기본계획의 수립

- 1) 사업집행주체는 설정된 각각의 권역에 대하여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바다목장화사업등 수산진흥사업과 군단위 정주권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함
- 2)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 및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권역내 어촌계 또는 마을단위의 지역 안배식 선정을 지양하고 각 사업을 연계시켜 투자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가) 대상사업은 별표 1 "어촌종합개발대상사업"으로 하며, 사업집행주체가 대상사업외의 사업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나) 대상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업을 제외하여야 함
    - 어항법에 의한 1.2.3종 어항구역내에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등의 어항 기본시설
    - 최근 3년 이내 해상유류오염사고지역 또는 동 오염원등이 제거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증양식 사업
- 3) 어촌종합개발기본계획은 사업대상지역의 여건, 어촌종합개발을 위한 생산 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의 소요, 기 투자실적 등을 감안하여 다음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희망 어촌계의 어민총의(수협인 경우에는 총회의결)를 반영하여야 함
  - 대상권역
  - 권역의 일반개황
  - 권역의 수산업 개황
  - 사업의 방향
  - 사업의 목표
  - 사업내역
  - 기대효과
- 4) 사업집행주체는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서를 작성한 후에는 도(시.군)농어촌 발전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 나. 보조금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

- 1)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확정 등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산사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함
- 2) 사업자로 선정된자는 사업자 선정통지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교부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공계를 사업 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 사업비 및 자기자금

- 1) 사업비라 함은 시설비, 설계용역비, 자재구입비, 중요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사업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를 말하며, 토지구입비, 근거당설정비 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2)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어촌계에 예치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가 수산업협동조합(법인어촌계 포함)인 경우에는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자기자금부담액을 계상하였거나 총회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음
- 3)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자가 착공계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사업자 부담금을 예치받은 수협중앙회 및 법인어촌계가 환불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 4) 사업자는 사업착공계 제출후 사업집행주체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업자 부담금을 세외 수입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라. 제출서류

##### 1) 사업자 선정시

- 가) 사업계획서 (통합요령 별첨서식)
- 나) 부지확보증명서 또는 사용승인서

##### 2) 보조금 교부신청시

- 가) 보조금교부신청서
- 나) 설계도서
- 다) 자기자금예치증명서(수지예산서 또는 총회의결서 사본)

##### 3) 공사착공시

- 가) 착공계
- 나) 입찰내역서 및 도급계약서
- 다) 공사에정공정표
- 라) 착공전 사진

##### 4) 준공 및 기성 부분급 신청시

- 가) 준공(기성)검사원
- 나) 준공(기성)검사조서
- 다) 공사비정산서 또는 사업비정산서
- 라) 준공 또는 기성부분 사진 (착공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착공전 사진 촬영지점과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것이어야 함)

#### 마. 공사감독

- 1) 사업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유자격자 또는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토록 하여야 함
- 2) 사업집행주체는 공사감리의 철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공사감독관을 임명, 책임감독하도록 하여야 함
- 3) 공사감독관은 매월말 현재 사업공정과 전망,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바. 준공 및 기성검사

사업집행주체는 준공 및 기성검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함

사. 사업공정계획 : 사업의 집행순기 및 사업집행진도는 다음과 같음

사업집행과정	집행순기	진행진도
1. '96년도사업권역설정	'95. 11. 30까지	10 %
2.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자선정	'96. 1. 31까지	20 %
3. 보조금교부결정	'96. 5. 31까지	40 %
4. 착 공	'96. 6. 25까지	50 %
5. 준 공	'96. 11. 20까지	95 %
6. 보조금교부확정	'96. 11. 30까지	100 %

## 8. 행정사항

가. 사업의 관리

- 1) 사업집행주체는 단위사업의 선정, 설계도서의 작성, 입찰등의 과정에 보조금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 하여야 함
- 2) 사업집행주체는 단위사업별로 설계도서를 징구한 후 전문기술직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함
- 3)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진흥원(수산연구소장 또는 어촌지도소장)에게 조사, 기술지원 및 중요공급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이경우 국립수산진흥원장(수산연구소장 또는 어촌지도소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4) 사업집행주체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종묘의 검수, 방류 입회,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가) 종묘의 방류장소 선정 및 수역별 방류미수 산정시에는 수진원장(연구소장 또는 지도소장)과 협의하여 방류품종의 생태와 방류수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나) 종묘의 검수는 사전에 종묘의 규격, 건강상태등을 점검하고, 방류 장소에 운반된 종묘가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용기에 30분이상 수용한 후 종묘의 활력, 폐사상태등을 고려하여 종묘로서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검수함
  - 다) 검수 및 방류시에는 시·군, 수산진흥원(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과 관계 수협 및 어촌계 대표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 검수 및 방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라) 방류후에는 수산진흥원(연구소 또는 지도소)의 협조를 받아 방류수역과 방류효과가 예상되는 수역에 대하여 조업상태 및 품종별 생산상황 등의 방류효과를 조사·기록 유지하여야 함
- 5) 설계도서는 '96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와 공신력있는 물가조사 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함
  - 6) 사업집행주체는 무자격업체의 공사참여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도급업체의 자격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 시행하여야 함
  - 7)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외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나. 사후관리

사업집행주체는 준공된 시설 및 사업은 "수산시설관리규정(수산청 훈령)"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다. 보 고

- 1) 사업집행주체는 권역개발계획서 및 어촌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서를 작성 농발위심의 후 즉시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변경, 취소, 확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3) 사업집행주체는 분기별 집행상황을 분기말로 부터 10일 이내에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라.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수산청 수산정책국 어촌개발과(☎02-753-6097)
- 시·도 : 수산국(농정국) 수산과(어업진흥과)
- 시·군 : 수산과(산업과 수산계)

<별표 1>

## 어촌종합개발대상사업 목록

1. 어선계류시설 사업

- 가. 선착장
- 나. 물양장
- 다. 방파제, 방사제, 방조제 등 외곽시설
- 라. 안벽, 선양장 등 계류시설

2. 해안시설사업

- 가. 해안사방시설
- 나. 해안보전시설 : 제방, 호안등
- 다. 해안도로
- 라. 해안조명시설

3. 어촌환경시설사업

- 가. 말단정화처리시설
- 나. 어선관리 처리시설
- 다. 수산폐기물 처리시설

4. 수산업관련 육상시설사업

- 가. 특산품가공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 나. 어업용수시설
- 다. 화입건조시설
- 라. 간이냉동냉장시설
- 마. 어업용창고
- 바. 공동작업장

5. 어촌부업 및 관광시설사업

- 가. 식사시설
- 나. 숙박시설
- 다. 활어시설사업 : 활어수조, 활어운반차, 활어운반선
- 라. 부업개발시설 : 낚시터, 직판장, 유람선, 수중투시선
- 마. 관광어장 : 체험어장시설
- 바. 공동육탕시설
- 사. 회관건립

6. 저질개량, 고정물 설치사업

- 가. 썩은 저질 제거, 굴삭 등 토목공법 정화사업
- 나. 해중구조물 설치사업
- 다. 양배수장치, 수류발생장치, 수류변경장치, 객토·복토등 기계공법 정화사업
- 라. 저서생물의 정화력을 이용한 생물이용 정화사업

7. 수산자원조성시설사업

- 가. 종묘생산시설
- 나. 종묘매입방류사업
- 다. 인공어초
- 라. 해 조 장
- 마. 잠 제 (潛堤)
- 바. 가두리시설
- 사. 육상수조식 또는 축제식 양식
- 아. 수하연승식
- 자. 기타양식사업 : 투석식, 살포식, 지주식, 부류식 등의 양식사업을 말함

## 어민복지회관 건립 (공공)

### 1. 목 적

어민 및 어선원들의 건전한 휴식공간 및 편의제공으로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

### 2. 추진방향

- 전국일선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에 현대적시설을 갖춘 종합복지 시설 지원
- 부지는 사업자 부담

###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개소,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25	4	8	6	6	16	65
사 업 비	6,389	1,080	2,160	1,620	1,620	4,320	17,189

나. '96지원계획(안) : 2,160백만원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집행주체)

- 시·도지사 (다만, 집행주체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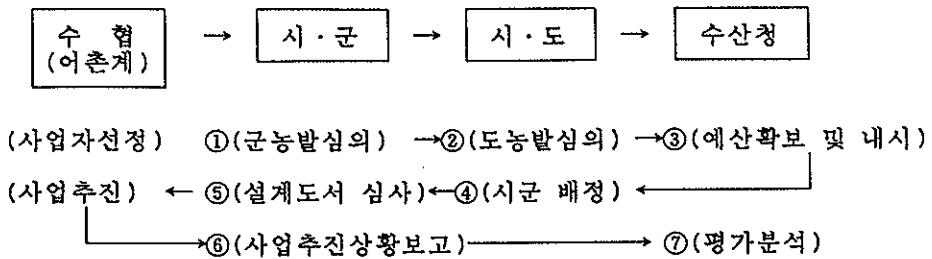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숙박시설, 이·미용실, 목욕탕, 구판장, 예식장(회의장 겸용) 등
- 2) 지원대상 : 65개 지구별수협 조합장 또는 어촌계장(국고지원사업으로 한번 지원)
- 3) 지원규모 : 8개소 2,160백만원 (개소당 27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 기타조건

-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지원한도는 '96수산사업비 내시서에 의함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비 및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총 건축비중 자담액이 국고보조(지방비 포함)액의  
3배 또는 당해수협(어촌계)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잉여액의 10배중 많은  
액수를 초과 할 수 없음.

4) 사업시행체계



5.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기준

- 이 사업의 사업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촌계장으로 함  
(단, 국고 지원사업으로 동회관을 이미 시설한 수협 및 어촌계는 제외)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시·도별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 조합간, 조합과 어촌계간, 또는 어촌계간에  
경합이 되는 경우는 다음사항을 종합평가하여 평점이 높은 지구(자)를 선정함
    - 시설부지의 확보여부
    - 사업수행 및 운영관리 능력
    - 복지회관 건립후 활용도
    - 어민 편익시설의 정도 : 기존 어민복지회관 및 어민 편익시설이 없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합 및 어촌계
    - 어민 이용의 편리도 : 시설부지가 다수 어민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지역을 관할하는 조합 및 어촌계



## 나. 사업자 선정 절차

-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통합요령 별첨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발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되 인근어촌계 간에 공동선정되도록 유도하여야 함
- 단, 사업자 선정대상자가 (1개수협 또는 어촌계)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6. 사업 시행(관리)

- 사업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자를 선정, 공사를 감리토록 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공사감리의 철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공사감독관을 지명, 감독토록 하여야 함
- 공사감독관은 매월말 현재 사업공정과 전망,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인근어촌계 주민의 합리적인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

## 7.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수산시설관리규정(수산청 훈령 602호)에 의거 관리

나. 보 고 : 사업자선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변경, 취소, 교부확정하였을때에는 그 결과를 수산청장에게 보고

- 분기별 사업집행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수산청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확정시에는 완공사진을 첨부 보고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수산청 수산정책국 어촌개발과 (02 - 753 - 6097)
- 도 : 수산국(농정국, 지역경제국, 산업경제국) 수산과 (어업진흥과)
- 군 : 수산과 (또는 수산계)

